[별표 8]

전열기구,전동력응용기계기구,광원응용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 및 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와발전기의기술기준

1. 공통사항

가. 재료

(1)기체의 재료는 통상의 사용상태의 온도에서 견딜 것.

(2)전기절연물 및 열절연물은 이와 접촉 또는 근접부분의 온도에 충분히 견디고 또한 흡습성이 적은 것일 것. 다만, 흡습성의 열절연물로서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위험이 일어날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기기의 부품 및 구조재료는 니트로셀루로스계셀루로이드 기타 이와 유사한 가연성물질이 아닌 것일 것.

(4)아아크가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전기절연물은 아아크에 의해 유해한 변형, 유해한 절연저항 등의 변질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5)철 또는 강(스텐레스강을 제외한다)은 도금, 도장 기타의 적당한 방청처리를 할 것. 다만, 산화로 인하여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도전재료는 동이나 동합금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녹이 잘 슬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기타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옥외용의 것의 외곽재료는 녹이 잘 슬지 아니하는 금속, 방청처리한 금속, 합성고무, 도자기 등 또는 80℃±3℃(조명기구의 투광성을 필요로 하는 카어버에 있어서는 70℃±3℃)의 공기중에 1시간 방치한 후 자연냉각시켰을 때에 부풀음, 금, 갈라짐 기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합성수지일 것. 다만, 구조상 직사일광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빗물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외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단자나사(어어스용 단자나사는 제외한다)의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직접 통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온도가 100℃이상의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이나 동합금 또는 도금한 철이나 강)일 것.

(9)어어스용 단자나사의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일 것. 다만, 어어스선을 기체의 내부에 부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퓨우즈의 붙임부에 크립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재료는 탄성이 있는 동 또는 동합금일 것.

(11)음료수, 식품 등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통전에 의하여 유해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거나 또한 유해한 물질이 녹아나올 우려가 없는 것일 것.

나. 구조

(1)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형상이 바르고 조립상태가 양호하며 또한 동작이 원활할 것.

(2)원격조작기구(기체와 콘트롤러 사이를 접속하는 전선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기체스위치 또는 콘트롤러의 조작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원회로가 폐로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3)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 넘어질 경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 표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표의 좌란에 게기하는 종류마다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각도로 기울였을때에 넘어지지 아니할 것. 다만, 탁상형 또는 휴대형의 채난용 전열기구로서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통전할 경우에 상면 또는 주위에 인화되어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적합하는 이외에 넘어졌을때에 전원을 개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종 류		각도(°)
전열기구 및 전열장치를 가지는 전동력응용기계기구	탁상형	15
	기타의 것	10
기타의 것		10

(4)조영재에 부착하여 사용하는것에 있어서는 쉽고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을 것.

(5)금속제의 뚜껑이나 상자속에 스위치를 개폐하였을때에 아아크가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내 아아크성 전기절연물을 붙일 것.

(6)충전부에는 다음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쉽게 떨어지는 부분을 떼어낸 상태에서 별표 4의 1. 나. (3)에 게기한 시험막대가 닿지 아니할 것. 이 경우에 시험막대에 가한 힘은 탁상형의 것의 밑면, 상자형의 것(거치형에 한한다)의 뒷면 및 밑면(기체의 무게가 40㎏을 초과하는 것으로 상면에서 기체 밑면까지의 높이가 5㎝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그 높이의 2배의 길이를 밑면의 바깥테두리에서 내측에 미치게한 범위)또는 천정형(쉽게 사람이 닿을 우려가 없는 곳에 부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외면 및 개구부에서는 1㎏,기타의 것의 외면 및 개구부에 있어서는 3㎏로 한다.

(가)부착된 상태에서 쉽게 사람이 닿을 우려가 없는 부착면의 충전부

(나)40㎏을 초과하는 기체의 밑면의 개구부로부터 40㎝이상 떨어져 있는 충전부

(다)구조상 충전부를 노출하여 사용함이 불가피한 기구의 노출된 충전부로서 절연 변압기에 접속된 2차측 회로의 대지전압 및 선간전압이 교류에서는 30V이하, 직류에서는 45V이하인 것. 또한 1KΩ의 저항을 대지와의 사이 및 선간에 접속하였을때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상용주파수 이상의 주파수에서 감전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이하인 것.

(라)정격전압이 150V이하로서 통전한 경우에 빨갛게되는 발열체를 가진 그 발열체

(마)가정용 전격치료기, 전격살충기 기타 기능상 충전부를 노출하여 사용함이 불가피한 기구의 노출되는 충전부

(7)극성이 다른 충전부 상호간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의 사이 및 충전부와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금속부의 표면과의 공간거리(연면거리를 포함한다)는 기구 또는 기구의 부분마다 각각 다음표에 적합할 것. 다만, 다음에 게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 전격살충기, 기타 전극간에 전압을 가하여 집진, 살충등을 행하는 기구의 그 전극부분

(나)절연변압기의 2차측회로, 정류후의 회로 등의 구조상 불가피한 부분으로서 다음의 시험을 하였을때에 이에 적합할 것.

①극성이 다른 충전부 상호간을 단락한 경우에 단락회로에 접속된 부품이 연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당해회로에 접속되어 있는 한 개의 부품이 연소할 경우에 다른 부품이 연소될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극성이 다른 충전부상호간 또는 충전부와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에 첨두전압이 2,500V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방전시험막대를 사용하여 30초간 연속방전(30초 이내에 부품이 연소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방전을 중지하고 방전 중지후 15초 이내에 불꽃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다시 방전을 계속하여 합계 30초간 방전하는 것으로 한다)을 시킨경우에 그 아아크에 의하여 부품이 연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에 적합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전 중지후 15초 이내에 불꽃이 소멸하는 것.

㉯두께가 0.3㎜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불연성의 합성수지나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차폐함(개구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내부가 연소에 의하여 그 개구로부터 불꽃이 나오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넣어져 있는 것.

③극성이 다른 충전부 상호간 또는 충전부와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를 접속하였을 때에 그 비충전금속부 또는 노출하는 충전부가 다음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대지전압 및 선간전압이 교류에 있어서는 30V이하, 직류에 있어서는 45V이하 일 것.

㉯1KΩ의 저항을 대지와의 사이와 선간 및 비충전금속부와 충전부간에 접속하였을때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상용주파수 이상의 주파수에서 감전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이하 일 것.

④ ①의 시험후에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대지전압 및 선간전압이 교류에 있어서는 30V이하, 직류에 있어서는 45V이하인 것과 1KΩ의 저항을 대지간 및 선간에 접속할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1㎃이하(상용주파수 이상의 주파수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1㎃이하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의 것을 제외한다]의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일 것.

(다)극성이 다른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를 단락한 경우에 단락회로에 접속된 부품이 연속하지 않는 전동기의 정류자부로서 그 정격전압이 교류에서는 30V이하, 직류에서는 45V이하일 것.

기구 또는 기구부분의 구분		공간거리 (연면거리를 포함한다)
(1)전기면도기,전기이발기, 전기손톱깍기, 전기칼, 전기치솔, 전기가위, 휴대용 전 기맛사지기, 전기흡입기 및 전자후랫쉬 (이들중 (3)내지 (5)에 게기한 부분을 제외한다)		부표 제1의값이상
(2) (1)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 (이들 중 (3)내지 (5)에 게기한 부분을 제외한다)		부표 제2의 값이상
(3)선간전압 또는 대지전압 이 15V이하인 충전부분 (사용자가 접속하는 나사 멈춤 단자부를 제외한다)	내습성의 절연 피막을 가지는 것	0.5㎜이상
	기타의 것	1㎜이상
(4)컨덴서의 외부단자부		부표제3의 값 이상
(5)전동기의 정류자부		별표7의 1. 나. (5)의 표의 값(전동기에 정격 출력의 표시가 없는 것 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 용상태에서의 압력의 65퍼센트를 정격출력으 로한 경우의 표의 값) 이상

비고 : 공간거리는 기구의 외면에 있어서는 3㎏,기구의 내부에 있어서는 200g의 힘을 거리가 가장 적게 되도록 가하여 측정하였을때의 거리로 한다.

(8)절연물의 두께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기체의 외피의 재료가 절연체를 겸하는 경우에는 절연물의 두께는 0.8㎜이상일 것.

(나)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절연물[(7)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것에 한한다. 이하 (8)에서 같다)의 두께는 0.3㎜이상이며 핀홀이 없는 것일 것. 다만, 열전도성능상 사용이 불가피한 부분으로서 다음표의 좌란에 게기한 절연물이 사용되는 전압의 구분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교류전압을 가한 경우에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디는 것에 있어서는 절연물의 두께를 0.15㎜(트란지스터를 샤시로부터 절연지지하는 절연물로서 다음 표 좌란에 게기한 절연물이 사용되는 전압의 구분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교류전압의 2배의 값의 교류전압을 가한 경우에 연속 1분간 이에 견디고 또한 별표 제3의 1. 나 (17)(나)의 그림에 표시하는 시험핀을 3㎏의 힘으로 눌렸을 때에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0.05㎜]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절연물이 사용되는 전압의 구분	교류전압
30V이하	500V
30V초과 150V이하	1,000V
150V초과 300V이하	1,500V
300V초과 1,000V이하	절연물이 사용되는 전압의 2배에 1,000V를 더한 값
1,000V초과 3,000V이하	절연물이 사용되는 전압의 1.5배에 500V를 더한 값 (3,000V미만이 되는 경우 에는 3,000V)
3,000V초과하는 것	절연물이 사용되는 전압의 1.5배(5,000V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000V)

(다)전동기의 코일절연(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한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능상 절연물의 두께를 (나)에 규정하는 값 이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나)에 규정하는 값 이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표 좌란에 게기한 절연물이 사용되는 전압의 구분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교류전압을 가하였을때에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딜 것.

(9)충전부 상호 또는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접속부분은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헐거럽게 될 우려가 없을 것.

(10)기체 내부의 배선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200g의 힘을 가한 경우에 고온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접촉되었을 때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없을 것.

(나)200g의 힘을 가하였을 때에 가동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피복을 한 전선을 고정하는 경우, 관통구멍을 통하는 경우 또는 200g의 힘을 가하였을 때에 다른 부분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접속기로 접속한 것에 있어서는 500g의 힘을 접속한 부분에 가하였을 때 떨어지지 아니할 것. 다만, 200g이상 500g미만의 힘을 가하여 떨어진 경우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전원전선(인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기구간을 접속하는 전선 및 기능상 불가피하게 기체의 외부에 노출하는 전선(이하 "전원 전선 등"이라 한다)의 관통구멍은, 보호스프링, 보호붓싱(휴대형의 작은 기구에 있어서는 보호 튜브를 포함한다)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 전선 등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면돌림, 기타 적당한 보호가공을 할 것. 다만, 관통부가 금속 이외의 것으로서 그 부분이 매끄럽고 또한 전원 전선 등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이 표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원 전선 등(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착한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12)에서 같다)은 기체의 바깥방향을 향하여 기체의 자중의 값의 3배의 값(기체자중의 값의 3배의 값이 10㎏을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10㎏,기체자중의 값의 3배의 값이 3㎏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3㎏의 값)의 장력을 연속하여 15초간 가하였을 때 및 기체내부의 방향을 향하여 전원 전선 등의 기체측으로부터 5㎝의 곳을 잡고 눌러 넣었을 때에 전원 전선 등과 내부단자와의 접속부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붓싱이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13)기구간을 접속하는 전선이 단락, 과전류 등의 이상이 생겼을 때에 동작하는 퓨우즈, 과전류보호장치, 기타의 보호장치를 둘 것. 다만, 단락, 전류등의 이상이 생긴 경우에 부품의 연소 충전부의 노출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애관에 들어있는 도전부가 금속부를 관통하는 곳은 도전부가 금속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것.

(15)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충전부에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이며 물속에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방수구조일 것.

(16)흡습으로 인하여 부품의 연소, 충전부의 노출등이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습처리를 할 것.

(17)온도상승에 의하여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온도과승방지장치(온도퓨우즈를 포함한다. 이하 (17)에서 같다)를 과전류, 과부하등에 의하여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붙일 것. 이 경우 있어서 당해 온도과승방지장치 및 과부하 보호장치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동작하지 아니할 것.

(18)정격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이는 곳(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어어스용의 배선이 외부에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기체의 내부)에 어어스용단자 또는 어어스선(어어스용 인출선을 포함한다. 이하 (19) 및 다. (3)에서 같다.)를 둘 것.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전원 플럭의 어어스의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

(나)이 표에 규정되어 있는 2중 절연구조의 것.

(다)외곽의 재료가 내수성의 합성수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물로서 그 두께가 1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1㎜(휴대형의 것에 있어서는 0.8㎜)이상, 2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0.8㎜(휴대형의 것에서는 0.6㎜)이상으로서 다음에 적합할 것.

①별표 5의 1. 나. (13)에 규정한 시험에 적합할 것.

②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체의 외면과의 사이의 절연저항이 3MΩ이상일 것.

③충전부와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체의 외면과의 사이에 4,000V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때에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딜 것.

(19)어어스의 표시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어어스용 단자 및 어어스선에는 그 자체(쉽게 떨어지는 어스용 단자 나사를 제외한다) 또는 그 근방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나)기체 내부의 어어스용 인출선을 접속하는 단자 및 전원 플럭의 어어스 칼날에 접속하는 선심에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20)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전동기의 회전이 방해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만, 전동기의 회전이 방해되는 경우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가등 부분은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적당한 보호테나 보호망을 설치할 것. 다만, 기능상 가동부분을 노출하여 사용함이 불가피한 것의 가동부분 및 이에 접촉하였을 때에 감전, 상해 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기체의 일부를 붙이거나 또는 떼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붙이거나 또는 떼어내는 조작이 쉽고 확실하며 또한 안전할 것.

(나)전구 또는 방전관의 교환 또는 청소를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의 조임은 쉽고 확실하며 또한 안전할 것.

(23)고내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은 물품을 넣을때와 꺼낼때 또는 문의 개폐등의 동작을 할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테의 부착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스위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스위치의 개폐조작 또는 개폐상태를 문자, 기호 또는 색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발열체의 충전부 또는 전극(절연변압기에 의하여 전원으로부터 절연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전압이 교류에 있어서는 30V이하, 직류에 있어서는 45V이하의 것을 제외한다)이용기중의 물, 기타의 액체에 접촉되어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 발열선 및 전극의 주위에 전기차폐를 하고 또한 이를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일 것. 다만, 다음에 적합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발열체의 부착부는 다음에 의할 것.

①발열체는 격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②발열체의 부착면은 중력 또는 진동에 의하여 쉽게 움직이지 아니할 것.

③발열선은 이것이 단선한 경우에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비충전금속부에 닿을 우려가 없도록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비충전금속부에 발열체가 접속하여 어어스된 경우에 전원회로를 차단하는 누전차단기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것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충전부가 노출된 발열선을 열판(금속제의 것을 제외한다)에 부착하고 그 열판을 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발열선을 열판의 표면으로부터 2.5㎜이상의 깊이에 부착할 것.

(나)충전부가 노출되어 있고 또한 통전한 경우에 빨갛게 되는 발열체를 가지는 것으로서 전원을 개폐하는 스위치(자동스위치를 포함한다)를 가진것에 있어서는 당해 스위치는 동시에 양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일 것.

(28)퓨우즈를 붙이는 것에 있어서는그 붙임부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퓨우즈가 용단함으로써 그 회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

(나)퓨우즈가 용단하는 경우에 아아크에 의하여 단락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어스할 우려가 없을 것.

(다)퓨우즈가 용단하는 경우에 퓨우즈가 들어있는 뚜껑, 상자 또는 대가 손상하지 아니할 것.

(라)퓨우즈의 붙임단자는 퓨우즈를 쉽게 또한 확실히 붙일 수 있는 것으로서 조일 때에 퓨우즈의 고리가 돌아가지 아니할 것.

(마)접시형 왓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퓨우즈의 붙임면의 크기는 접시형 왓샤의 밑면 크기 이상일 것.

(바)비포장 퓨우즈를 붙이는 것에 있어서는 퓨우즈의 기체와의 사이의 공간거리는 4㎜이상일 것.

(사)퓨우즈 붙임단자 나사는 퓨우즈 이외의 부품의 붙임에 겸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퓨우즈를 붙이거나 떼어낸 경우에 퓨우즈 이외의 부품의 붙임이 헐거러워질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어어스용 단자를 가기는 것에 있어서는 그 단자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어어스선을 쉽게 또한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을 것.

(나)어어스용 단자나사의 공칭지름은 4㎜이상(눌러조임 나사형의 것에 있어서는 3.5㎜이상)일 것.

(30)퓨우즈를 붙이는 것에 있어서는 그 명판 또는 퓨우즈 붙임부에 전류 퓨우즈에 있어서는 정격전류를, 온도퓨우즈에 있어서는 정격동작온도를 쉽게 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교환할 수 없는 퓨우즈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외곽으로서 사용하는 절연물 및 기체의 외면에 노출되어 있는 표시등, 퓨우즈홀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보호커어버에는 무게가 250g로서 록크웰 경도 R100의 경도로 표면을 폴리아미드 가공한 반경이 10㎜의 구면을 가지는 추를 다음 표에 보이는 높이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또는 이와동등의 충격력을 록크웰 경도 R100의 경도로 표면을 폴리아미드 가공한 반경이 10㎜의 구면을 가진 충격편으로 가하였을 때에 감전, 화재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균열 기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다만, 기체의 외면에 노출되어 있는 표시등, 퓨우즈홀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의 보호카버로써 표면적이 4㎠이하이고 또한 기체외곽의 표면으로부터 10㎜이상 돌출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　　류	높이 (㎝)
천정부착용기구 및 조명기구	14
기타의 것	20

(32)기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콘트롤러(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벽, 기둥등에 고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이 표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콩크리트 면위에 놓인 두께 30㎜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판의 중앙부에 70㎝의 높이에서 3회 떨어뜨릴 때에 감전, 화재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을 것.

(33)반도체 소자를 사용하여 온도, 회전속도등을 제어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 반도체 소자가 제어능력을 잃었을 때에 제어회로에 접속된 부품이 연소할 우려가 없을 것.

(34)외부에 접속기구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기체에 부속된 콘센트(외부로 전력을 빼내는 것에 한한다)에는 그것 또는 그 근방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최대의 전력 또는 전류의 값을 표시할 것.

(나)기체의 외부에 스피커를 접속하는 단자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단자 또는 그 근방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접속된 부하의 임피단스의 값을 표시할 것.

(35)극성이 다른 충전부 상호간 또는 충전부와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첨두전압이 600V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근방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고압이므로 주위를 요한다는 뜻의 표시를 할 것.

(36)전원전선을 넣는 권취기구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전원전선을 넣고 끌어내는 조작을 매분 약 30m의 속도로 연속하여 1,000회를 하였을 때에 당해 전원전선의 소선의 단선율이 30퍼센트이고 또한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나)전원전선율 30㎝(전원전선의 유효길이가 2m이상으로서 사용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효길이의 5분1의 길이) 끌어낸 상태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 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가하였을 때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의 온도가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이고 또한 권취기구내부의 전원전선 각층의 표면온도가 다음 표의 값 이하일 것.

전원전선의 절연체의 종류	온도 (℃)
비닐혼합물(내열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및 천연고무혼합물	60
비닐혼합물(내열성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75

스틸렌브타디엔고무혼합물 및 크로로프렌고무혼합물	
규소고무혼합물, 에틸렌프로피렌고무혼합물 및 크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고무혼합물	90

(37)접속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접속되는 전원전선등(기구간을 접속한 전선 및 기능상 부득이 기체의 외부에 노출하는 전선으로서 선간전압 및 대지전압이 60V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37)에서 같다)의 기체를 관통하는 부분(이하 "관통부"라 한다)은 다음의 그림에 보이는 시험장치의 가동판의 중심과 관통부와를 일치시키고 전원전선등의 가동범위의 중앙에서 꾸부러지지 않도록 하여 연직이 되도록 기체를 부착하고 전원전선등의 끝에 500g(자중이 500g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자중으로 한다)의 추를 달아 가동판을 좌우 번갈아 다음표에 보이는 각도 및 속도로 연속하여 2,000회 왕복하는 조작을 하였을 때에 전원전선등이 단락되지 아니하고 또한 소선의 단선율이 3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 거치형인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일정한 장소에 놓아 사용하는 것(전기앙카를 제외한다) 및 전원전선등을 넣는 권취기구를 가지는 것의 전원전선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림 생략]

품 명	각 도(도)	왕복속도(회/분)
전기 다리미 전기 앙카	90	40
선 풍 기	60	10
기타의 것	60	40

비고 : 왕복속도에 있어서의 회수는 좌우 각각을 1회로 한다.

(38)동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동전동"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전기회로를 폐로하는것에 있어서는 동전등을 도전회로의 일부로써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동전동을 도전회로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설치상태에서 동전동을 여러개 투입하였을 때 동전동이 노출 충전부가 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합성수지의 외곽(투광성 또는 투시성을 필요로 하는 것 및 기능상 구부러지는 성질, 기계적강도등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외곽의 외면의 9㎠이상의 정방형의 평면부분(외곽에 9㎠이상의 정방형의 평면부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원래의 두께로서 한 변의 길이가 3㎝의 정방형으로 자른 시험편, 이하(5)에 있어서 같다)을 수평면에 대하여 약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당해평면부분의 중앙부에 노즐의 안지름이 0.5㎜인 개스버어너의 공기구멍을 닫은 상태에서 연소시킨 길이 약 20㎜의 화염의 선단을 수직으로 하여 그 밑에 5초간 댔다 떼었을 때에 연소하지 아니할 것.

(40)전자관 컨덴서, 반도체소자, 저항기등을 가지는 절연변압기의 2차측 회로, 정류후의 회로 등에 있어서는 다음의 시험을 하였을때에 그 회로에 접속된 부품이 연소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당해회로에 접속되어 있는 한 부품이 연소할 경우에 다른 부품이 연소할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전자관, 표시등에 있어서는 단자상호간을 단락할 것. [(7)(나)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40)에서 같다]또한 히타 또는 필라멘트 단자를 개방할 것.

(나)컨덴서, 반도체소자, 저항기, 변압기, 코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있어서는 단자 상호간을 단락하거나 또는 개방할 것.

(다) (가) 및 (나)에 게기한 것으로서 금속케이스에 들어있는 것에 있어서는 단자와 금속케이스와의 사이를 단락할 것. 다만 부품 내부에서 단자에 접속되어 있는 부분과 금속케이스가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가), (나) 및 (다)의 시험에 있어서 단락 또는 개방하였을때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41)전원전선등이 일체 성형된 접속기를 가진 것에 있어서는 별표 제3의 5. 다. (4)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전자회로의 입출력 신호의 미소 전류회로 지락전류가 1㎃이하의 회로 등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기체와 전원전선등과를 접속하는 접속기의 유지력은 별표 3의 5. (다) (3) (가)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43)기체의 내부에서 증기등을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체에 부속되는 스위치, 접속기, 코오드등은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증기등에 의하여 생기는 물방울이 맺힐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다만, 이들 부분이 방수구조, 기타 감전, 불꽃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기구의 전기장치부에 충전되어있는 보온재, 단열재등은 난연성의 것일 것. 다만, 보온재, 단열재등이 연소한 경우에 감전, 화재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전열기구로서 기체와 전원전선과를 접속하는 접속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속기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칼 및 칼받이의 치수는 이 표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C 8305(콘센트 및 플럭)에 표시된 치수이상의 것일 것.

(나)가지는 칼 및 칼받이의 접속부는 물림형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탄성을 가지는 구조일 것.

(다)꽂임플럭 칼받이를 가지는 접속부분은 이 표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50℃±3℃의 공기중에 1시간 방치한 후에 자연 냉각시켰을 때 각부의 헐거러움, 부풀음, 갈라짐, 변형 기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별표 3의 부표 2의 (1)이 개폐시험에 적합할 것. 이 경우에 개폐회수는 10,000회로하고 최초의 5,000회는 전열기구의 정격전류를 통하고 다음의 5,000회는 기구의 기동전류를 통하는 것으로 한다.

(46)전열기구로서 외곽의 외면에 유리를 사용한 창문이 있는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약 10℃의 물 200㎤를 유리면에 부었을때 유리가 깨어져 떨어지지 아니할 것.

(47)수증기에 의하여 가압된 상태로 사용하는것에 있어서는 이 표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압력안전변을 가지며, 다음에 적합할 것.

(가)용기내에 물을 넣어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가하여 용기를 가압하였을때에 압력안전변이 확실히 동작하고 감전, 화재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을 것.

(나) (가)에 게기한 상태에서 압력안전변을 구속하였을때에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을 것.

(48)전열기구에 있어서의 전열선 또는 전열체와 맞닿는 부분 및 온도감지부등 그 부근에 연결하는 전선의 단말은 이 표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다만, 전열선 또는 전열체 자체의 발열온도가 200℃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소선이 연합된 도체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나)단선인 도체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단자러그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다. 부품 및 부속품

(1)부품 또는 부속품의 정격전압, 정격전류 및 허용전류는 여기에 가하여지는 최대전압 또는 여기에 흐르는 최대전류 이상일 것.

(2)전원전선등은 이 표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제5의 1. 다. (2)((가)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는 외에 다음에 적합할 것.

(가)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다만, 전기면도기, 전기이발기 또는 전기안마기 기타 이와 유사한 휴대형의 작고 가벼운 기구로서 그 정격전류가 0.5A이하의 것에 사용하는 전원전선에는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금사 코오드(길이가 22.5m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나)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전원전선등의 분기점의 온도가 60℃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분기점으로부터 전원측으로 10㎜의 부분 및 분기점으로부터 부하측 단자까지의 부분을 각 선심마다에 석면사등에 의하여 내열보호를 할 곳. 다만, 내열성의 절연피복을 가지는 것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온도가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전원전선등 또는 분기점의 온도가 80℃를 초과하는 전원전선에는 비닐코오드, 비닐캡타이어 코오드 및 비닐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것.

(라)전원전선등의 길이는 이 표에 특별히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는 140㎝이상일 것. 이 경우에 그 길이는 기체와 전원전선등의 분기점으로부터 전원접속기의 비도전부선단까지의 길이(이하 이 표에서 "유효길이"라 한다)로 하고 기체와 전원접속기와의 사이에 콘트롤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가 삽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길이로 한다. 다만, 전원전압을 직류 45V이하로 변환하는 기구에 있어서 전원접속기가 직접 기구에 연결되어 변환된 전압의 전력을 인출하는것에 있어서는 그 인출선은 70㎝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어어스선은 다음중 어는 하나일 것.

(가)지름이 1.6㎜연공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굵기를 가지는 것으로서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선

(나)공칭단면적이 1.25㎟이상의 단심 코오드 또는 단심캡타이 케이블

(다)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의 2심코오드로서 그 두가닥의 도체를 양단에서 꼬여 납땜 또는 압착한 것.

(라)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의 다심코오드(연합 코오드를 제외한다) 또는 다심캡타이어 케이블의 선심의 하나

(4)퓨우즈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가용체의 재료는 쉽게 변질하지 아니하는 것

(나)붙임단자의 재료는 붙임에 지장이 없는 단단한 것일 것.

(다)온도 퓨우즈에 있어서는 이를 수평으로 하여 항온조에 넣고 온도를 1분간에 1℃의 비율로 상승시켜 온도퓨우즈가 용단하였을때에 온도계법으로 측정한 항온조내의 온도의 온도퓨우즈의 정격동작온도에 대한 허용차는 ±10℃이내일 것.

(5)전열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동작하고 또한 접점을 기계적으로 개폐함에 의하여 온도를 조절하는 구조의 자동온도조절기(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별표 3의 1. 가 및 나의 (1)(6)(8)(10)(11)(12) 및 별표 제3의 부표 제4의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는 외에 다음에 적합할 것.

(가)자동온도조절기가 접속된 회로의 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그 회로의 최대사용전류와 같은 전류를 통하여, 가열하여 회로를 열고, 냉각하여 회로를 닫는 조작을 5,000회 하였을때에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나)(가)에 규정하는 시험 전후에 항온조에 넣고 자동온도조절기가 접속된 회로의 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고, 그 회로의 최대사용 전류와 같은 전류를 통하여, 온도를 1분간에 1℃의 비율로 상승시켜 개로한 후에 1분간에 1℃의 비율로 하강시켜 폐로시키는 조작을 15회하여 폐로 및 개로한때의 온도(1회에서 제5회까지의 조작에 있어서의 온도를 제외한다)를 온도계법으로 측정하였을때 다음에 적합할 것.

종 별		허 용 범 위
개폐시험전	자동온도조절기	개로한때의 온도의 평균치와 폐로한때의 온도의 평균치와의 평균치가 그 설정온도에 대하여 설정온도가 100℃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5℃이내, 100℃이상 200℃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5퍼센트이내, 200℃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10℃이내
	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치	개로한때의 온도의 평균치가 설정온도에 대하여 ±15℃이내
개폐시험후	자동온도조절기	개로한때의 온도평균치와 폐로한때의 온도평균치와의 평균치가 개폐시험전에 측정한 값에 대하여 설정온도가 100℃미만인 것은 ±5℃이내 100℃이상인 것은 ±5퍼센트이내
	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치	개로한때의 온도평균치가 개폐시험전에 측정한 값에 대하여 설정온도가 100℃미만인 것은 ±5℃이내 100℃이상인 것은 5퍼센트이내

(6)온도에 의하여 동작하는 자동스위치는 별표 3의 1. 가 및 나의 (1)(5)(6)(8)(10)(11)(12) 또는 별표 제3, 부표 4의(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는 외에 다음에 적합할 것.

(가)자동스위치가 접속되는 회로 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고 그 회로의 최대 사용전류와 같은 전류를 통하여, 가열하여 회로를 개로하는 조작을 1,000회 하였을때에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온도과승방지용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류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로 및 폐로하는 조작을 각각 4,000회 하였을때에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나)(가)에 규정하는 시험 전후에 항온조에 넣어, 자동스위치가 접속되는 회로의 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고 그 회로의 최대 사용전류와 같은 전류를 통하여 온도를 1분간에 1℃의 비율로 상승시켜 개로시키는 조작을 15회 하여, 개로한때의 온도(제1호에서 제5회까지의 조작에 있어서의 온도를 제외한다)를 온도계법에 의하여 측정하였을때 다음에 적합할 것.

종 별		허 용 범 위
개폐시험전	온도과승방지용	개로한때의 온도의 평균치가 설정온도에 대하여 ±15℃이내,
	기타의 것	개로한때의 온도의 평균치가 설정온도에 대하여 ±10℃이내,
개폐시험후		개로한때의 온도의 평균치가 개폐시험전에 측정한 값에 대하여 설정 온도가 100℃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5℃이내, 100℃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5퍼센트이내

(7)전동기조작용스위치(전기면도기, 전기이발기 또는 전기손톱깍기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별표 제3의 1, 가 및 나의 (1)(5)(6)(8)(10)(11)(12)(13)(14)
(15)(23) 및 별표 제3의 부표 제4의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는 외에 다음에 적합할 것.

(가)스위치에 전동기의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그 스위치에 접속되는 전기기계기구의 최대 부하전류를 통하여 매분 약 20회(타임스위치에 있어서는 약 3회)의 비율로 5,000회(타임스위치에 있어서는 1,000회, 개폐조작을 하였을때에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에 역율은 0.75이상 0.8이하로 한다.

(나)(가)에 규정한 시험후 스위치에 전기기계기구의 종류마다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한 시험전류 및 역율로 폐로 후 즉시 개로 하는 조작을 매분 약 4회(타임 스위치에 있어서는 약 3회)의 비율로 5회 하였을때에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전기기계기구의 종류		시험전류 및 역율
1. 냉각장치를 가지는 전기기계기구	냉방용의것 및 전기제습기	최대부하전류의 4배의 전류 및 0.7 이상 0.75이하의 역율
	냉동용의것	최대부하전류의 6배의 전류 및 0.7 이상 0.75이하의 역율
2. 기타의 것		전동기의 회전자를 구속하고 전동기의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의 1.2배와 같은 전압을 가한 경우에 조작용 스위치에 통하는 전류 및 이 경우의 역율

(다)(나)에 규정한 시험후 최대부하 전류가 1A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스위치에 최대부하 전류를 통하여 각부의 온도 상승이 각각 거의 일정하게 될 때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접촉자의 온도상승은 접촉자의 재료마다 각각 다음 표에 게기 하는 온도상승의 값 이하일 것.

접촉자의 재료	온도 상승 (deg)
동 또는 동합금	40
은 또는 은합금	65

(8)점멸기(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를 제외한다)는 별표 제3의 1. 가 및 나의 (1)(5)(6)(8)(10)(11)(12)(13)(14)(15)(23)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는 외에, 전류가 1A이상의 회로의 개폐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3의 2. 가. (1)(5) 및 나 (6)(7)(9)(10)에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3의 2. 나(6) 및 별표 3의 부표 4의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에 별표 3의 부표 2의 (1)에 개폐시험에 있어서의 부하의 역율은 약 1로 할 수 있다.

(9)개폐기(전동기조작용 스위치를 제외한다)은 별표 3의 1. 가 및 나 (1)(5)(6)(8)(10)(11)(12)(13)(14)(19)(23)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는 외에 전류가 1A이상의 회로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3의 3. (3)(6)(7) 및 다. (8)(9)(11)(12)(13)(14)(15)에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3의 3. 다. (11)와 별표 3의 부표 4의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에 별표 4의 부표 제2. (2)의 개폐시험에 있어서 부하의 역율은 약 1로 할수 있다.

(10)전원회로 또는 전압이 100V이상으로서 최대전류가 1A이상의 회로에 사용하는 접속기는 별표 3의 1. 가 및 나의 (1)(5)(6)(8)(10)(11)(12)(13)(14)(19)(23)(26) 및 5.가 (1)(5)와 다의 (7)(8)(9)(10)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11)변압기 및 전압조정기는 별표 5의1. 가[(9)를 제외한다] 및 나[(2)(6)(9)(13)(14)(15)(16)(17)(18)을 제외한다]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12)방전등용 안정기는 별표 5의1. 가[(9)를 제외한다] 및 나 [(2)(6)(9)(13)(14)(15)(16)(17)(18)를 제외한다]와 나의 가[(1)(3) 및 (4)를 제외한다] 나, 바 및 이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13)전등기(전동력 응용기계기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별표 6의 1. 가와 나(1)(2)(7)(8), 마 및 바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14)컨덴서는 별표 3의 1. 나. (27)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15)과부하 보호장치(퓨우즈를 제외한다)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전동기용의 것에 있어서는 회전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접속된 회로의 전압과 같은 전압을 1분간에 1회의 비율(과부하 보호장치의 구조상 1분간에 1회의 비율로 동작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는 동작할 수 있는 최소의 시간에 1회의 비율)로 가하고, 수동복귀식의 것에서는 10회, 자동복귀식의 것에서는 200회, 동작시험을 하였을때에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나)전류동작식인 것[(가)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정격전류의 2.5배와 같은 전류를 통하고 접속된 회로의 전압과 같은 전압을 1분간에 1회의 비율(과부하 보호장치의 구조상 1분간에 1회의 비율로 동작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는 동자할 수 있는 최소의 시간에, 1회의 비율)로 가하고 수동복귀식의 것에서는 10회 자동복귀식의 것에서는 200회 동작시험을 하였을 때에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에 부하의 역율은 약 1로 할 수 있다.

(다)열동식의 것[(가)에 게기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접속된 회로의 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고 그 회로의 최대사용전류와 같은 전류를 통하여, 감온부를 가열하여 회로를 개로하고 냉각하여 회로를 폐로하는 조작을 1분간에 1회의 비율(과부하보호장치의 구조상 1분간에 1회의 비율로 동작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는 동작할 수 있는 최소시간에 10회의 비율)로, 수동복귀식의 것에 있어서는 10회 자동복귀식의 것에 있어서는 200회의 동작시험을 하였을 때에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16)전동기의 과부하보호장치로서 퓨우즈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회전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 가하였을 때에 퓨우즈가 확실히 용단할 것. 다만, 회전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연소할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소비전력의 허용차

정격소비전력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에 있어서는 소비전력등은 이 표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적합할 것.

(1)전기 유희반, 자동판매기, 통상 충전만을 하는 축전지를 내장한 기구등으로서, 기능상 불확정 전력을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소비전력등의 정격에 대한 허용차가 정격치의 ±3퍼센트 이내일 것. 이 경우에 소비전력 등은 평상온도 시험중 30분간(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에 있어서 소비전력량으로부터 산출하는 것으로 한다.

(2)(가)에 게기 하는 것 이외의 것중 반도체소자 기타 이와 유사한 저항온도계수의 큰 것을 부하로 하는 것 또는 사이리스타 기타 이와 유사한 제어기구를 사용한 것으로서 사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소비전력이 변화하며 또한 그 정격치의 표시를 최대 및 최소의 범위로 표시함이 불가피한 것에 있어서는 그 최대 및 최소의 범위내일 것.

(3)(1) 및 (2)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이 경우에 소비전력등은 평상온도시험에서 소비전력등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정격소비전력을 표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정격소비전력(W)	허용차(퍼센트)
전열기구 이외의 것으로서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을 표시하지 않으면을 아니되는 전열장치 및 전열기구	20이하	+20
	20초과 100이하	+15 (1) ±15 ( ) -15
	100초과 1,000이하	+10 (1) ±10 ( ) -15
	1,000을 초과하는 것	+ 5 (1) ± 5 ( ) -12
기타의 것	10이하	±25
	10초과 30이하	+25 (2) ±25 ( ) -30
	30초과 100이하	+20 (2) ±20 ( ) -25
	100초과 1,000이하	+15 (2) ±15 ( ) -20
	1,000을 초과하는 것	+10 (2) ±10 ( ) -15

비고 : 괄호내의 값은 (1)에 관한 것은 사이리스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발열체에 직렬로 접속한 경우에 적용하고, (2)는 등가부하법에 의하여 평상온도시험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정격용량을 표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정격용량(VA)	허용차(퍼센트)
20이하	+25
20초과 100이하	±20
100을 초과하는 것	±15

(다)정격입력전류를 표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정격입력전력(A)	허용차(퍼센트)
전극식의 것	5이하	+15 -20
	5를 초과하는 것	+10 -15
기타의 것	0.2이하	±25
	0.2초과 1이하	±20
	1을 초과하는 것	±15

(라)정격 역율을 표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에 있어서는 역율은 정격 역율의 ±0.05이내일 것.

마. 잡음의 세기

(1)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로서 정류자 전동기, 전기접점(접점을 기계적으로 개폐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반도체소자를 가지는 기계 기구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잡음 전계강도는 시험품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점에 공중선을 설치하여 측정한 경우에, 주파수가 150KHz이상 200MHz이하의 범위에 있어서 40dB이하일 것. 이 경우에 dB는 1μV/m를 0dB로 하여 산술한 값으로 한다. 다만, 잡음 전계강도의 측정을 시험품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져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험품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 떨어진 점에 공중선을 설치하여 측정하였을때의 잡음전계강도가 다음 표에 게기한 값 이하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파 수 범 위	잡음전계강도(dB)
150KHz이상 1,605KHz이하	60
1,605KHz초과 27MHz이하	55
27MHz이상 200MHz이하	50

(나)잡음단자전압은 주파수가 525KHz이상 1,605KHz이하의 범위에서 일선대지간을 측정한 경우에 65dB이하일 것. 이 경우에는 dB는 1μV를 0dB로 하여 산출한 값으로 한다.

(2)정격소비전력이 30W이하의 형광램프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잡음 전계강도는 시험품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점에 공중선을 설치하여 측정한 경우에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주파수 범위마다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dB는 1μV/m를 0dB로 하여 산출한 값으로 한다. 다만, 잡음전계강도의 측정을 시험품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져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험품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 떨어진 점에 공중선을 설치하여 주파수가 150KHz이상 200MHz이하의 범위에서 측정하였을 때의 잡음 전계강도가 40dB이하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파 수 범 위	잡음전계강도(dB)
150KHz이상 1,605KHz이하	20
1,605KHz초과 27MHz이하	25
27MHz이상 200MHz이하	30

(나)잡음단자전압은 주파수가 525KHz이상 1,605KHz이하의 범위에서 일선대지간을 측정한 경우에 60dB이하일 것. 이 경우에 dB는 1μV를 0dB로 산출한 값으로 한다.

바. 전압변동에 의한 운전성능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평상온도시험의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연속하여 운전하고 전압을 정격전압에 대하여 ±10퍼센트 변동시킨 경우에 지장없이 운전이 계속될 수 있을 것.

2. 전열기구류

가. 전기스토브, 사우나바스용전열기, 증기욕조용전열기 및 전기화로

(1)구조

(가)사우나바스용전열기 및 증기욕조용전열기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의 표시를 할 것. 다만, 기체외부에 금속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옥외용의 전기스토브 및 사우나바스용전열기구의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코오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일 것.

(2)절연성능

옥외용의 전기스코브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2) 및 (3)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때에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에서 (사)까지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사이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의 (4), (7) 및 (8)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이고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하는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송풍장치의 놋지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놋지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송풍정지를 포함한다)에 놓고 각각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측 정 개 소		온 도 (℃)
전기스토오브, 사우나바스용전열기 및 증기욕 조용전열기의 외곽의 외면(발열부의 보호테, 반사판 및 온풍출구를 제외한다)		125
전기회로의 외곽의외면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것	60
	기타의 것	75
시험용화로의 내면		80
운반용 손잡이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것	60
	기타의 것	75
시험품을 놓는 나무대의 표면		80

비고 : 이 표에 있어서 기준주위온도는 섭씨 20℃로 한다.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위에 통상의 사용상태로 놓을 것.

(나)반사면 또는 온풍변향판을 아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반사면 및 온풍변향판을 가장 아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

(다)물받이에는 물을 넣지 말 것. 다만, 전용의 가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자동온도조정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 및 실온에 따라 발열체의 온도를 조정하는 온도 콘트로라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의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을 것.

(마)풍량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풍량조정장치의 놋지를 최소풍량에 놓을 것.

(바)전기화로에 있어서는 원통모양의 황동제의 주전자(그 밑면의 지름이 발열부의 면적과 같은 면적을 갖는 원의 지름이 약 1.2배, 그 높이가 그 밑면의 지름과 같은 길이 이하이고 그 밑면에 흑색도장을 한 것)에 물을 채워 이것을 발열부 위에 놓을 것.

(사)바침대가 없는 전기화로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원통모양의 목제의 시험용 받침대 속에 넣을 것. 이 경우에 시험용 바침대는 내면에 금속판을 붙인 것으로 하고 그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정격소비전력	칫 수(㎜)			
(W)	안지름	깊이	바깥지름	높이
300이하	230	160	280	240
300초과 500이하	300	170	360	300
500을 초과하는 것	300	170	400	300

(4)이상온도 상승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3)의 시험후에 (3)에 게기한 시험조건((라)를 제외한다)에서 자동온도 조절기의 접점을 단락하고, 송풍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송풍장치에는 통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스토브(사우나바스의 것, 증기욕조용인 것 및 축열형인 것을 제외한다)로서 빨갛게 되는 발열체가 외부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2매를 겹친 모포로써 그 전면(밑면 및 실온에 따라 발열체의 온도를 조정하는 온도 콘트롤러의 부분을 제외한다)을 덮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할 때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에 의하여 측정한 나무대, 나무대에 접하는 다리 및 외곽의 온도는 120℃(기준주위온도는 20℃로 한다)이하이고 또한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다만, 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한 경우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될 우려가 없을 때에는 나무대, 나무대에 접하는 다리 및 외곽의 온도는 120℃이하가 아니라고 된다.

(5)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나. 전기앙카 등

(1)구조

(가)기체의 외곽의 재료가 섬유, 고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발열부가 유연성을 가지는 전기앙카(이하 "이불형의 앙카"라 한다)에 있어서는 라. (1), (가) 및 (나)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이불형의 앙카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기체의 외곽의 외면의 온도는 45℃이하에 셋팅할 수 있는 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일 것.

(다)내부에는 온도과승방지장치(온도퓨우즈를 포함한다)를 가질 것. 또 과전류, 과부하등에 의하여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과부하보호장치(전류퓨우즈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설치할 것.

(라)전기앙카 등에는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그 표시요령은 ① 내지 ⑥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종류
온도조절의 방식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다. 2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항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18㎠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다만, 취침용앙카, 상치형앙카, 분리형앙카 및 매입형앙카에 있어서는 그 구조상 동면적에 테두리를 한곳에 붙일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근접한 그곳에 분할하여 붙이는 것으로 하고 그 면적은 각각 9㎠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분할할 때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또는 표시 2의 뜻을 반드시 기재할 것.

①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앙카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②용도에 의한 종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표의 좌란에 게기하는 용도에 의한 종류의 전기앙카에 대하여 그 용도에 의한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용도에 의한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다만, 2이상의 용도에 의한 종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예에 의하여 약기할 수 있다.

예: 상치형(대형), 분리형겸용앙카

용도에 의한 종류	문 자
침구안에 넣어 취침용 전기앙카로 사용하는 것	취침용앙카
대형의 상치형으로서 사용하는 것	상치형앙카(대형)
소형의 상치형으로서 사용하는 것	상치형앙카(소형)
대형의 분리형으로서 사용하는 것	분리형앙카(대형)
소형의 분리형으로서 사용하는 것	분리형앙카(소형)
매입형으로서 사용하는 것	매입형
전열구를 붙여 앙카로서 사용하는 것	전열구앙카
책상에 붙은 앙카로서 사용하는 것	전열구앙카

주 : 대형은 정격소비전력이 500W이상의 것, 소형은 정격소비전력이 500W미만의 것으로 한다.

③온도조절방식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방식의 전기 앙카에 대하여 그 방식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온도조절의 방식	문 자
사용자가 온도를 조절할 수 없는 것	고정식
사용자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가변식

④방수성의 표시는 취침용앙카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표시에 있어서는 KS C 9307(전기이불류)에 규정하는 절연시험(침수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의한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다음에 괄호로서 "방수형"의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⑤사용상의 주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만, ㉮ 및 ㉶에 있어서는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 ㉯, ㉰, ㉲, ㉳ 및 ㉷에 있어서는 그 뜻의 문자에 대신하여 적당한 설명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에 있어서는 적당한 설명도를 부기할 수 있다.

㉮젖먹이, 신체장해자, 병자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늘 사용온도에 주의할 것.

㉯용도에 마추어 사용하고 다른 목적에 전용하지 아니할 것.

㉰소비자가 온도퓨우즈를 교환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지정이외의 온도퓨우즈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외곽 또는 간막이테의 중심에 고정하여 부착할 것(상치형, 분리형 또는 매입형에 한한다)

㉲대형의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43㎝이상 소형의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32㎝이상의 외곽 또는 칸막이테에 붙일 것(상치형 또는 분리형에 한한다)

㉳윗부분의 한변의 길이가 80㎝이상 또 밑부분의 한변의 길이가 43㎝이상의 외곽 또는 칸막이테에 붙일 것(매입형에 한한다)

㉴세우거나 뒤집어서 사용하지 아니할 것(취침용앙카 및 전열구가 붙은 앙카에 한한다)

㉵세우거나 뒤집거나 또는 다리를 떼거나 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책상형앙카에 한한다)

㉶피부가 약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수건 · 모포등으로 쌀 것(취침용앙카에 한한다)

㉷전기모포, 전기요등 채난용 기구와 병용하지 아니할 것.

⑥표시는 상품마다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인쇄한 금속판 합성수지필림 또는 자수한 직포를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꿰메거나 접착제로 붙일 것.

(2)절연성능

이불형의 앙카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5), (가)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가)이불형의 앙카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①에 게기하는 시험조건에 있어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하여 가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②에 게기하는 값에 적합할 것.

①시험조건

㉮상치형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다음의 그림과 같은 목제틀을 올려놓고 그 밑면의 중심에 시험품을 놓고 틀 주위를 두께가 약 10㎝의 면이불로 덮을 것.

[그림 생략]

비고 : 괄호 안의 수치는 정격소비전력이 500W이상인 것에 적용한다.

㉯분할형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목제상자(외면에 두께가 약 5㎜의 석면을 붙인 것)의 위에 ㉮의 그림과 같은 목제틀을 올려놓고 목제상자의 밑면의 중심에 시험품을 놓고 또한 제상자의 윗면에 목제의 격자를 놓아 틀의 주위를 두께가 약 10㎝의 면이불로 덮을 것.

[그림 생략]

비고 : 괄호 안의 수치는 정격소비전력이 500W이상의 것에 적용한다.

㉰매입형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 그림 1에 의한 목제의 상자(외면에 두께가 약 5㎜의 석면을 붙인 것)위에 다음의 그림 2와 같은 목제틀을 올려놓고 목제의 상자밑면 중심에 시험품을 놓고 다음 그림 1에 게기하는 위치에 목제의 격자를 놓아 틀의 주위를 두께가 약 10㎝의 면이불로 덮을 것.

[그림 생략]

㉱틀이 붙은 상치형의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틀의 주위를 두께가 약 10㎝의 면이불로 덮을 것.

㉲탁상용의 것으로서 보온카바를 가지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탁상의 주위를 두께가 약 10㎝의 면이불로 덮을 것.

㉳탁상용의 것으로서 보온카바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위에 놓을 것.

㉴이불형앙카 이외의 앙카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통상의 사용상태로 놓고 그 주위를 두께가 약 10㎝의 면이불로 덮을 것.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을 것.

②온도

각 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4)부터 (8)까지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 한 값 이하. 기타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상치형의 것 및 틀이 붙은 상치형의 것의 온도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게기 하는 값 이하일 것.

측 정 개 소		온 도(℃)
외곽(틀이 붙은 상치형의 것에 있어서는 틀이외의 부분의 외곽)의 외면		130
목제틀의 내부	틀의 천정중심에서 밑	100

	으로 1㎝의 점	
	틀의 측면중심에서 내 측으로 1㎝의 점	100
	틀 밑면의 한변의 중심 에서 위로 1㎝이고 또 한 내측으로 1㎝의 점	100
발열체 또는 발열체의 보호커버		+- 440 -+ | | +- 400 -+
시험품을 놓는 나무대의 표면		90

비고 : 1. 이 표에서 기준 주위온도는 20℃로 한다.

2. 괄호안의 값은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에 적용한다.

㈏분활형의 것 및 매입형의 것의 온도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값 이하일 것.

측 정 개 소		온 도(℃)
외곽의 외면		250
목제상자의 밑면		95
목제의 틀의 내부	틀의 천정중심에서 밑 으로 1㎝의 점	100
	틀의 측면중심에서 내 측으로 1㎝의 점	100
	틀의 밑면(분활형의 것 에 있어서는 격자의 윗 면)의 한변의 중심에서 위로 1㎝이고 또한 내 측으로 1㎝의 점	100
	틀의 밑면의 한변의 중 심에서 밑으로 12.5㎝ (매입형인것에 있어서 는 17.5㎝)이고 또한 내측으로 1㎝의 점	100
격자의 밑면		150
발열체 또는 발열체의 보호커버		+- 440 -+ | | +- 400 -+

비고 : 1. 이 표에서 기준 주위온도는 20℃로 한다.

2. 괄호안의 값은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에 적용한다.

㈐탁상용의 것의 온도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측 정 개 소		온 도(℃)
발열부의 보호망		120
발열체의 붙임부		130
탁상윗면의 중심		110
탁상밑면의 중심		130
상부의 통기구멍		110
탁상의 내부	탁상밑면의 한변의 중 점에서 1㎝로서 또한 밑으로 탁상밑면의 높 이의 2분의 1의 길이가	100

	되는 점	
탁상외내부	탁상밑면의 한변의 중 점에서 내측으로 1㎝로 하고 또한 밑으로 탁상 밑면의 높이로부터 1㎝ 를 뺀 길이의 점	100
발열체 또는 발열체의 보호커버		(400)
시험품을 놓는 나무대의 표면		80

비고 : 1. 이 표에서 기준 주위온도는 20℃로 한다.

2. 괄호안의 값은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에 적용한다.

㉱앙카의 온도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게기 한 값 이하일 것.

측 정 개 소		온 도(℃)
외곽의 외면	축열형인 것	120 (90)
	이불형인 것	70
	기타인 것	90
통기구멍		110
발열체 또는 발열체의 보호커버		440 (400)

비고 : 1. 이 표에서 기준 주위온도는 20℃로 한다.

2. 괄호안의 값은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에 적용한다.

㉲이불형의 앙카에 있어서는 라. (3)에 게기하는 시험조건에서 시험을 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발열체 및 발열체의 보호커버를 제외한다)의 온도는 (가), ②, ㉱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발열체 표면의 가연들에 접하는 곳의 온도는 120℃(기준주위온도는 20℃로 한다)이하일 것.

(4)이상온도 상승

(가)이불형의 앙카이외의 것으로서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가)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3)의 시험후에 (3) (가) ①에게 기하는 시험조건(㉮를 제외한다)에서 자동온도조절기의 접점을 단락하여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간에 시험품, 나무대, 목제의 상자, 목제의 틀, 목제의 격자 또는 면이불이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 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나)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가)에 규정한 시험외에 전동기를 구속한 상태로 (3)의 (가) ①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할 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나무대, 목재의 상자, 목재의 틀, 목제의 격자 또는 면이불이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가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ΩM이상일 것.

(다)탁상형의 것에 있어서는 (가) 및 (나)에 규정한 시험 외에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고, 보온커버를 가지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탁상주위 자동온도조절기가 붙어있는 측면을 제외한다)를 두께가 약 10㎝의 면이불로 덮고, 보온커버를 가진 것에 있어서는 자동온도조절기가 붙어있는 측면의 보온커버를 벗겨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연속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나무대, 면이불 또는 보온커버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가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 일 것.

(라)이불형의 앙카 이외의 앙카에 있어서는 (가)에 규정한 시험외에 옆으로 눕히거나 뒤집힌 상태에서,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주위를 두께가 약 10㎝의 면이불로 덮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할 때에는 그때까지)연속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값 이하이고 또한 500V절연저항계에 의하여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측 정 개 소	온 도(℃)

외곽의 외면	축열형인 것	130 (100)
	기타인 것	100
전원전선의 분기점		90
통기구멍		120
발열체 또는 발열체의 보호커버		440 (400)

비고 : 1. 이 표에서 기준 주위온도는 20℃로 한다.

2. 괄호안의 값은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에 적용한다.

(5)기계적 강도

전기앙카에 있어서는 부표 6의 (1) 및 (3)의 시험을, 기타인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1)의 시험을 하였을때에 이에 적합 할 것.

(6)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할 것.

다. 전기족온기 및 전기스리퍼

(1)구조

(가)기체와 전원전선과를 접속하는 접속기를 가지는 것일 것.

(나)전기스리퍼는 기체와 전원전선을 접속하는 접속기를 가져야 하며 그 접속부분을 80℃±3±의 공기중에 2시간 방치하였을때 각부에 부풀음, 터짐, 갈라짐, 변형 기타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행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가)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이하 (3) 및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의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고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정적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하여 가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제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외곽의 표면에 있어서는 95℃(기준주위온도는 20℃로 한다)이하일 것.

(나)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외곽의 외면이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를 70deg±10deg에 유지하도록 단속하여(외곽의 외면의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가 70deg에 달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속하여)가하고 그동안에 열전온도계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마다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이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의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두께가 약 10㎝의 면이불로 덮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120℃(기준주위온도는 20℃로 한다)이하이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에 의하여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기체외곽이 금속제의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기체의 외곽에 틈이 없이 댄 금속박)와의 사이에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다만, 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할 경우에 시험품 또는 면이불이 연소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각부의 온도는 120℃이하가 아니라도 된다.

(4)기계적 강도

부표 6의(1)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할 것.

라. 전기모포, 전기이불, 전기방석, 전기무릅대기, 전기요, 전기휴대보온기, 전기돗자리, 전기카팻, 전기의자카버, 전기바지, 전기옷, 전기조끼, 전기장판, 전열시트, 전열매트

(1)구조

(가)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기체의 내부온도를 직접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온도조절장치를 가지는 것일 것. 다만,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에서 80℃이하의 포화온도 특성을 가지는 선상이외의 발열체로서 전압의 조정에 의하여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동온도조절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가)에 게기 하는 자동온도조절장치는 다음에 의할 것.

①자동온도조절의 동작은 무접점 스위치에 의할 것.

②온도과승방지장치(온도퓨우즈를 포함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 자체 또는 그 인접부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동작온도가 표시되어 있을 것.

③과전류 또는 과부하의 경우에 확실하게 동작할 수 있는 과부하 보호장치(전류퓨우즈를 포함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를 가지고 있을 것.

④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능과 개폐의 상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가질 것.

⑤기체의 온도를 변화시킬수 있는 조절놉을 가지고 있을 것.

(다)감열선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감열선은 발열선의 피복체 외곽에 동축으로 감긴 것이거나 또는 평행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라)기체와 자동온도조절 장치와의 사이에는 접속기를 가질 것. 다만, 전기무릅대기, 전기휴대보온기, 전기바지, 전기조기, 전기옷과 기체안에 온도조절장치를 내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전기모포, 전기이불, 전기요, 전기돗자리, 전기카펫 및 전기장판에 있어서는 방수처리를 할 것.

(바)전기휴대보온기, 전기무릅대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그 표시요령은 ①에서 ⑥까지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섬유의 조성(표면이 섬유의 것에 한한다)
온도조절의 방식
방수성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25㎠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①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②온도조절방식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온도조절방식에 따라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방식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온도조절의 방식	문　　자
사용자가 온도를 무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무단조절식
기타의것	가단조절식

③사용상의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만,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접은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발열체를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발열체를 떼어놓고 세탁할 것. 이 경우에 세탁방법을 기재할 것.

㉰발열체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에 있어서는 세탁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반드시 카바를 씌워 사용할 것.

㉱발열체를 넣은 채로 다림질을 하지 아니할 것.

㉲다른 채난용기구와 병용하지 아니할 것.

㉳무거운 것을 위에 놓지 아니할 것.

㉴카바를 씌우기 위하여 바느질을 할 때에는 발열체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젖먹이 신체장애자 · 병자등이 사용할 장소에는 항상 사용온도에 주의할 것.

㉶전기모포 및 전기방석은 요안에 넣어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전기방석은 다리미 받침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젖먹이가 잠잘 때에는 침구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④표시에 있어서는 표시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전화번호를 부기할 것.

⑤표시는 상품마다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인쇄 또는 자수한 직포를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을 꿰매거나 접착제로 붙일 것.

(2)절연성능

방수처리를 한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5)(가)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

합할 것.

(3)정온특성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위에 놓고 두께가 약 5㎝의 면이불을 기체에 덮고 자동온도 조절장치의 놉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킨 후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한 후 열전온도계법에 의하여 기체의 표면온도를 측정하였을 때 최고온도와 최저온도와의 차이는 5℃이하일 것. 이 경우에 기체의 표면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4)에 게기하는 표중 비고 2에 따른다.

(4)평상온도상승

(가)다음의 ① 및 ②에 게기 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자동온도조절장치의 각부를 포함한다. 이하 (4)에서 같다)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선온도계법(권선의 온도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 및 (8)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자동온도조절기의 부분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 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제기한 값(자동온도조절기이 주위온도와 기체의 주위온도와의 차를 뺀 값으로 한다)이하 일 것.

측 정 개 소			온 도(℃)
발열부	전기모포, 전기요 및 전기장판		100
	기타인 것		120
기체 외곽의 표면		전기돗자리 및 전기카팻	90
		전기장판	80
		전기모포 및 전기장판	65
		기타인 것	70

비고 : 1. 이 표에서 기준 주위온도는 20℃로 한다.

2. 기체외곽의 표면온도는 그의 표면이 일변이 65㎜의 정방형으로서 두께가 0.5㎜의 표면이 평탄한 동판을 붙여 그 동판에 열전온도계의 감은부를 붙여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두께가 약 5㎝의 면이불 또는 두께가 약 5㎝의 내열성 폴리우레탄폼으로 시험품의 전면을 덮을 것.

②자동온도조절장치에 있어서는 그 조절놉은 최고온도 또는 최고입력에 놓을 것.

(나)전기모포, 및 전기장판에 있어서는 (가)에 규정하는 시험 이외에 (가)에 게기하는 시험조건에서 기체를 절반으로 접어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가 동작할 때에는 그때까지)가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100℃(기준주위온도는 20℃로 할 것)이하일 것.

(5)이상온도상승

(가)다음 ①에서 ③까지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가 동작할 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사이에 열전온도계법 의하여 측정한 발열부의 온도는, 120℃(기준 주위온도는 20℃로 한다.)이하이고 또한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기체외곽에 틈이 없이 댄 금속박과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①두께가 약 5㎝의 면이불 또는 두께가 약 5㎝의 내열성 폴리우레탄폼으로 시험품의 전면을 덮어씌울 것.

②감열선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기체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동작하는 접점과 이상시에 있어서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동작하는 접점을 하나의 접점으로 겸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할 것.

③기체를 겹쳐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쉽게 겹칠 수 있는 정도(겹쳤을때 기체의 한쪽의 표면적이 약 4,000㎠가 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로 겹칠 것.

(나)전기모포, 전기장판 및 전기요에 있어서는 (가)에 규정하는 시험이외에 (가)②와 ③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기체의 반을 두께가 약 5㎝의 면이불 또는 두께가 약 5㎝의 내열성 폴리우레탄폼으로 덮어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가 동작할때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사이에 열전온도계법에 의하여 측정한 발열부의 온도는 120℃(기준주위온도는 20℃로 한다)이하이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기체외곽에 틈이 없이 댄 금속박과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다)감열선을 사용하는 전기모포, 전기장판 및 전기요에 있어서는 (가) 및 (나)에 규정하는 시험이외에 (가) ①로부터 ③까지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감열선의 회로를 절단하고 또한 온도과승방지장치 및 과부하보호장치는 그 보호장치의 접점(감열선이 절단됨에 따라 동작하는 접점은 제외한다)을 단락하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 부분의 온도상승의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사이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발열부 온도는 150℃(기준주위온도는 20℃로 한다)이하이고 또한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기체의 외곽에 틈이 없이 댄 금속박과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6)겹침 성능시험

전기모포, 전기이불,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돗자리 또는 전기카펫으로서 쉽게 겹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쉽게 겹칠 수 있는 정도(겹쳤을때 기체의 한쪽이 표면적이 4,000㎠이하가 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로 겹치고 이를 2등분하는 위치에 둥근막대(직경이 25㎝인것)을 대고 둥근 막대를 안쪽으로 하여 3,000회(전기돗자리, 전기장판 및 전기카펫에 있어서는 1,000회)겹치는 조작을 하였을 때에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에 둥근막대를 대는 위치는 90° 다른 두 방향(한 방향에만 겹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 방향)의 위치를 하고 각가의 위치에 있어서 3,000회(전기돗자리, 전기장판 및 전기카펫에 있어서는 1,000회) 겹치는 조작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7)감열선의 균일특성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감열선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감열선의 전장을 10등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측정한 동작온도의 편차는 다음 표에 적합할 것.

동작온도의 평균치(℃)	편 차(℃)
120이하의 것	±7
120을 초과하는 것	±10

(8)기계적 강도

(가)전기휴대보온기에 있어서는 부표 6의 (1) 및 (3)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1)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나)기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온도조절장치(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벽등에 고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를 콘크리트 바닥위에 놓은 두께가 30㎜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판의 중앙부에 1.8m의 높이로부터 3회 낙하하였을때에 감선, 화재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어야 하며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두께가 30㎜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판을 밑면과 위에 놓고 수직방향으로부터 60㎏의 무게를 약 3분간 가한후 제거하였을때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금, 갈라짐, 깨짐이 없을 것.

(9)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마. 전기온수보온기

(1)구조

(가)사용중에 있어서 진동, 회전등에 의하여 물이 새거나 또는 증기의 분출의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나)주수구를 닫은 상태에서 전류를 통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다만, 주수구를 닫은 상태에서 전류를 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의 표시를 한 것 및 안전변등의 안전장치가 동작하여 주위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없는 구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부표 1의 (1)(2) 및 (4) (가)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 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시험품에 물을 넣고 주수구 이외의 부분을 두께가 약 5㎝의 면이불로 덮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된 후 15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외곽의 외면에 있어서는 95℃이하, 전원전선의 분기점에 있어서는 90℃이하일 것. 이 경우에 기준주위온도는 20℃로 한다.

(4)이상온도상승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기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시험품에 물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수구 이외의 부분을 두께가 약 5㎝의 면이불로 덮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면이불이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기계적 강도

부표 제6의 (1),(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바. 전기변좌

(1)구조

방수처리를 하고 있을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2) 및 (5)(나)의 시험을 할 때에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

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다.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일 것.

측 정 개 소		온도(℃)
외곽의 외면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것	55
	기타의 것	71

비고 : 이 표에서 기준주위온도는 20℃로 한다.

(4)이상온도상승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의 접점을 단락하여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 사용하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연소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150℃(기준주위온도는 20℃로 한다)이하이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기체의 외곽이 금속제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기체외곽에 틈이 없이 댄 금속박)과이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다만, 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한 경우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각부의 온도는 150℃이하가 아니라도 된다.

(5)기계적 각도

표의 6의 (1)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할 것.

사. 전기 채난 의자

(1)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때에 이에 적합할 것.

(2)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2) 및 (3)에 있어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 온도를 최고온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시험품의 상부에 두께가 약 5㎝의 면이불을 덮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으로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의 온도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와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측 정 개 소	온도(℃)
외곽의 외면	95
앉는면의 통기구멍	110
발열부의 보호망	120
발열부의 외곽	125

비고 : 이 표에서 기준주위온도는 20℃로 한다.

(3)이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두께가 약 5㎝의 면이불로 덮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할 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150℃(기준주위온도는 20℃로 한다)이하이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기체의 외곽이 금속제의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기체의 외곽에 틈이 없이 댄 금속박)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다만, 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한 경우에 시험품 또는 면이불이 연소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각부의 온도는 150℃이하가 아니라도 된다.

(4)기계적 강도

부도 6의(1)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아)전기곤로 및 전기레인지

(1)구조

거치형의 전기레인지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 플럭의 어어스 칼날로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부표 4의(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에서 (라)까지 게기하는 시험조건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전기곤로와 전기레인지의 오븐의 문 및 곤로 이외의 부분에 한한다]마다에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하는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을 것.

(다)전기곤로 및 전기레인지의 곤로에 있어서는 원통형의 황동제의 탕비기(그 밑면의 지름이 발열부의 면적과 같은 면적인 원의 지름의 약 1.2배, 그 높이가 그 밑면의 지름과 같은 길이 이하로서 그 밑면에 흑색도장을 한 것)에 그 용량의 80퍼센트의 물을 넣어 이것을 발열부 위에 놓을 것. 이 경우에 시험중에 용기에 넣은 물이 반으로 감소할 때마다 감소한 양과 같은 양의 끓는 물을 가하여야 한다.

(라)전기레인지의 오븐으로서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전기레인지의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오븐의 기체안의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를 240deg±10deg로 유지하도록 전원을 개폐하여(오븐의 기체안의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가 240deg에 달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속하여)가할 것.

(4)이상온도 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 온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강제의 원판(그 지름이 발열부의 면적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의 약 1.2배로서 그 두께가 3㎜의 것)을 전기곤로 및 전기레인지의 곤로부의 발열부위에 놓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다음 표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측 정 개 소	온 도(℃)
나무대	145
전원전선의 분기점	145

비고 : 이 표에서 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

(5)기계적 강도

전기곤로에 있어서는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6)열판의 강도

전기곤로에 있어서는 다음 (가) 및 (나)에 게기 하는 시험을 하였을때 열판의 지름의 3분의 1 이상인 길이의 균열,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갈라짐, 기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기체를 거꾸로 하였을때에 열판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

(가)(3)에 게기하는 시험조건에서 1시간동안 통전하고 전원을 끊은 후 용기를 제거하고 즉시 실온에 가까운 온도의 약 2,000㎤의 물을 열판에 부을 것.

(나)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강판의 위에 놓고, 그 지름이 당해 시험품의 열판의 지름의 값보다 약 3㎜ 짧고 그 두께가 30㎜인 평탄한 강제의 원판을 당해 열판의 거의 중앙에 놓아 다음 표에 보이는 강제의 낙하체를 그 원판의 중앙부에 40㎜의 높이로부터 매분 약 20회의 비율로 연속해서 100회 떨어트릴 것.

정격 소비 전력(W)	낙하체의 중량(㎏)	낙하체의 형상(㎜)
300이하	0.2	[그림 생략]
300초과 600이하	0.75	
600초과 1200이하	1.0	
1200을 초과하는 것	1.5	

자)전기솥, 전기탕비기, 전기주전자, 전기우유포트, 전기증기 발생기, 전기찜통, 전기냄비, 전기채유기, 전기계란삶기, 전기수염깎기용 탕비기

(1)구조

발열체의 충전부 또는 전극이 용기안의 물 기타의 액체에 접촉하고 있는 구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가열되는 것이 비충전금속부에 접속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나)뚜껑을 열었을때 가열되는 것에 전압이 가해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거치형의 전기증기 발생기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

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직접식의 전기솥에 있어서는 외곽에 보기 쉬운 곳(뚜껑을 제외한다)에 내용기와 기체와의 사이에는 물을 넣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뜻의 표시를 할 것.

(마)전기솥과 전기주전자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 ① 및 ②의 표시를 할 것.

①전기솥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그 표시요령은 ㉮에서 ㉅까지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취사방식
취사용량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서 다음 사항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24㎠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솥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취사방식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취사방식에 따라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방식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취 사 방 식	문 자
바깥솥 및 안남비가 있고 바깥솥에 부착되어 있는 열원에 안남비의 밑바닥을 밀착시켜 취사하는 것	직접가열식
바깥솥, 바깥남비 및 안남비가 있고 바깥솥의 밑바닥에 열원을 부착하여 바깥남비에 물을 넣어 취사하는 것	간접가열식

㉰취사용량의 표시에 있어서는 1회에 취사할 수 있는 최대량을 리터 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그 용량을 나타내는 수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상의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만,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가 통하는 부분을 물에 담그지 아니할 것.

㉡정격소비전력이 600왓트를 넘는 것에 대하여는 전원을 반드시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것에 대하여는 전원은 가능한한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할 것.

㉲표시에서 표시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부기 할 것.

㉳표시는 전기솥마다 보기 쉬운 곳에 기재하거나 쉽게 떼어지지 않도록 붙여서 할 것.

②전기주전자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그 표시요령은 ㉮에서 ㉲까지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온도조절의 종류
용량
코오드의 길이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서 다음 사항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24㎠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주전자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온도조절의 종류의 표시에 있어서는 그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고 특히 그 종류가 자동온도조절기에 의하여 수온을 제어하고 일정온도(비등점에 달하지 아니하는 온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자동온도조절방식"의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용량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주전자의 최대수위선까지의 용량을 ℓ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용량을 나타내는 수치의 +10퍼센트, -5퍼센트로 한다.

㉱코오드의 길이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주전자에 부속하는 전원코오드의 유효길이를 m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길이를 나타내는 수치의 +10퍼센트, -2퍼센트로 한다.

㉲사용상의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표시할 것 또 ㉠ 및 ㉡에 있어서는 밑줄을 긋고 활자를 크게하며 문자 또는 라벨의 색을 달리하는 등 다른 표시사항에 비하여 특히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전원은 반듯이 콘센트를 사용할 것.(정격소비전력이 600W를 초과하는 것?? 한한다)

㉡전원은 가능한 한 콘센트를 사용할 것.(정격소비전력이 600W이하의 것에 한한다)

㉢우유 · 술등을 직접 넣어 끓이지 아니할 것.

㉣끓이는 동안 물이 없어질 경우가 있으므로 물의 양에 주의할 것.

㉤전기를 통하는 부분은 물에 담그지 말 것.

㉳표시에는 표시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부기할 것.

㉴표시는 전기주전자마다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기재하거나 또는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고정한 금속판, 합성수지 등에 기재할 것. 다만, 본체에 표시함이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코오드에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인 꼬리표에 기재할 수 있다.

(2)절연성능

(가)용기를 기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구조에 있어서는 부표 4의(1) 및 (2)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2) 및 (4)의 (가)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나)직접식의 전기솥에 있어서는 용기를 기체에서 떼어내어 솥의 내부에 100㎝의 물을 부은 다음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3MΩ이상일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마)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시험을 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의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마다에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용기에는 용기의 정격용량(정격용량의 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용량의 약 80퍼센트, 이하 (3)에서 같다)의 물(전기채유기에 있어서는 식용유)을 넣을 것.

(다)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 또는 자동스윗치(온도과승방지장치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각각의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을 것.

(라)자동스위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가할 것. 이 경우에 용기에 넣은 물이 반으로 감소할 때마다 감소한 양과 같은 양의 끓는 물을 가하여야 한다.

(마)자동스위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자동스위치가 동작할때까지[자동스위치의 동작시간이 30분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한 후에 용기의 정격용량의 물(전기채유기에 있어서는 식용유)을 가하고 다시 자동스위치가 동작할 때까지]또한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가할 것.

(4)이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 또는 자동스위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의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고(전기솥에 있어서는 자동온도조절기 및 자동스위치의 접점을 각각 단락하고)자동온도조절기 또는 자동스위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용기에 물건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기계적 강도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차. 전기보온밥통

(1)구조

(가)뚜껑과 기체는 확실하고 쉽게 물릴 수 있는 레바나 록크 또는 이와 유사한 개폐기구를 가지며 뚜껑을 닫았을 때 기체와 뚜껑은 잘 밀폐되도록 뚜껑 또는 기체에 적절한 처리를 할 것.

(나)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음식물이 직접 닿는 부분은 인체에 유해한 개스, 냄새 또는 석출물 등의 발생이 없으며 또한 쉽게 오염되지 아니할 것.

(다)발열체가 절연피복된 것에 있어서는 그 절연피복이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쉽게 변형하거나 융착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라)내부의 보온재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음식물에 닿거나 썩어 들어가지 아니할 것.

(마)기체내부는 수증기가 응결되는 경우라도 감전의 위험이 없을 것.

(바)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내부의 온도를 직접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내장할 것. 다만,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에서 포화온도특성을 가지는 선상 이외의 발열체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전기보온밥통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그 표시요령은 ①에서 ⑥까지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보온용량
코오드의 길이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서 다음 사항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70㎠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①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보온밥통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②보온량의 표시에 있어서는 속의 용기에 넣어 보온할 수 있는 밥의 최대용량을 ℓ단위로 표시할 것.

③코오드 길이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보온밥통에 부속하는 전원 코오드의 유효길이를 m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허용범위는 그 길이를 나타내는 값의 +10퍼센트, -2퍼센트로 할 것.

④사용상의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또 ㉲ 내지 ㉤에 있어서는 밑줄을 긋고 활자를 크게하며 문자 또는 라벨의 색을 달리하는 등 다른 표시 사항에 비하여 특히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전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콘센트를 사용할 것.

㉯본체 및 본체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는 뚜껑, 핸들을 물에 담그거나 물에 적시지 아니할 것.

㉰보온중에는 반듯이 전원에 접속할 것.

㉱흰밥 이외의 식품에는 변질하기 쉬운 것(혼합곡밥, 볶은밥, 코로케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보온하지 않을 것.

㉲된장국, 카레즙 등의 즙류는 보온하지 않을 것.

㉳찬밥의 가열은 하지 않을 것.

㉴밥주걱을 넣은 채로 보온하지 않을 것.

㉵보온 중에는 뚜껑을 반듯이 닫을 것

㉶속의 용기, 속뚜껑 등은 사용할때마다 잘 씻어 깨끗이 사용할 것.

㉷곤로등 열원이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⑤표시에 있어서는 표시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부기 할 것

⑥표시에는 전기보온밥통마다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기재하거나 또는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고정한 금속판 합성수지 등에 기재할 것.

(2)기준온도

표시된 기준온도는 69℃이상 75℃이하의 범위일 것.

(3)보온특성

용기의 용량은 약 60%에 해당하는 양의 기준온도의 물을 용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전원에 접속하지 아니한 채로 5시간 방치한 후에 열전온도계법으로 내부용기의 물의 중위의 온도를 측정하였을때 온도 강하는 3℃이내일 것. 이 경우에 있어서 기준주위온도는 20℃로서 보통의 통풍을 가지는 실내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3)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용기용량의 약 60퍼센트에 해당하는 물의 양으로서 기준온도보다 6℃ 낮은 온도의 물을 용기에 넣어 뚜껑을 닫은 다음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5시간 동안 연속 가하여 열전온도계법으로 내부용기의 물의 중위의 온도를 측정하였을때 기준온도의 ±2.5℃이내라야 한다. 이 경우에 기준주위온도는 20℃로서 보통 상태의 통풍을 가지는 실내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4)이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조절기 또는 자동스위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용기에 아무 것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에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이 경우에 기준주위온도는 20℃로서 보통상태의 통풍을 갖는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5)기계적 강도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카. 전기토스타, 전기오븐, 전기생선구이, 전기핫프레이트, 전기후라이팬, 와플아이온, 전기문어구이, 전기로스터

(1)표시

전기토스타와 전기로스터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 (가) 및 (나)의 표시를 할 것.

(가)전기토스타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그 표시요령은 ①내지 ⑥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조작의 방식
코오드의 길이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서 다음 사항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20㎠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①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토스타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②조작방식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조작의 방식에 따라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방식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조 작 의 방 식	문 자
빵을 빵구이에 넣는것과 구어진 빵을 꺼내는 것이 모두 수동에 의하는 것	수동식
빵을 빵구이에 넣는 것은 수동으로 하고 빵이 구어지면 자동으로 빵구이에서 튀어 나오는 것	반수동식
빵을 빵구이 앞에 놓으면 자동적으로 빵구이에 들어가고 빵이 구어지면 자동적으로 빵구이로부터 튀어 나오는 것	자동식

③코오드의 길이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토스타에 부속하는 전원코오드의 유효길이를 m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의 오차의 허용범

위는 그 길이를 나타내는 수치의 +10퍼센트 -2퍼센트로 한다.

④사용상의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만,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원은 반드시 콘센트를 사용할 것.(정격소비전력이 600왓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전원은 가능한 한 독립된 콘센트를 사용할 것.(정격소비전력이 600왓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버어터 · 짬등을 바른 빵을 굽지 아니할 것.

㉱사용중에 본체의 표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청소시에는 반드시 꽂임플럭을 콘센트로부터 빼어 놓을 것

⑤표시에 있어서는 표시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부기할 것.

⑥표시는 전기토스타마다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금속판 또는 합성수지판에 기재하거나 또는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서 할 것.

(나)전기로스터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그 표시요령은 ①에서 ⑦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종류
구이망의 치수　　세로×가로
코오드의 길이　　m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서 다음 사항 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38㎠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①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로스터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②종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구조에 따라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 표시할 것.

구　조	문　자
뚜껑의 부분이 개폐될수 있는 것	개폐식
받이부분을 가열실로부터 빼낼수 있는 것	인출식

③구이망의 치수의 표시에 있어서는 구이망의 최대유효 구이면의 세로 및 가로의 길이를 ㎝단위로 표시할 것.

④코오드의 길이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포스터에 부속하는 전원코오드의 유효길이를 m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허용범위는 그 길이를 나타내는 값의 +10퍼센트 -2퍼센트로 한다.

⑤사용상의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또 ㉮, ㉯ 및 ㉰에 있어서는 밑줄을 긋고 활자를 크게 하며 문자 또는 라벨의 색을 달리하는 등 다른 표시사항과 비교하여 특히 눈에 띄는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할 것.

㉮전원은 반듯이 콘센트를 사용할 것(정격소비전력이 600W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전원은 가능한 한 콘센트를 사용할 것(정격소비전력이 600W 이하의 것에 한한다)

㉰사용 중 본체나 뚜껑의 금속부와 접촉하지 아니할 것.

㉱사용중에 옮기지 아니할 것.

㉲사용중에 유리부분에 물을 닿게 하지 아니할 것.

⑥표시에는 표시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부기할 것.

⑦표시는 전기로스터 마다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기재하거나 또는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고정한 금속판 합성수지 등에 기재할 것. 다만, 본체에 표시함이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코오드에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인 꼬리표에 기재할 수 있다.

(2)절연성능

전기후라이팬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4)(가)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가)전기토스타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① 내지 ⑤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시험을 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의 온도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하는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전기로스터의 문 이외의 부분에 한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①시험품은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위에 놓을 것.

②전기후라이팬의 용기에는 정격용량(정격용량의 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용량의 약 60퍼센트)의 식용유를 넣을 것.

③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⑤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할 것.

④③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전기후라이팬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지정개소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를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한 값으로 유지하도록 개폐하여(와플아이온, 전기문어구이, 전기홋프레트로써 그 조리판의 중앙의 온도와 주변온도와의 차가 180deg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 및 전기로스터, 전기오븐 또는 전기생선구이로써 그 기체내의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가 240deg에 달하지 않은 것은 연속하여 가할 것.

지 정 개 소	온도상승(℃)
와플아이온, 전기홋프레이트 및 전기 문어구이의 조리판 중앙	180±10
전기로스터, 전기오븐 및 전기생선구이의 기체내의 중앙	240±10

⑤전기후라이팬으로서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용기내의 식용유의 온도를 180℃±10℃로 유지하도록 개폐하여 (용기내의 식용유의 온도가 18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속하여)가 할 것.

(나)전기토스타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을 정지하고, 자동장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석면판(두께가 약 5㎜이고 두변의 길이가 각각 100㎜ 및 120㎜의 직사각형의 것)을 발열부에 대어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발열부의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가 210deg가 되었을때 회로를 열고 150deg가 되었을 때 회로를 닫은 조작을 반복하여,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가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무부하의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5)기계적 강도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타. 전기소세지구이

(1)구조

전극식의 것에 있어서는 뚜껑을 열었을때에 전극이 충전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정격

전극식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이 125V이하일 것.

(3)절연성능

부표 4의(1)및 (2)의 시험을 하였을때에 적합할 것.

(4)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라)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시험을 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거치형의 것의 경우에 한한다]마다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하는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을 것.

(다)전극식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소세지를 굿는 조작을 10분동안 반복할 것.

(라)(다)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으로 가할 것.

(5)기계적 강도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파. 전기온수기 및 전기물끓이기

(1)구조

(가)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붙어 있을 것.

(나)온수의 출구가 발열부의 위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구조 또는 용기속에 물이 없을 때에는 전류가 통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만, 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 사용하는 자동온도조절기나 자동스위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외곽의 보기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전원전선을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일 것.

(2)절연성능

발열체의 충전부 또는 전극이 용기속의 물, 기타의 액체에 접촉하고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7)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0) 및 (2)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의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고 정격용량(정격용량의 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용량의 약 8퍼센트)의 물을 넣어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여 열전온도계법(권선의 온도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하는 측정개소(동표 (8)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시험품을 놓은 나무대의 표면에 있어서는 90℃(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이하일 것.

(4)이상온도상승

온수의 출구가 발열부의 위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구조 또는 용기속에 물이 없을 때에는 전류가 통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의 접점을 단락하여 물을 넣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하. 전기 온장고

(1)구조

(가)고내에 흐른 물이 충전부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 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부표 4의 (1) (2) 및 (6)(나)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문 이외의 부분에 한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이상온도상승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의 접점을 단락하여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수윗치가 동작하였을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가. 전기버터가온기

(1)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2)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라)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시험을 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하는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시험품의 용기에는 물건을 넣지 아니할 것.

(다)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1시간 가할 것.

(라)(다)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발열부의 외면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를 30deg±10deg로 유지하도록 개폐하여(발열부의 외면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이가 30deg에 달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속하여) 1시간 가할 것.

(3)기계적 강도

부표6의 (3)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냐. 전기보온접시, 전기보온 그릇, 전기가온대, 관상어용 히이타

(1)절연성능

(가)전기보온접시 및 전기보온 그릇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4)(가)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나)상자형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6)(나)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다) (가) 및 (나)에 게게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

(2)평상온도상승

수중용의 것에 있어서 발열부를 수조에 담그고,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2) 및 (3)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수증용의 것에 있어서는 각부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수중용 이외 것에 있어서는 열전온도계법(권선의 온도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3)이상온도상승

수중용의 것 및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가) 내지 (다)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하였을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일 것.

(가)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할 것

(나)수중용의 것에 있어서는 공기중에 달아맬 것.

(다)(나)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4)기계적 강도

관상어용의 히이타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4 (5)급냉시험

관상어용히이타로서 수중용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으로 30분간(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하였을때에는 그때까지)가한후 시험품을 약 10℃의 물에 담궜을때 충전부가 노출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물과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다. 전기머리인두 및 전기빗

(1)구조

전기머리인두로서 네트형 또는 후우드형의 것에 있어서는 방수처리가 되어 있을 것.

(2)절연저항

전기머리인두로서 네트형 또는 후드형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 및 (5)의 (가)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가)전기머리인두로서 네트형 또는 후우드형의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의 안쪽에 지름이 약 20㎝의 구형의 면이불을 넣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1시간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발열체에 있어서는 120℃(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이하일 것.

(나) (가)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① 내지 ④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시험을 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 [동표(7) 및 (8)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서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①자립형의 것에 있어서는 자립의 상태로, 바침대가 붙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바침대가 붙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바침대의 위에 놓은 상태로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②①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다음의 그림에 게기하는 것과 같이 바침대의 위에 놓은 상태로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그림 생략]

③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1시간 가할 것.

④③에서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인두면의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가 110deg±10deg로 유지하도록 개폐하여(인두면의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가 110deg에 달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속하여) 1시간 가할 것.

측 정 개 소	온 도 (℃)
시험대를 놓은 나무대의 표면	나무판이 붙은 마침대의 것 95
	기타의 것(자립형의것을포함한다)95
시험용바침대의 표면및다리부분	105
나무 판이 붙은 부속바침 대의 표면 및 다리부분	105
나무 관이 없는 부속바침대의 다리부 부분 및 자립형의 것의 다리부분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 제의 것 95
	기타의 것 105

비고 : 이 표에 있어서 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

(4)이상온도상승

전기인두머리로서 네트형의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옆으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할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기계적 강도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랴. 파마넨트기

(1)절연성능

부표 4의(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2)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다)에서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시험을 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하는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으로 1시간 가할 것.

(다)(나)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인두면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가 110deg±10deg가 되도록 개폐하여(인두면의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가 110deg 에 달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속하여) 1시간 가할 것.

먀. 도발말개

(1)절연성능

물을 사용하여 말개를 데우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4)(가)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2)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라)에 게기하는 시험조건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말개의 표면 및 가열부의 표면 이외의 부분에 한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자동온도 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을 것.

(다)물을 사용하여 말개를 데우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에 그 정격용량(정격용량의 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용량의 약 80퍼센트)의 물을 넣을 것. 이 경우에 용기에 넣은 물이 반으로 감소할 때마다 감소한 양과 같은 양의 물을 가하여야 한다.

(라)뚜껑을 가지는 것으로서 뚜껑을 연 상태로 말개를 데우는 것에 있어서는 뚜껑을 연 상태로 할 것.

(3)이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및 (나)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하였을때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가)물을 사용하여 말개를 데우는 것에 있어서는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는 것은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대로 용기에 물을 넣지 아니한 상태로 할 것.

(나)(가)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은 그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대로로 할 것.

(라)뚜껑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뚜껑을 닫은 상태로 할 것.

뱌. 모말가습기

(1)구조

수증기의 분출구로부터 물방울이 수증기와 같이 분출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절연성능

용기를 기체로부터 뗄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2) 및 (4)(나)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용기에 정격용량(정격용량의 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용량의 80퍼센트의 물을 넣어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의 온도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용기에 넣은 물이 반으로 줄어들때마다 줄어든 양과 같은 양의 물을 가하여야 한다.

(4)이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용기에 물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하였을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샤. 기타 채난용, 조리용 또는 이용용의 전열기구

(1)구조

(가)거치형의 것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 어어스용단자, 어어스용 인출선 또는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옥외, 부엌, 욕실등 물이 닿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 이상일 것.

(2)절연성능

(가)옥외 또는 욕실등 물이 닿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나)용기를 물등으로 씻는 것으로서 용기를 기체로부터 뗄 수 없는 것 및 증기발생용 탱크를 가지는 것[(다)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4) (가)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다)소용량의 증기발생용 탱크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2) 및 (4)(나)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라)주로 취침중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5) (가)의 시험을, 물이 넘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1), (2) 및 (5)(나)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마)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습도가 높은 공기중에 노출할 염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6)(가)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

에 적합할 것.

(바)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기체의 내부에 증기등의 습기를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2) 및 (6)(나)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사)발열체의 충전부 또는 전극이 용기속의 물, 기타의 액체에 접촉하고 있는 것 (1.나(25)의 단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부표 4의(1), (2) 및 (7)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아)(가) 내지 (사)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사)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하여 통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때)의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거치형의 것에 한함]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부하는 최대부하로 할 것.

(다)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을 것.

(라)입력조정용 콘트로-라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조정장치의 놋치를 최대입력에 놓을 것.

(마)속도조정장치 또는 풍량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조정장치의 놋치를 최저속도 또는 최저풍량에 놓을 것.

(바)기기의 운전을 완전정지하는 타임스윗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타임스윗치를 동작하지 않도록 할 것.

(사)개폐 가능한 통풍구멍등은 닫을 것.

(아) (다) 내지 (사)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것으로서 기체의 온도를 변환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장치를 기체의 온도가 최고의 온도가 되도록 할 것.

(4)이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아)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통전하여,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의 열전온도계법(권선의 온도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기체의 외부의 온도가 160℃이하이고 또 시험품 및 그것을 놓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한 경우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을때에는 각부의 온도는 160℃이하가 아니라도 된다. 이 경우에 시험후 6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시험후 다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1MΩ,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0.1MΩ 이상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옆으로 넘어지거나, 뒤집히거나 또는 겹쳐질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각각 옆으로 누이거나, 뒤집거나 또는 겹쳐진 상태로 할 것.

(다)이불, 모포 기타 이와 유사한 물체로 덮힐 우려가 있는 것 및 이들을 덮어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 물체로 덮은 상태로 할 것.

(라)사용장소가 수중 또는 액체중으로서 공기중에 있어서 방치될 염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공기중에 방치할 것.

(마)물 또는 액체를 넣는 용기를 가지는 것으로서 물 또는 액체가 없는 상태에서 통전시켰을때 이상 발열할 염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물 또는 액체를 용기에 넣지 아니할 것.

(바)항상 사람이 감시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할 것.

(사)송풍장치 또는 통풍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의 장치를 정지시킬 것.

(아)순환장치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장치를 정지할 것.

(자) (나) 내지 (아)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쉽게 위험 또는 이상 사용상태로 이행할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이상 사용상태로 할 것.

(5)기계적 강도

(가)상면에 놓아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밟을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1)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나)합성수지제의 외곽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중에 다른 것으로부터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2)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다)정류자전동기를 가지는 것(무부하로 운전하는 것을 금하는 뜻을 표시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사용중에 부하가 제거될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무부하상태로 연속하여 1분간 운전하였을때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5)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야. 전기소독기

(1)구조

(가)살균등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광선이 직접 외부에 세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발열체의 충전부 또는 전극이 용기속의 물 기타의 액체에 접촉하고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①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가열되는 것이 비충전금속부에 닿을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②뚜껑을 열었을 때, 가열되는 것에 전압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절연성능

(가)기체의 내부에 증기등의 습기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용기를 기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4)(가) 및 (6)(나)의 시험을, 용기를 기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1), (2) 및 (6)(나)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나)살균등만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다) (가) 및 (나)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것으로서 용기가 기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4)(가)의 시험을, 용기를 기체에서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때에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다)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의 온도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하는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용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용기에는 용기의 정격용량[정격용량의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용량의 약 80퍼센트이하 (3)에서 같다]의 물을 넣을 것. 이 경우에 용기에 넣은 물이 반으로 감소할때마다 감소한 량과 같은 양의 끓는 물을 가하여야 한다.

(다)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을 것.

(4)이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용기에 물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하였을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기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쟈. 전열식흡입기

(1)구조

발열체의 충전부 또는 전극이 용기속의 물 기타의 액체에 접촉하고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가열되는 것이 비충전금속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나)뚜껑을 열었을때에, 가열되는 것에 전압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탱크식의 것에 있어서는 압력안전변이 있는 구조일 것.

(2)절연성능

용기를 기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1) 및 (2)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1) 및 (2)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부표 4의 (1), (2) 및 4(나)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마)에 게기한 시험조건에 있어서 시험을 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용기에는 용기의 정격용량(정격용량의 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용량의 80퍼센트, 이하 (3)에서 같다]의 물을 넣을 것.

(다)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 또는 자동스윗치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를 가리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의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을 것.

(라)자동스윗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할때까지 가할 것. 이 경우에 용기에 들어 있는 물이 반으로 감소할때마다 감소된 양과 같은 양의 물을 가하여야 한다.

(마)자동스윗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용, 자동스윗치가 동작할때까지(자동스윗치의 동작시간이 30분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한 후에 용기의 정격용량의 물을 가하고 다시 자동스윗치가 동작할때까지)또는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가할 것.

(4)이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 또는 자동스윗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 또는 자동스윗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용기에 물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 사용하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하였을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분무성능

수증기의 분출구멍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물을 넣어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 가하였을때 물방울이 수증기와 함께 분출하지 아니할 것.

(6)압력안전변의 동작특성

탱크식의 것에 있어서는 물을 넣어 수증기의 분출구멍을 닫은 상태에서 정격전압을 연속 가하였을때 압력안전변이 동작할 것.

(7)기계적 강도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챠. 전기뜸질기

(1)구조

뚜껑 및 외곽은 쉽게 뗄 수 없는 구조일 것. 다만, 떼었을 때에 충전부가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다)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1시간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의 온도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뜸질용의 인두를 가지는 것으로서 자립형의 것 및 받침대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립형의 것 및 받침대를 가지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다. (3)(나)②에 게기한 그림에 의한 받침대 위에 놓을 것.

(나)뜸질용의 인두를 가지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다)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도로 놓을 것.

(라)최대의 부하를 부하한 상태로 할 것.

(4)이상온도상승

뜸질용의 인두를 가지는 것 이외의 것으로서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시험품을 두께가 약 10㎜의 면이불로 덮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때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면이불이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기계적 강도

뜸질용의 인두가 가지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1) 및 (3)의 시험을,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캬. 습윤기 및 전기스팀바스

(1)구조

(가)탱크식의 것에 있어서는 압력안전변을 가질 것.

(나)전기스팀바스에 있어서는 사람이 내부로부터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몸전체가 들어가는 상자형의 전기스팀바스에 있어서는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을 가질 것.

(라)전기스팀바스에 있어서는 내부의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있는 곳에 금속, 유리 및 도자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전기스팀바스 및 거치형의 습윤기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전기스팀바스의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코오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2)정격

전기스팀바스에 있어서는 정격전압이 125V 이하일 것.

(3)절연성능

용기를 기체에서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그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4)(가)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4)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상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 및 (5)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용기에 물을 넣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8)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 동표(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거치형의 것의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시험품을 놓은 나무대의 표면에 있어서는 90℃(기준주위온도는 30℃를 한다) 그 이하일 것.

(5)이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용기에 물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6)분무성능

수증기의 분출구멍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물을 넣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 가하였을때 물방울이 수증기와 함께 분출하지 아니할 것.

(7)압력안전변의 동작성능

탱크식의 것에 있어서는, 물을 넣고 수증기의 분출구멍을 닫은 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 가하였을때 압력안전변이 동작할 것.

(8)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압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탸. 타올증기

(1)구조

발열체의 충전부 또는 전극이 용기속의 물, 기타의 액체에 접촉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가열되는 것이 비충전금속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나)뚜껑을 열었을때 가열되는 것에 전압이 가해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절연성능

(가)기체의 내부에 증기등의 습기가 생기는 것으로서, 용기를 기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1의 (1), (2), (4), (가) 및 (6)(나)의 시험을, 용기를 기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6)(나)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나) (가)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것으로서 용기를 기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1), (2) 및 (4)(가)의 시험을, 용기를 기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4의(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라)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시험을 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용기에는 용기의 정격용량(정격용량의 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용량의 약 80퍼센트)의 물을 넣을 것.

(다)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 또는 자동스위치(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라) 및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의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할 것, 이 경우에 용기에 넣은 물이 반으로 감소할 때마다 감소한 양과 같은 양의 끓는 물을 가하여야 한다.

(라)자동스위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할 것. 이 경우에 용기에 넣은 물이 반으로 감소할 때마다 감소한 물의 양과 같은 양의 끓는 물을 가하여야 한다.

(4)이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용기에 물을 넣지 아니한 상태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때에는 그 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퍄. 전기사우나바스

(1)구조

(가)사람이 내부로부터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일 것.

(나)전신이 들어가는 상자형의 것에 있어서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가지는 것일 것.

(다)내부의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있는 곳에 금속, 유리 및 도자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 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코오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2) 및 (6)(나)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게기한 값 이하일 것.

(5)이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통풍장치에는 통전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때에는 그 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햐. 전기다리미 및 전기재봉인두

(1)구조

(가)자립형의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받침대를 가지는 것일 것.

(나)전기다리미로서 탱크식의 것에 있어서는 압력안전변을 가질 것.

(다)전기증기 발생식 다리미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그 표시 요령은 ① 내지 ⑤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증기발생 방식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서 다음 사항 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의 면적은 2.4㎠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①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증기 발생식 다리미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②증기발생 방식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증기발생방식에 따라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방식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이 경우에 2종 이상의 방식을 복합한 전기다리미에 대하여는 그 방식을 나타내는 문자를 열기할 것.

증 기 발 생 방 식	문 자
기체의 탱크에 물을 담아 직접 발열체로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것	탱크식
기체의 탱크에 물을 담아 발열부에 적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것	적하식

③사용상의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만,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격소비전력이 600W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은 반드시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것에 대하여는 전원은 가능한 한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할 것.

㉯구조상 또는 다른 이유로 광물질, 이물등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광물질 · 이물등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것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상수도의 물 또는 광물질 · 이물등이 적은 물을 사용할 것.

㉰충분히 건조시키고 냉각하여 물기가 없도록 하여 보관할 것

④표시에 있어서는 표시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부가할 것.

⑤표시는 다리미마다 꼬리표를 코오드에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 표시할 것.

(라)기체내의 도전부에 철 및 철합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 가. (5)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에 그 최소 단면적의 부분은 3.75㎟이상이라야 한다.

(2)절연성능

(가)증기발생 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2) 및 (4)(나)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나)발열체의 충전부 또는 전극이 용기속의 물, 기타의 액체에 접촉하고 있는 구조의 것(1의 나(25)의 단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부표 4의(1), (2) 및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다)(가), (나)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가)폿트형의 전기다리미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4)(5)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탱크에 정격용량의 물을 넣은 상태(탱크에 넣은 물이 반으로 감소할때마다 감소한 양과 같은 양의 물을 가하는 것으로 한다)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나) (가)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전기다리미에서는 다음의 ① 내지 ③에 게기한 조건에서 시험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5), (7) 및 (8)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①자립형의 것에 있어서는 자립의 상태로 받침대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받침대 위에 놓은 상태로,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②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1시간 가할 것.

③②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인두면의 중앙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를 150deg±10deg가 되도록 개폐하여 (인두면의 중앙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가 150deg에 달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속하여) 1시간 가할 것.

측 정 개 소		온 도(℃)
시험품을 놓은 나무대의 표면		95
자립형의 것	다리 부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것 및 유리제의것. 95
		기타의 것. 105
	손잡이의 측면의 중앙부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것 및 유리제의 것 45
		기타의 것 60(70)
바침대를 가지는 것	시험품을 놓은 나무대의 표면	금속제의것 95
		나무판이붙은 바침대의것95
	나무판이 붙은 바침대 이외의 다리부	금속제의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것 95
		기타의 105
	나무판이 붙은 바침대의 표	105

	면 및 다리부	
	손잡이의 측면의 중앙부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것 및 유리제의 것 45
		기타의 것 60(70)

비고 : 1. 이 표에서 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

2. 괄호안의 수치는 영업용 다리미인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4)이상온도상승

폿트형의 전기다리미로서 전극식의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용기에 물을 ?A?아니한 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분무성능

수증기 분출구멍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물을 넣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 가하였을때에 물방울이 수증기와 함께 분출하지 아니할 것.

(6)압력안전변의 동작성능

탱크식의 것에 있어서는 물을 넣고 수증기의 분출구멍을 담은 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가하였을 때 압력안전변이 동작할 것.

(7)기계적 강도

(가)폿트형 이외의 전기다리미에 있어서는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은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가하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은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인두면의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를 150deg±15deg 유지하도록 개폐하여(인두면의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가 150deg에 달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속하여) 가하고 용기에 물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리미의 밑면을 수평으로 하여 두께가 5㎜의 강판위에 4㎝의 높이에서 매분 약 5회의 비율로서 연속하여 1,000회 떨어뜨렸을 때 다음에 적합할 것.

①나사 및 단자나사가 풀리지 아니하고 또한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가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것.

②도전불량 및 단락현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③접점이 용착하지 아니할 것.

④조작기구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나)폿트형의 전기다리미 및 전기재봉인두에 있어서는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거. 전기납땜인두 및 전열칼

(1)구조

자립형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바침대를 가질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다)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시험을 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 및 (8)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의 게기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자립형의 것에 있어서는 자립의 상태로, 바침대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바침대 위에 놓은 상태로,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가)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다의 (3)(나)②의 그림에 의한 바침대 위에 놓을 것.

(다)자동온도 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1시간 가할 것.

(라)(다)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인두끝 또는 칼끝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를 270deg±10deg(정격소비전력이 40W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220deg±가 10deg)가 되도록 개폐하여(인두끝 또는 칼끝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가 270deg(정격소비전력이 40W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220deg)에 미달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속하여) 1시간 가할 것.

측 정 개 소	온 도(℃)

시험품을 놓은 나무대의 표면	나무판이 붙은 바침대의 것 95
	기타의 것(자립형의 것을 95 포함한다)
시험용 바침대의 표면 및 다리부	105
나무판이 붙은 부속받침대의 표면 및 다리부	105
나무판을 가지지 아니하는 부속바침대 의 다리부 및 자립형의 것의 다리부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것 95
	기타의 것 105

비고 : 이 표에서 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

(3)기계적 강도

부표 6의 (2) 및 (3)의 실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너. 전기접착기

(1)구조

거치형의 것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과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라)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시험을 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 및 (8)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휴대용 이외의 것인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바침대가 있는 것, 다리가 있는 것, 탁상용의 것 및 거치형의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댜. 의 (3)(나)②의 그림에 의한 바침대 위에 놓을 것.

(나)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1시간 가할 것.

(다)표시된 정격사용 온도가 150℃이하의 것[(나)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1시간 가할 것.

(라)(나) 및 (다)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접착부의 온도가 표시된 정격사용 온도를 유지하도록 개폐하면서 1시간 가할 것.

측 정 개 소		온도(℃)
시험품을 놓은 나무대의 표면	나무판이 붙은 바침대의것	95
	기타의 것(자립형의 것을 포함한다)	95
시험용 바침대의 표면 및 다리부		105
나무판이 붙은 부속바침대의 표면 및 다리부		105
나무판을 가지지 아니한 부속 바침대의 다리부 및 자립형의 것의 다리부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것	95
	기타의 것	105

비고 : 이 표에서 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

(4)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기계적 강도

휴대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더. 투입탕비기

(1)구조

(가)방수처리가 되어 있을 것.

(나)사용중에 수위가 감소함에 의하여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기체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위선을 표시할 것.

(다)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정격전압이 150V 이하로서 정격소비전력이 600W이하의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부표 4의 (1),(2) 및 (5)(다)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습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시험품을 통상의 사용상태가 되도록 수조에 넣어,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이상온도상승

시험품을 공기중에 달아 매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습방지장치로서 사용하다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각부에 폭발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러. 전기순간 탕비기

(1)구조

(가)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과 전원 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2)절연성능

(가)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나)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기체의 외면에 물이 닿을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3) 및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다)발열체의 충전부 또는 전극이 용기속의 가열되는 물에 접촉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7)의 시험을 하였을때에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다)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와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수도꼭지 이외의 부분에 한한다]마다 동표의 우란의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에 물을 통할 것

(나)부착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지정된 곳에 통상의 사용상태로 부착할 것.

(다)벽걸이형의 것에 있어서는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판 위에 통상의 사용상태로 부착할 것.

(4)이상온도상승

물을 통하지 아니하면 통전하지 아니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3)의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품을 통상의 사용상태로 부착하여 물을 통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각부의 폭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머. 수도동결 방지기

(1)구조

(가)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과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2) 및 (6)(가)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길이가 50㎝의 철관에 통상의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기준주위 온도는 20℃로 한다.

(4)이상온도상승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길이가 50㎝의 철판에 통상의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자동온도 조절기의 접점을 단락하여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이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버. 전열보오드

(1)구조

(가)방수처리가 되어 있을 것.

(나)전열보오드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전원 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 및 정격전압이 150V이하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00W이하의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뜻의 표시를 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 이상의 것일 것. 다만, 정격전압이 150V이하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00W이하의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뜻의 표시를 한것에 있어서는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코오드로서 그의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라)온도퓨우즈, 자동온도 조절기 또는 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발열부의 한쪽의 표면적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갯수의 온도퓨우즈, 자동온도 조절기 또는 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를 발열체에 직렬로 접속하고 또한 발열부의 내부에 균일하게 붙일 것.

발열부의 한쪽의 표면적(㎠)	갯 수
8,000이하	2이상
8,000을 초과하는 것	2에 8,000㎡를 초과하는 4,000㎠ 또는 그 단수마다 1을 가한 수 이상

(2)절연성능

수중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5)(다)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5)(다)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가)수중용의 것 및 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물 속에 넣고, 자동온도 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하여 가하였을 때에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나)(가)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여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이상온도상승

(가)수중용의 것 및 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나)(가)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두께가 약 5㎝의 면이불로 덮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 연

속 가하여 그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150℃(기준주위 온도는 20℃로 한다)이하이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절연저항은 1MΩ이상일 것. 다만, 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한 경우에 시험품, 나무대 또는 면이불이 연소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각부의 온도는 150℃이하가 아니라도 된다.

(5)기계적 강도

부표 6의 (1)의 시험을 하였을때에 이에 적합할 것.

서. 전기육묘기

(1)구조

(가)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충전부에 물이 묻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콘센트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방수형의 것을 사용하고 있을 것.

(다)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지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한 것 및 전원 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 이상의 것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다)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용기에 물을 넣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에 물을 넣을 것.

(다)자동온도 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의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을 것.

(4)이상온도상승

자동온도 조절기 또는 날개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가) 내지 (다)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할 것.

(다)용기에 물을 넣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에 물을 넣지 아니할 것.

(라)날개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날개를 구동시키는 전동기에 통전하지 아니할 것.

(5)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어. 전기부란기 및 전기육추기

(1)구조

(가)거치형의 것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코드, 장원형 비닐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면적이 0.75㎟ 이상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기체에 물건을 넣지 아니한 상태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이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다)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 할 것.

(다)송풍장치의 전동기 또는 회전드럼을 구동시키는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에 통전하지 아니할 것.

(5)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최대부하를 부하한 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저. 전기건조기

(1)구조

(가)발열체에는 보호커바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충전부에 물이 묻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거치형의 것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코드, 장원형 비닐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써 그 공칭단면적이 0.75㎟ 이상의 것일 것.

(2)절연성능

상자형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6)(나)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6)(나)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가)헬리오타잎용 건조기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건조면의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가 100deg가 되었을 때 회로를 열고 80deg가 되었을 때 회로를 닫는 조작을 반복하면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 이하 (3)에서 같다)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 [동표 (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거치형의 것에 한하고 건조면 및 배기구멍을 제외한다]마다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조면의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가 100deg로 도달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 가할 것.

(나)구두용 건조기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통상의 사용상태로 부착하여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 있어서는 거치형의 경우에 한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다)(가) 및 (나)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 있어서는 거치형의 경우에 한하고 건조면 및 배기구멍을 제외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이상온도상승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의 접점을 단락하여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메가옴이상일 것.

처. 전기프레스기

(1)구조

(가)탱크식의 것에 있어서는 압력안전변을 가질 것.

(나)거치형의 것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가)바지 푸레스기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2) 및 (6)(가)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이경우에 부표 4의 (6)(가)의 시험은 바지 푸레스기의 프레스면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나)증기발생 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가)에 게기하는 시험외에 부표 4의 (4)(나)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다)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시험을 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는 푸레스부 이외의 부분에 한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용기에 물을 넣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에 물을 넣고,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용기에 물을 넣지 아니할 것.

(다)자동온도 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에 놓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 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하여 가할 것.

(라)(다)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푸레스면의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를 150deg±10deg로 유지하도록 각부의 온도 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개폐하여(프레스면의 중앙의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가 150deg에 미달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속하여) 가할 것.

(4)이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용기에 물을 넣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 또는 자동스위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의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 또는 자동 스위치를 가지지 아니하는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용기에 물을 넣지 아니한 상태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이상일 것.

(5)분무성능

수증기의 분출구멍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물을 넣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 가하였을 때 물방울이 수증기와 함께 분출하지 아니할 것.

(6)압력 안전변의 동작성능

탱크식의 것에 있어서는 물을 넣고 수증기의 분출구멍을 닫은 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 가하였을 때 압력 안전변이 동작할 것.

(7)기계적 강도

휴대형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1)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8)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할 것.

커. 전기훈증 살충기 및 전기향로

(1)구조

(가)발열부는 훈증제를 놓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노출하지 아니할 것.

(나)뚜껑 및 외곽은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것일 것. 다만, 분리한 경우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부표 4,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 및 (8)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측 정 개 소		온도(℃)
외곽의 외면(발열부의 보호 테두리를 제외한다) 및 손잡이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것	55
	기타의 것	70
시험품을 놓는 나무대		90

비고 : 이 표에서 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

(4)이상온도 상승

전기훈증 살충기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밑면 이외의 부분을 약 91㎠의 면포(밀도가 25.4㎜에 대하여 세로 72본±4본, 가로 69본±4본으로서 30번수의 종사 및 36번수의 횡사를 사용한 풀먹이지 아니한 평직의 면포, 이하 (4)에서 같다)로 덮고 다시 그 위를 모포로 덮어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할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160℃(기준주위 온도는 30℃로 한다)이하이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다만, 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할 경우에 시험품, 나무대, 면포 또는 모포가 연소할 우려가 없을때에는, 각부의 온도는 160℃이하가 아니라도 된다.

(5)기계적 강도

전기훈증 살충기에 있어서는, 부표 6의(1)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터. 전기 점화기

(1)절연성능

부표 제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2)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휴대형인 것에 있어서는 댜의 (3) 및 (나)②의 그림에 의한 바침대)의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2) 및 (3)에서 같다)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동스위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하여 가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3)이상온도상승

점화할 때에 점화되는 물체안에 직접 삽입하여 사용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 또는 자동스위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의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 조절기 또는 자동스위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발열부의 면적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철판으로 발열부의 표면을 덮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4)기계적 강도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퍼. 환기용 전열기

(1)구조

(가)발열부에는 적당한 보호 테두리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옥외용의 것의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 이상의 것일 것.

(2)절연성능

(가)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3)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 상승

시험품을 통상의 사용상태로 부착하여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3. 전동력응용기계기구

가. 선풍기, 환풍기, 써어큐레이터 및 송풍기

(1)구조

(가)높이가 조절 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높이를 최대로 하고,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10도 기울여도 쉽게 넘어지지 아니할 것.

(나)높이가 조절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필요한 높이로 쉽게 고정할 수 있고 또한 고정이 풀려도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을 것.

(다)좌우회전장치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좌우 회전운동 하는데 따라 코오드가 손상하지 아니하고 또한 외부로부터 좌우 회전운동을 방해하여도

고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탁상 선풍기는 사용상태에 있어서 안전하게 운반 할 수 있을 것.

(마)옥외형의 것의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케이블, 장원형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코오드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 이상의 것일 것.

(바)선풍기 및 환풍기에 있어서는 각각 ① 및 ②의 표시를 할 것.

①선풍기

좌우회전각도를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과 좌우회전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또는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그 표시 요령은 ㉮ 내지 ㉲에 의하여야 한다.

(회전각도를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품명 및 형명	
날개의 크기(지름)	cm
풍속(최고속도의 경우)	m/min
풍량(최고속도의 경우)	㎥/min
회전각도(조절가)	도
중량	
코오드의 길이	m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회전각도를 조절할 수 없는 것 및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품명 및 형명	
날개의 크기(지름)	cm
풍속	m/min
풍량	㎥/min
회전각도	도
중량	
코오드의 길이	m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서 다음사항 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선풍기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날개의 크기의 표시에 있어서는 날개의 회전에 의하여 날개의 선단이 그리는 원의 지름을 ㎝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의 ±1㎝로 할 것.

㉰풍속 및 풍량의 표시에 있어서는 KS C 9301 (탁상선풍기)에 규정하는 풍속의 측정방법 및 풍량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얻은 수치를 풍속에 있어서는 m/min의 단위로, 풍량에 있어서는 ㎥/min의 단위로 각각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의 ±10으로 할 것.

㉱회전각도의 표시에 있어서는 날개의 회전시에 왕복회전동작을 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왕복회전 각도를 날개의 회전시에 원형회전동작을 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환풍 각도를 표시할 것. 다만, 각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조절가능한 모든 각도를,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조절 가능한 각도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중량의 표시에 있어서는 선풍기본체 및 코오드의 중량의 합계를 ㎏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허용범위는 그 중량을 나타내는 수치의 ±10%로 한다.

㉳코오드의 길이의 표시에 있어서는 선풍기에 부속하는 전원코오드의 유효길이를 m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길이를 나타내는 수치의 +10퍼센트, -2퍼센트로 한다.

㈑사용상의 주위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표시할 것. 다만, ㉠에 있어서는 신나 · 벤젠 · 등유 · 벤졸 등으로 손상을 받는 합성수지부분 또는 도장면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에 있어서는 천정회전형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날개 · 손잡이 등의 합성수지부분 및 도장면의 소제에는 신나 · 벤젠 · 등유 · 벤졸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보호망속에 손을 넣지 아니할 것.

㈒표시에는 표시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부기할 것.

㈓표시는 선풍기마다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인쇄한 금속판 또는 합성수지판을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붙여서 표시할 것. 다만, 선풍기 본체에 표시하는 것이 곤난한 경우에는 꼬리표를 코오드에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일 수 있다.

②환풍기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그 표시요령은 ㈎에서 ㈒까지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날개의 크기(지름) cm
풍량 배기 ㎥/min
흡기 ㎥/min
샷타의 조작방법
소음
사용상의 주의 phon(측정거리)
표시자

비고 : 1. 공기의 흡입이 불가능한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흡기 ㎥/min"의 문자를, 샷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샷타의 개폐"의 문자를 삭제할 것.

2. 표시에서 다음사항 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3.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환풍기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날개의 크기의 표시에 있어서는 날개의 회전에 의하여 날개의 선단이 그리는 원의 지름을 ㎝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의 ±1㎝로 할 것.

㈐풍량의 표시에 있어서는 KS C 9304 (환기선풍기)에 규정한 풍량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얻은 수치를 "m/min"의 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의 ±10퍼센트로 한다. 또 배출 이외에 흡입이 가능한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배출 및 흡입의 풍량을 각각 표시할 것.

㈑샷타의 조작방법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샷타의 조작방법의 환풍기에 대하여 그 조작방법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조작방법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샷타의 조작방법		문 자
샷타의 개폐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자동식
샷타의 개폐의 조작이 수동으로 되는 것	전동기의 스위치의 조작과 연동하고 있지 아니한 것	수동식
	전동기의 스위치의 조작과 연동하고 있는 것	스위치와 연동식
	전동기의 스위치의 조작과 연동하고 있는 것으로서 절환에 의하여 샷타의 개폐 조작만을 할 수 있는 것	스위치와 의 연동식 (수동가)

㈒소음의 표시에 있어서는 KS C 9304(환기선풍기)에 규정하는 소음시험으로 측정한 소음을 phone단위로 표시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소음을 표시하는 수치의 +3phone, -7phone으로 할 것. 또 소음의 측정의 경우에는 속도조정스위치가 있는 것은 최고속도로 하고 흡입식의 것은 배기의 상태로 루어버의 방향은 풍량을 측정할 때의 방향으로 한다.

㈓사용상의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표시할 것. 다만, ㉡에 있어서는 침수시켜도 무방한 것인 경우, ㉢에 있어서는 신나 · 벤젠 · 등유 · 벤졸 등으로 손상을 받는 합성수지부분 또는 도장면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너무 더러워지기 전에 가능한 한 ○달(청소의 빈도를 표시하는 월수)마다 청소할 것.

㉡청소시에는 전동기 · 스위치 · 콘덴서등의 전기부품은 물에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날개 등의 합성수지부분 및 도장면의 청소에는 신나 · 벤졸 · 등유 · 벤젠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표시에 있어서는 표시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부기할 것.

㉯표시는 환풍기마다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인쇄한 금속판 또는 합성수지판의 라벨을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붙여 표시할 것. 다만, 환풍기 본체에 표시함이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꼬리표를 코오드에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일 수 있다.

(2)절연성능

(가)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나)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다)환풍기에 있어서는 부표 4의 (6), (가)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외각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시험품의 종류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 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장치의 놋치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을 하여야 한다.

시험품의 종류	온도(℃)
탁상선풍기 또는 스탠드 선풍기	65
천정선풍기 또는 송풍기	70
환풍기 또는 써어큐레이터	80

비고 : 이 표에서 기준 주위온도는 환풍기에 있어서는 40℃,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30℃로 한다.

(4)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이 경우에 자동샷다가 있는 환풍기에 있어서는 날개가 회전하였을 때 샷다가 열려야 한다.

(5)기계적강도

프로펠라의 지름이 20㎝미만인 선풍기에 있어서는 부표 6의(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를 적합할 것.

나. 전기 냉방기

(1)구조

(가)난방용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온도 퓨우즈, 기타의 온도과승방지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나)압축용 전동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다)기름 및 냉매가 누설될 우려가 없을 것.

(라)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 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옥외용의 것의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바)전기냉방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그 표시요령은 ① 내지 ⑦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냉방능력	냉방면적		난방능력	난방면적		소음	
	철근 아파트 남향양실	일반가옥		철근 아파트 남향양실	일반가옥	실내	실외
Kcal/h	㎡	㎡	Kcal/h 또는 kw	㎡	㎡	phon	phon

①냉방면적의 수치는 10㎡당 3인정도가 있는방에서 33℃의 실온을 27℃까지 낮추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나 방의 구조, 열원의 유무에 따라 변합니다.

②난방면적의 수치는 10㎡당 3인정도가 있는 방에서 외기온도가 0℃가 되는 날에도 실온을 21℃로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 나 방의 구조, 열온의 유무, 외기온도등에 의하여 변합니다. ③추운곳 특히 외기온도가 낮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판매점에 상의하여 주십시오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서 다음사항 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60㎠ 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3. 다음의 경우에 문자 또는 표시에서 생략할 수 있다.

가. 수냉식의 것은 "실외"의 문자 및 그 문자에 대응하는 표시

나. 냉방전용의 것은 "난방능력 및 난방면적"의 문자 및 그 문자에 대응하는 표시와 ②의 표시

다. 공냉히이터펌프난방이외의 것은 ③의 표시

①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냉방기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전기냉방기의 호칭으로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②냉방능력 또는 난방능력의 표시에 있어서 전기냉방기의 정격주파수마다 표준전압에 있어서 KS C 9306(전기냉방기)에 규정하는 냉방능력 또는 난방능력의 시험방법으로 얻은 수치를 Kcal/h(전열만에 의한 난방의 경우에는 kw)의 단위로 표시할 것. 다만, 물증발식의 것에 있어서는 냉방능력 또는 난방능력의 표시를, 난방을 개스, 등유, 온수 등 전열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난방능력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냉방능력 또는 난방능력을 표시하는 수치의 +15퍼센트, -8퍼센트(전열만에 의한 난방의 경우에는 난방능력의 수치가 1kw이하의 것은 ±10퍼센트, 1kw를 초과하는 것은 ±5퍼센트)로 한다.

③냉방면적 또는 난방면적의 표시에 있어서는 ②에 게기하는 냉방능력 또는 난방능력의 수치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종류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단위상 면적당의 냉방부와 또는 난방부하로 나누어 얻은 수치[그 수치에 단수가 있을때에는 KS A 0021(수치의 맺음법)에 의하여 정수로 마무리한 수치]를 ㎡단위로 표시할 것. 다만, 물 증발식의 것에 있어서는 냉방면적 또는 난방면적의 표시를 난방을 개스, 등유, 온수등 전열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난방면적의 표시를 각각 생략할 수 있다.

종 류	단위상면적당 냉방부하 또는 난방부하			
	평방미터에 대한 시간당 열량 (Kcal/h · ㎡)			평방미터당 전열용량 (W/㎡)
	냉방	히이트펌프난방(전열의 병용운전을 포함한다)		
		공랭식	수냉식	
철근아파트 남 향 양 실	125	200	165	190
일 반 가 옥	190	250	205	240

④소음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냉방기의 정격주파수마다의 표준전압에 있어서 KS C 9306(전기냉방기)에 규정한 소음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얻은 수치를 phon단위로 표시할 것.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소음을 나타내는 수치의 +3phon, -7phon으로 한다.

⑤사용상의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표시할 것. 다만, 냉방전용의 것에 대하여는 ㉲의 사항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에 있어서는 밑줄을 긋고 활자를 크게 하고 문자 또는 라벨의 색을 달리하는 등 다른 표시사항에 비하여 특히 눈에 띄는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할 것.

㉮전원은 가능한 한 전기냉방기전용회로로부터 취할 것.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어스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어어스를 할 것.

㉰소음은 설치방법이나 주위조건에 따라 달라짐으로 이에 주의하여 설치할 것.

㉱공기의 흡입구의 주위에는 공기에 흡입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놓지 아니할 것.

㉳정전후 다시 운전을 개시할 때에는 0분(적당한 간격을 나타내는 시간)이상 경과한 후 운전할 것.

㈅필터에는 먼지가 끼면 냉방능력 및 난방능력이 떨어지므로 계절의 개시와 더불어 반드시 소제하고 특히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0주(소제의 빈도를 나타내는 주의 수)마다 소제할 것.

㈆급속하게 실온을 올릴 경우나 추운 곳 등 특히 외기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다른 난방기구와 병용할 것.

⑥표시에 있어서는 표시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부기할 것.

⑦표시는 전기냉방기마다 보기 쉬운 곳에 기재하거나 인쇄한 금속판 또는 합성수지판의 라벨을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 표시할 것.

(2)절연성능

옥외형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3)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가)냉방운전시험

다음의 ① 내지 ③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에 저항법으로 측정한 권선의 온도는 부표 5의 값 이하이고, 또한 기타의 곳에 이상발열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에 속도 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 조정장치의 놋치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①주위온도는 30℃±5℃로 할 것.

②난방용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난방용 전열장치에 통전하지 아니할 것.

③응축기가 수냉식의 것에 있어서는 냉각수의 입구에 있어서는 수온이 20℃이상 25℃이하이고 냉각수의 입구의 온도와 출구의 온도와의 차가 11deg가 되도록 할 것.

(나)난방운전 시험

히이트 펌프식인 것 및 난방용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① 내지 ④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고 연속 운전하여,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1),(3) 및 (6)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이고 또한 기타의 곳에 이상발열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에 속도 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 장치의 놋치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①주위온도는 20℃±2℃일 것.

②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③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을 것.

④응축기가 수냉식인 것에 있어서는 냉각수의 입구에 있어서의 수온이 13℃ 이상 18℃ 이하로서 냉각수의 입구온도와 출구의 온도와의 차가 9deg가 되도록 할 것.

측 정 개 소	온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외곽 (발열부의 보호테두리 및 온풍출구를 제외한다)	125
시험품을 올려놓은 나무대의 표면	80

비고 : 이 표에서 기준 주위온도는 20℃로 한다.

(4)이상온도상승

난방용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가) 내지 (라)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힌 측정개소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이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연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다만, 온도 퓨우즈 또는 온도 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한 경우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각부의 온도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값 이하가 아니라도 된다.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송풍장치에는 통전하지 아니할 것.

(다)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한 것.

(라)응축기가 수냉식인 것에 있어서는 냉각수의 입구에 있어서의 수온이 13℃ 이상 18℃ 이하로서 냉각수의 입구온도와 출구의 온도와의 차가 9deg가 되도록 할 것.

측 정 개 소	온도(℃)

시험품을 올려놓은 나무대의 표면	150
기체의 외곽(발열부의 보호테두리 및 온풍출구는 제외)	150

비고 : 이 표에서 기준 주위온도는 20℃로 한다.

(5)소비전력의 허용차

(3)에 규정한 시험에서 소비전력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에 측정한 소비전력은 정격소비전력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6)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할 것.

(7)냉매 누설

누설 검지기 등으로 검사하고 냉매의 순환계통으로부터 냉매의 누설이 검지되지 아니할 것.

다. 전기 냉풍기

(1)구조

(가)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충전부에 물이 닿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냉각기 및 배관은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누수가 없고, 또한 이슬로 인하여 생긴 물은 배수할 수 있을 것.

(다)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배관에 물을 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에 저항법으로 측정한 권선의 온도는 부표 5의 값 이하이고 또한 기타의 곳에 이상발열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장치의 놋치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을 하여야 한다.

(4)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라. 전기 온풍기

(1)구조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2㎾이하의 것으로서 자반형인 것에 있어서는 사용상태에서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을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라)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운전하고, 각부와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단, 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4), (7) 및 (8)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의 게기한 값 이하이고,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장치의 놋치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반사면 또는 온풍 변향판을 아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반사면 또는 온풍 변향판을 가장 아래로 향하게 할 것.

(다)풍량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풍량조정장치의 놋치를 최소 풍량으로 놓을 것.

(라)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을 것.

측 정 개 소		온도(℃)
운반용의 손잡이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것	60
	기타의 것	75
시험품을 놓은 나무대의 표면		80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외곽		125

(발열부의 보호테두리 및 온풍출구를 제외한 다)	

비고 : 이 표에서 기준 주위온도는 20℃로 한다.

(4)이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나)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의 열전 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값 이하이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다만, 온도 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차가 동작한 경우에 있어서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각부의 온도는 다음 표에 게기한 값 이하가 아니라도 된다.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 할 것.

(다)송풍장치에는 통전하지 아니할 것.

측 정 개 소	온도(℃)
나무대 및 나무대에 접하는 다리부분	150
외곽(발열부의 보호테두리 및 온풍출구를 제외)	150

비고 : 이 표에서 기준 주위온도는 20℃로 한다.

(5)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마. 공기 청정기

(1)구조

(가)전기집진부분, 전리부분, 이온 발생부분 등의 고압이 부분은 사람이 쉽게 닿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외곽으로 보호되어 있을 것.

(나)전원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다)전기 집진방식의 것으로서 집진부를 분리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잔류전하를 방전시키기 위한 장치를 가지며 또한 집전부를 분리하기 위한 문풍을 개방할 경우에 전원회로가 차단되는 구조일 것.

(라)살균 등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자외선이 직접 외부에 누설되지 아니할 것.

(마)정격전압이 150V 이하의 기계적 집진 방식의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 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탁상형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2) 및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최대의 부하를 가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장치의 놋치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을 하여야 한다.

(4)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기계적 강도

탁상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바. 전기 소제기 및 전기 마루닦기

(1)구조

(가)전기 소제기로서 정격소비전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 또는 마루닦기의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코오드 또

는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 이상의 것일 것.

(나)전기소제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그 표시요령은 ① 내지 ⑦에 의한다.

품명 및 형명
흡입율 W
(진공도 mmAq, 풍량 ㎥/min)
코오드의 길이 m
중량 kg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서 다음사항 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25㎠ 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①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소제기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전기소제기의 호칭으로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②흡입율·진공도 및 풍량의 표시에 있어서는 KS C 9101(전기소제기)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흡입율을 W_1 , 진공도를 mmAq 및 풍량을 ㎥/min 의 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흡입율의 허용범위는 표시치의 ±15퍼센트로 한다.

③코오드의 길이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소제기에 부속하는 코오드의 유효길이를 m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표시치의 ±10퍼센트, -2퍼센트로 한다.

④중량의 표시에 있어서는 소제기의 본체 및 부속품(호오스·연장관·마루용흡입구 및 코오드에 한한다)의 중량의 합계를 kg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중량을 나타내는 수치의 ±10퍼센트로 한다.

⑤사용상의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원은 가능한 한 콘센트를 사용할 것.

㉯먼지받이 및 휠타의 먼지로 빠른 시간내의 청소할 것.

㉰물을 흡입시키지 아니할 것

⑥표시에 있어서는 표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부기할 것.

⑦표시는 전기소제기마다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기재하거나 또는 인쇄한 금속판·합성수지판을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붙일 것. 다만, 소제기 본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쇄한 꼬리표를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도록 코오드에 붙일수 있다.

(2)절연성능

전기 소제기에 있어서는 부표 4의(1) 및 (2)의 시험을, 전기 마루닦기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6), (가)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 상승

전기소제기에 있어서는 부속하는 호오스 및 연장관을 붙여 흡입구를 전부 열었을 때의 부하를, 전기마루닦기에 있어서는 표시된 전부하전류와 같은 전류를 부하 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있는 외곽에 있어서는 65℃(기준 주위 온도는 30℃로 한다)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 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 조정장치의 놋치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

(4)내 과속도 성능

전기 소제기에 있어서는 흡입구를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3분간 운전하였을 때에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5)기계적 강도

휴대형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2) 및 (3)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2)의 시험을 하였을때에 이에 적합할 것.

(6)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사. 전기구두닦기

(1)구조

거치형의 것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 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휴대형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2) 및 (6)(가)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무부하의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30분간(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운전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기계적 강도

부표 6의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시동특성

무부하의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아. 전기세탁기 및 전기탈수기

(1)구조

(가)충전부에 물이 닿지 아니하고 또한 탁상형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충전부(전원전선과 기체와의 접속부를 포함한다) 및 전동기의 가장 밑면이 바닥면에서 5㎝이상 떨어져 있을 것.

(나)수조, 물받이 및 배관은 사용상태에서 누수가 없고 또한 수조 및 물받이에는 배수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기체를 기울여 쉽게 배수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사용상태에서 뚜껑을 연 경우에 외부에 현저하게 물방울이 튀어나오지 아니할 것.

(라)주수구와 배수구를 겸용하는 것을 수도꼭지에 접속하여 헹궈 빠는 구조의 전기세탁기에 있어서는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에 호스와의 접속부에 구멍을 열어 역류를 방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30㎟이상의 면적을 갖는 구멍이 있고 또한 일수면과 역류방지장치의 동작점과의 수직방향의 거리는 40㎜이상일 것.

(마)주수구가 윗부분에 있는 전기세탁기에 있어서는 호수받이의 가장 높은 수면과의 수직방향의 거리는 40㎜이상일 것.

(바)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의 것 및 (7)의 규정한 2중 절연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어어스용 인출선의 길이는 2.5m이상의 것일 것.

(아)어어스용 단자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길이가 2.5m이상의 어어스선을 갖추고 있을 것.

(자)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은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금속부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되어 있고 또한 쉽게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붙여져 있을 것.

(차)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열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다만, 아무 것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열된 경우에 온도과승에 의한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온도과승방지 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탈수용량이 5㎏ 이하의 전기탈수기에 있어서는 탈수조의 뚜껑을 연 상태에서는 통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탈수조의 회전이 정지하지 아니하고는 탈수조의 뚜껑이 열리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다만, 탈수조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탈수조의 뚜껑을 열었을 때 탈수용 전동기의 통전이 차단되고 또한 탈수조에 제동을 가하는 구조의 것으로서 다음에 적합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전기탈수기의 가장 바깥부분에 있는 탈수조의 뚜껑[이하 (카)에 있어서는 "바깥뚜껑"이라 한다]을 열었을 때 회전 중의 탈수조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②제동전달장치가 바깥뚜껑의 동작에 연동하지 아니할 때에 탈수용 전동기의 회전자가 구속되는 구조의 것일 것.

③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탈수용 전동기에 가하여 탈수조의 회전이 일정하게 되었을 때 탈수조 뚜껑을 열어 탈수조를 정지시키는 조작을 10,000회 하는 시험(이하 (카)에 있어서 "동작시험"이라 한다]의 전후 및 동작시험중에 있어서의 탈수조의 정지시간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시험조건마다 동표의 우란에 적합할 것.

시 험 조 건		정 지 시 간	
동작시험전	무부하시	바깥뚜껑을 열었을 때 탈수조가 회전중인 것이 눈으로 볼수 있는것(이하	7초 이하

		이 표에서 "투시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기타의 것	5초 이하
	부하시	투시할 수 있는 것	10초이하
		기타인 것	7초이하
동작시험중	부하시	투시할 수 있는 것	15초이하
		기타인 것	10초이하
동작시험후	부하시	투시할 수 있는 것	15초이하
		기타인 것	10초이하

비고 : 부하시라함은 탈수조에 탈수량과 같은 무게의 물에 적신 약 91㎝×91㎝의 면포(밀도가 25.4㎜에 대하여 세로 72본±4본 가로 69본±4본으로 30번수의 종사 및 36번수의 횡사를 사용한 풀먹이지 아니한 평직의 면포) 또는 이와 동등의 의사부하를 넣은 상태를 말한다

④탈수용 전동기의 회전자를 구속하고 온도 퓨우즈 과전류 보호장치 등의 보호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보호장치가 동작 할 때까지 시한장치를 가리는 것에 있어서는 시한장치를 최고시간에 놓고 그 시한 장치가 동작할 때까지,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 가하였을 때 탈수용 전동기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1MΩ이상일 것.

(타)전기세탁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그 표시요령은 ① 내지 ⑨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세탁방식		
표준세탁용량		kg
표준사용수량		ℓ
외형치수	폭	mm
	깊이	mm
	높이	mm
코오드이 길이		m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서 다음사항 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48㎠ 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①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세탁기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전기세탁기의 호칭으로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②세탁방식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표의 좌란에 게기하는 방식의 전기세탁기에 있어서 그 방식에 따라 동표의 우란에 게기하는 방식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이 경우에 2종 이상의 방식을 복합한 전기세탁기에 대하여는 그 방식을 나타내는 문자를 열기할 것.

세 탁 방 식	문 자
수조의 옆면에 1개 또는 수개의 회전날개를 가지며 그 회전에 의하여 세탁하는 것	분류식
수조의 밑면에 1개 또는 수개의 교반날개를 가지며 그 교반운동에 의하여 세탁하는 것	교반식
수조의 밑면에 1개 또는 수개의 회전날개를 가지며 그 회전에 의하여 세탁하는 것	와권식
수조내에 드럼을 가지며 그 드럼의 회전에 의하여 세탁할 물건을 낙하시켜 세탁하는 것	드럼식
전자석 또는 전동기에 의하여 일어나는 진동에 의하여 세탁하는 것	진동식

펌프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사수류에 의하여 세탁하는 것	분사식

③표준세탁용량의 표시에 있어서는 KS C 9608(전기세탁기)에 규정한 표준세탁용량을 ㎏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표준세탁용량을 나타내는 수치의 +20퍼센트, -5퍼센트로 한다.

④표준사용량의 표시에 있어서는 KS C 9608(전기세탁기)에 규정한 측정방법에 의한 표준사용수량을 ℓ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표준사용수량을 나타내는 수치의 +10퍼센트, -20퍼센트로 한다.

⑤외형치수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세탁기의 본체(조작반 호스걸이 및 타올걸이 및 운반용 손잡이를 포함하며 빨래받이망·물짜기 핸들 호스 기타 부속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폭·길이 및 높이를 ㎜단위로 순차 열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길이를 표시하는 수치의 ±10㎜로 한다.

⑥코오드의 길이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세탁기에 부속하는 전원코오드의 유효길이를 m의 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허용범위는 그 길이를 나타내는 수치의 +10퍼센트, -2퍼센트로 한다.

⑦사용상의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만,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습기가 적은 장소에서 어어스하여 사용 할 것.

㉯개스파이프 등에 어어스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초래하므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

㉰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전열장치를 가진 것에 있어서는 전동기 및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의 합계)이 600W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원은 반드시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것에 대하여는 전원은 가능한 한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할 것.

㉱탈수조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손을 넣지 아니할 것.

⑧표시에서 표시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부기 할 것.

⑨표시는 전기세탁기마다 본체의 옆면 또는 뚜껑의 뒷면에 인쇄한 금속판 또는 합성수지판을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붙일 것.

(2)절연성능

전기세탁기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3), (4)(다) 및 (6)(가)의 시험을, 전기탈수기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3), 및 (6)(가)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내지 (나)에 게기한 시험조건으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시험품의 종류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부하를 부하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때)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1)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다음의 표2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 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장치의 놋치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

(가)전자동식의 것에 있어서는 반복운전을 하고 또한 세탁기 전용의 기구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기구에 대하여 연속운전할 것.

(나)(가)에 게기한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연속하여 운전할 것.

(다)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을 것.

시험품의 종류	부 하
전기세탁기	정격용량의 물 및 세탁용량과 같은 무게의 약 91㎝×91㎝의 면포(밀도가 25.4㎜에 대하여 세로 72본±4본, 가로 69본±4본으로서 30번수의 종사 및 36번수의 횡사를 사용한 풀먹이지 아니한 평직의 면포,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넣고 운전할 때의 부하
전기탈수기	탈수용량과 같은 무게의 물에 적신 약 91㎝×91㎝의 면포를 넣고 운전할 때의 부하

표 2

측 정 개 소		온도(℃)
전동기의 축 수	메탈 베아링의 것	80
	롤로 베아링의 것	95

전열장치 또는 까스를 사용하는 것의 외곽	70

비고 : 이 표에서 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

(4)이상온도상승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가) 내지 (라)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 퓨우즈 또는 온도상승 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한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운전하였을때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 저항은 0.1MΩ이상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위에 놓을 것.

(나)자동온도조절기 또는 타임스윗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의 점검을 단락할 것.

(다)송풍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송풍장치에 통전하지 아니할 것.

(라)아무것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열될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수조에 물을 넣지 아니할 것.

(5)소비전력의 허용차

(3)의 표 1에 게기한 부하를 가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고 연속운전하여 소비전력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전기 탈수기에 있어서는 시동 후 2분이 경과하였을 때)에 측정한 소비전력의 115퍼센트 이하일 것.

(6)시동특성

(3)의 표 1에 게기한 부하를 가한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7)이중절연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재료 및 구조

①충전부와 어어스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에는 다음에 적합한 기능절연 및 보호절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강화절연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능절연은 1가(2) 및 (3)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이상의 것일 것.

㉯보호절연은 기능절연보다 절연성능이 우수하고 또한 열화가 적은 것일 것. 다만, 온도, 오염등이 영향이 기능절연의 경우보다 작게 되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기능절연과 동등하게 할 수 있다.

②강화절연은 스위치 부분에 하고 다음에 적합할 것.

㉮절연성능은 이중절연과 동등 이상일 것.

㉯강화절연은 한 부분이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간의 공간거리(연면거리를 포함한다. 이하 (7)에서 같다)는 부표 2에 게기한 값의 2배 이상일 것.

③절연물의 뒷쪽 및 격벽은 전원전선, 스위치 등을 교환할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확실히 고정되어 있을 것.

④개구부가 기체 외곽의 외면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3의 1, 나, (3)의 그림에 보인 시험막대 및 별표 3의 1, 나, (17),(나)에 보인 시험핀을 개구부로부터 꽂아 넣었을 때에 충전부 및 기능절연부분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⑤내부 배선은 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적합할 것.

㉮기능절연만이 되어있는 내부배선과 어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공간거리는 부표 2에 게기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값 이상일 것.

㉯기능절연이 되어 있지 아니한 내부배선과 보호절연과의 사이의 공간거리는 부표 2에 게기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값 이상일 것.

㉰내부배선은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6)전원전선이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를 관통하는 부분에는 절연붓싱등을 설치할 것.

(가)절연성능

①(3)에 규정한 시험 전 및 직후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3MΩ이상일 것.

②(3)이 직후에 하는 ①에 규정한 시험 후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에 2,500V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4,000V)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연속 1분간 이에 견딜 것.

③②에 규정한 시험 후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절연저항은 다음표의 좌란에 게기한 절연의 종류마다 각각 동표의 중란에 게기한 값 이상이고 또한 동표 좌란에 게기한 절연의 종류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하는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연속 1분간 이에 견딜 것.

절연의 종류	절연저항	전 압 (V)	
		정격전압이	정격전압이 150V

	(MΩ)	150V이하의 것	를 초과하는 것
기능절연	1	1,000	1,500
보호절연	2	1,500	2,500
간화절연	3	2,500	4,000

④전기세탁기에 있어서는 ③에 규정한 시험후 연속하여 5분간 물이 넘치게 하고 기체 외곽의 표면에 부착한 수분은 닦고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절연저항은 3MΩ이상일 것.

⑤④에 규정한 시험 후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절연저항은 다음표의 좌란에 게기한 절연의 종류마다 각각 우란에 게기하는 값 이상일 것.

절연종류	절연저항(MΩ)
기능절연	1
보호절연	2
강화절연	3

⑥45℃±3℃의 온도에서 4시간 기체를 예열한 후 주위온도가 40℃±3℃, 상대습도가 88퍼센트이상 92퍼센트 이하의 상태에서 24시간 유지한 후에 외곽의 표면에 부착한 수분을 닦고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9MΩ 이상일 것.

자. 전기펌프, 전기우물펌프, 전기살수기 및 전기분수기

(1)구조

(가)압력탱크를 가지는 펌프에 있어서는 공기 보급구 기타의 압력탱크에 공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수중용의 것에 있어서는 방수구조이고,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충전부에 물이 묻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물이 세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외곽의 보기 쉬운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접지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과 (7)에 규정한 이중 절연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탁상형 이외의 것의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일 것.

(2)절연성능

수중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4의 (1),(2) 및 (6)(가)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전기펌프 및 전기우물펌프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 1에 게기한 부하를,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최대부하를 부하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때)의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권선의 온도에 있어서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 전동기의 베아링에있어서는 다음의 표 2에 게기한 값 이하이고 또한 기타의 곳에 있어서는 이상발열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에 기준주위온도는 수중용의 것에 있어서는 20℃, 탁상형의 것에 있어서는 30℃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40℃로 하고, 온수순환용으로서 사용하는 전기펌프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온수와 거의 같은 온도의 온수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표 1

종 류		부 하
자동식의 것	와류형의 것	흡상고와 압력스위치의 개로압력에 상당하는 수두와의 합을 양정으로 할때의 부하
	와권형의 것	흡상고와 압력스위치의 페로압력에 상당하는 수두와의 합을 양정으로 할때의 부하
기타의 것		흡상고와 압상고와의 합을 양정으로 할 때의 부하

표 2

종 류	온도(℃)
메탈 베아링의 것	80
롤러 베아링의 것	95

(4)소비전력의 허용차

제트식의 것에 있어서는 (3)에 규정한 시험에 있어서 소비전력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에 측정한 소비전력은 정격소비전력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5)시동특성

(3)의 표 1에 게기한 부하를 가한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6)부속 압력스위치의 성능

부속압력스위치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동작압력의 정격동작압력에 대한 허용차는 정격동작 압력이 1㎏/㎠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0.1㎏/㎠,정격동작압력이 1㎏/㎠초과 2㎏/㎠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0.2㎏/㎠, 정격동작압력이 2㎏/㎠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15퍼센트일 것.

(나)스위치가 개로하는 경우의 정격동작압력(동작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최대치)의 1.5배의 압력을 스위치에 연속 1분간 가하였을때에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7)2중절연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3의 아, (7), (가)(② 및 ③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는 외에 다음에 적합할 것.

(가)강화절연은 스위치 및 단자대 부분에 하고 다음에 적합할 것.

①절연성능은 이중절연과 동등 이상일 것.

②강화절연을 한 부분의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부 금속부와의 사이의 공간거리[연면거리를 포함한다. 이하 (7)에서 같다]는 부표 2의 값의 2배이상일 것.

(나)내부배선은 3의 아(7)(가)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적합할 것.

①기능 절연만을 한 내부전선과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공간거리는 부표 2에 게기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값 이상일 것.

②기능절연이 되어있지 아니한 내부 배선과 보호절연과의 사이의 공간거리는, 부표 2에 게기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값 이상일 것.

③내부 배선은 확실히 고정되어 있을 것.

(다)절연성능

①(3)에 규정한 시험전 및 직후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3MAΩ이상일 것.

②(3)에 규정한 시험직후에 ①에 규정한 시험후에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에 2,500V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4,000V)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연속 1분간 이에 견딜 것.

③②에 규정한 시험 후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절연저항은 다음표의 좌란에 게기한 절연의 종류마다 각각 동표의 중란에 게기한 값 이상이고, 또한 좌란에 게기한 절연의 종류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연속 1분간 이에 견딜 것.

절연의 종류	절연저항 (MΩ)	전 압 (볼트)	
		정격전압이 150V이하의 것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
기능절연	1	1,000	1,500
보호절연	2	1,500	2,500
강화절연	3	2,500	4,000

④섭씨 45℃±3℃의 온도에서 4시간 기체를 예열한 후 주위온도가 40℃±3℃, 상대습도가 88퍼센트 이상, 92퍼센트 이하의 상태에서 24시간 유지한 후에 외곽의 표면에 부착한 수분을 닦고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9MΩ이상일 것.

차. 전기냉장고[(6)의 (자)의 규정에 의한 흡수식의 경우를 포함한다]전기냉동고, 냉장용쇼케이스 및 냉동용 쇼케이스

(1)구조

(가)기름 또는 냉매가 누설 될 우려가 없을 것.

(나)압축용 전동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다)흡수식의 것에 있어서는 발열선이 단선 하였을 때 누전의 우려가 없을 것

(라)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전기냉장고 이외의 것의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바)전기냉장고에 있어서 문의 가스?과 접촉하는 기체의 부분 또는 그 근방에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수분이 응결하지 아니하도록 기체내부에 히이터를 포설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수분의 노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일 것.

(사)시동리레이를 가지는 전기냉장고에 있어서는 그 시동리레이의 개폐접촉부는 밀폐된 용기에 들어 있을 것.
다만,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외기의 유동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냉장용의 쇼케이스 및 냉동용의 쇼케이스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가 오는 중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의 표시를 할 것.

(자)전기냉장고 [열전소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자)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그 표시요령은 ① 내지 ⑩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냉동기의 종류
저장실의 냉각방식
냉각기의 제상 방식
조작
유효내용적 ℓ
냉동실(냉동냉장고에 한한다) ℓ
냉장실 ℓ
외형의 치수 폭 ㎜
깊이 ㎜
높이 ㎜
코오드의 길이 m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서 다음사항 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50㎠ 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①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냉장고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전기냉장고의 호칭으로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②냉동기의 종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냉동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방식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냉동기의 종류	문 자
가스상태의 냉매를 압축기로 압축하여 이를 액화한후 증발시켜 저온을 얻는 것	압축식
가스상태의 냉매를 용제에 흡수시켜 이를 기화하여 다시 액화한후 증발시켜 저온을 얻는 것	흡수식

③저장실의 냉각방식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저장실의 냉각방식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방식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저장실의 냉각방식	문 자
냉각기로 냉각된 공기를 팬에 의하여	냉기강제

강제 순환시켜 냉각하는 것	순환방식
냉각기로 냉각된 공기를 자연대류 또는 냉각기로부터의 열전도에 의하여 냉각 하는 것	냉기자연 대류방식

④냉각기의 제상방식 및 제상 조작방법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각표의 좌란에 게기한 방식 및 조작방법의 냉장고에 있어서 그 방식 또는 조작방법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방식 또는 조작방법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이 경우에 2이상의 냉각기를 사용하는 냉장고로서, 이들의 제상방식 또는 제상 조작방법이 다른 것에 대하여는 각각 냉각기에 관계되는 냉장고내의 구분의 명칭을 붙여 각각의 냉각기마다 표시할 것.

냉각기의 제상방식	문　　자
고온냉매개스 히타등의 열을 이용하여 서리를 녹이는 것	강제식
냉각운전을 정지하여 자연온도상승에 의하여 서리를 녹히는 것	자연식
냉각기의 제상조작방법	문　　자
제상의 개시 및 종료가 자동적으로 행 하여 지는 것	자동개시 자동종료
제상의 개시가 자동적으로 행하여지고 제상의 종료조작을 수동으로 행하는 것	자동개시 수동종료
제상의 개시조작을 수동으로 행하고 제 상의 종료가 자동적으로 행하여지는 것	수동개시 자동종료
제상의 개시 및 종료의 조작을 수동적 으로 행하는 것	수동개시 수동종료

⑤유효내용적의 표시에 있어서는 KS C 9305(전기냉장고)의 부속서에 규정하는 산출방법에 의하여 ℓ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용적을 나타내는 수치의 ±3퍼센트 또는 ±1ℓ중 큰 쪽으로 한다. 이때 KS C 9305(전기냉장고)에 규정한 냉동냉장고에 있어서는 유효 내용적 외에 냉동실 및 냉장실의 명칭을 붙여 각각의 유효 내용 적을 표시할 것.

⑥외형치수의 표시에 있어서는 용기냉장고 본체(응축기 고정된 테이블보오드 및 외측조작반을 포함하고 문의 핸들 및 조정대의 다리를 제외한다)의 폭·깊이 및 높이를 ㎜단위로 순차 열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길이를 나타내는 수치의 ±10㎜로 한다. 다만, 그 길이를 표시하는 수치가 1m이상인 경우에 허용범위는 ±15㎜로 한다.

⑦코오드이 길이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냉장고에 부속하는 전원코오드의 유효길이를 m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길이를 나타내는 수치의 +10퍼센트, -2퍼센트로 할 것.

⑧사용상이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 나에 대하여는 강제 방열식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원은 반드시 콘센트를 사용할 것.

㉯방열을 좋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주위에 적당한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⑨표시에 있어서는 표시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부기할 것.

⑩표시는 전기냉장고마다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인쇄한 금속판 또는 합성수지판을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붙여서 표시할 것.

(2)절연성능

(가)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나)전기냉장고로서 전원접속부, 켄덴서등의 접촉부가 노출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맑은 물을 매분 약 3㎜의 수량으로 약 45도의 경사방향으로 그 노출하고 있는 면에 대하여 균일하게 연속 1분간 주수한 직후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3MΩ이상일 것.

(다)냉장용 쇼케이스 및 냉동용 쇼케이스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맑은 물을 매분 약 3㎜의 수량으로 약 45도의 경사방향에서 시험품에 균일하게 연속 주수하여 3분간 경과하였을 때 주수를 계속하면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3MΩ이상일 것.

(3)평상온도 상승

다음의 (가) 내지 (마)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

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하는 값 이하일 것.

(가)주위온도는 30℃±5℃로 할 것.

(나)응축기가 수냉식의 것에 있어서는 냉각수의 입구에 있어서 온도가 20℃이상 25℃이하에서 기준 수량의 냉각수를 통할 것.

(다)물을 매개로 하여 냉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에 정격 용량의 물을 넣을 것.

(라)물을 매개로 하여 냉각하는 것으로서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저온도로 놓을 것.

(마)물을 매개로 하여 냉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할 것.

(4)소비전력의 허용차

(3)에 규정한 시험에서 소비전력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에 측정한 소비전력은 흡수식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소비전력에 대하여 ±10퍼센트 이내,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소비전력의 115퍼센트 이하일 것.

(5)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6)냉매누설

누설검지기 등에 의하여 검사하여 냉매의 순환계통으로부터 냉매의 누설이 검지되지 아니할 것.

카. 전기 냉수기

(1)구조

(가)기름 또는 냉매가 누설될 우려가 없을 것.

(나)압축용 전동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다)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충전부에 물이 묻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 이상의 것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나)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저항법으로 측정한 권선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이고 또한 기타의 곳에 이상발열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주위온도는 30℃±5℃로 할 것.

(나)입구에 있어서는 물의 온도는, 프레샤형의 것에 있어서는 25℃±1℃, 보틀형의 것에 있어서는 30℃±2℃로 하고 출구에 있어서는 물의 온도는 12℃±2.5℃로 할 것.

(다)응축기가 수냉식의 것에 있어서는 냉각수의 입구에 있어서는 온도가 20℃이상 25℃이하에서 기준 수량의 냉각수를 통할 것.

(라)자동온도조절기(동결방지장치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할 것.

(4)소비전력의 허용차

(3)에 규정하는 시험에서 소비전력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에 측정한 소비전력은 정격소비전력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5)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6)냉매누설

누설검지기 등에 의하여 검사하여 냉매의 순환계통으로부터 냉매의 누설이 검지되지 아니할 것.

타. 전기 제빙기

(1)구조

(가)기름 또는 냉매가 누설될 우려가 없을 것.

(나)압축용 전동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가 있을 것.

(다)얼음을 용단하기 위한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기체의 연소 기타의 위험이 생길우려가 없을 것.

(라)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 이상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바)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주위온도는 30℃±5℃로 할 것.

(나)얼음의 두께가 최대로 되도록 조정할 것.

(다)입구에 있어서는 물의 온도는 프레샤형의 것에 있어서는 25℃±1℃, 보틀형의 것에 있어서는 30℃±2℃로 할 것.

(라)응축기가 수냉식의 것에 있어서는 냉각수의 입구에 있어서의 온도가 20℃이상 25℃이하에서 기준 수량의 냉각수를 통할 것.

(마)전자동식의 것에 있어서는 반복 운전할 것.

(바)(마)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연속 운전할 것.

(4)이상온도 상승

얼음을 용단하기 위한 절연장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아무 것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열될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물을 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험품을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발열선에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한 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사이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소비전력의 허용차

(3)에 규정하는 시험에서 소비전력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에 측정한 소비전력은 정격소비전럭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6)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7)냉매누설

누설검지기등으로 검사하여 냉매의 순환계통으로부터 냉매의 누설이 검지되지 아니할 것.

파. 아이스크림 후리자(냉각장치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1)재료

용기 및 용기내의 금속부의 재료는 유기산에 대하여 쉽게 부식되지 아니할 것.

(2)구조

(가)기름 또는 냉매가 누설될 우려가 없을 것.

(나)압축용 전동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가 있을 것.

(다)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되지 아니한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 이상의 것일 것.

(3)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4)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다)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자동스위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자동스위치가 동작한 때)에 열전온도계법 (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주위온도는 30℃±5℃로 할 것.

(나)규정량의 아이스크림 재료를 넣어 운전할 것.

(다)응축기가 수냉식의 것에 있어서는 냉각수의 입구에 있어서는 온도가 20℃이상 25℃이하로서 기준수량의 냉각수를 통할 것.

(5)소비전력의 허용차

(4)에 규정한 시험에서 소비전력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에(자동스위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자동스위치가 동작한 때)에 측정한 소비전력은 정격소비전력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6)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7)냉매누설

누설검지기 등에 의하여 검사하여 냉매의 순환계통으로부터 냉매의 누설이 검지되지 아니할 것.

하. 아이스크림 후리자(냉각장치를 가지는 것 이외의 것에 한한다)

(1)재료

용기 및 용기내의 금속부의 재료는 유기산에 대하여 쉽게 부식하지 아니할 것.

(2)구조

(가)충전부에는 물이 묻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물 및 얼음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물 및 얼음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3)절연성능

용기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2)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4)(다)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4)평상온도상승

(가)물 및 얼음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고 연속운전하여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을 경과하였을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나)(가)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15℃±3℃의 주위온도에서 전동기의 회전자를 구속하여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에 저항법으로 측정한 권선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기준 주위온도는 -15℃로 한다.

(5)이상온도상승

(가)물 및 얼음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동기의 회전자를 구속하고, 시험품을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할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나)(가)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① 내지 ③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①주위온도는 30℃±5℃로 할 것.

②시험품은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③용기에는 표시된 정격용량(정격용량의 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용량이 약 80퍼센트)의 물을 넣을 것.

(6)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7)기계적 강도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캬. 쥬우서, 믹서, 쥬우서믹서 및 코피 분쇄기

(1)재료

용기 및 용기내의 금속부의 재료는 유기산에 대하여 쉽게 부식하지 아니할 것.

(2)구조

(가)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충전부에는 물이 묻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용기(별치형은 제외한다)는 물이 새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량에 상당하는 양의 물을 넣어 운전하였을 때 물이 넘쳐 흘러 나오지 아니할 것.

(다)원심바구니 기타의 회전부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쉽고 또한 확실하게 부착 및 분리할 수 있을 것.

(라)쥬우서 믹서에 있어서는 용기 내에 정격용량 이하의 물을 넣어 운전하였을 때에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마)탁상형 이외의 것의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바)쥬우서, 믹서 및 쥬우서믹서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그 표시요령은 ① 내지 ⑦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용도에 의한 종류
정격용량
코오드의 길이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서 다음사항 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3. "정격용량"에 대하여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문자에 대한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①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쥬우서 믹서 및 쥬우서믹서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쥬우서 · 믹서 및 쥬우서믹서로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②용도에 의한 종류의 표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의 용도에 의한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용도에 의한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용도에 의한 종류	문 자
쥬우서로서 사용하는 것	쥬우서
쥬우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믹서용 부속기구를 부착함에 의하여 믹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쥬우서(믹서용 부속기구 사용 가능)
믹서로서 사용하는 것	믹서
믹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쥬우서용 부속기구를 부착하여 의하여 쥬우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믹서(쥬우서용 부속기구 사용 가능)
쥬우서 및 믹서로서 사용하는 것	쥬우서믹서

③정격용량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믹서 및 전기쥬우서믹서에 대한 KS C 9308(전기쥬우서믹서)에 규정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 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정격용량을 나타내는 수치의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전기쥬우서에 있어서는 정격용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코오드의 길이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쥬우서 · 전기믹서 및 전기쥬우서믹서에 부속하는 전원코오드의 유효길이를 m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길이를 표시하는 수치의 +10퍼센트, -2퍼센트로 한다.

⑤사용상의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만,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 중에 용기 · 뚜껑 · 원심분리바구니 등을 떼었다 붙였다 하지 아니할 것.

㉯사용 중에 용기 및 투입구안에 손가락 · 수저 등을 넣지 아니할 것.

㉰소제시 전동기나 스위치를 내장하고 있는 베이스 부면에 물을 닿게 하거나 그 부분을 물에 담그지 아니할 것.

⑥표시에 있어서는 표시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부기 할 것.

⑦표시는 전기쥬우서 · 전기믹서 및 전기쥬우서믹서마다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인쇄한 금속판 또는 합성수지판을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붙여서 표시할 것. 다만, 본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꼬리표를 코오드에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일 수 있다.

(3)절연성능

용기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4)(다)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4)평상온도상승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시험품의 종류마다 각각 동표의 중란에 게기한 부하를 부하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운전방법으로 운전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외곽에 있어서는 65℃(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 장치의 놋치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에 놓고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품의 종류	부 하	운 전 방 법
쥬우서 |포옴 포리스틸렌의 보 |온재로서 세로가 25㎜ |가로가 30㎜ 길이가 |20㎝의 것을 2시간 수중 |에 담근후에 꺼내서 이 |를 식품투입구에 넣어 |하중 0.8㎏의 압력을 걸 |어 운전하였을 때의 부 |하		연속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연속 운전할 것.
쥬우서믹서	정격용량과 같은 양의 20℃의 물을 용기에 넣어 운전할 때의 부하	연속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4분간 운전하고, 2분간 정지하는 조작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반복하고, 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4분간 운전하고 2분간 정지하는 조작을 표시된 정격시간 5분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의 비율로 산출한 회수로 반복할 것. 이 경우에 운전을 정지할 때마다 물을 바꿀 것.
기타인 것	표시된 전부하 전류와 같은 전류	연속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연속하여 운전할 것

(5)이상온도상승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5)에서 같다) 또는 자동스윗치(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5)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조절기 또는 자동스윗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용기에 물건을 넣지 아니한 상태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사이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6)소비전력의 허용차

쥬우서에 있어서는 (4)에 규정한 시험에서 소비전력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측정한 소비전력은, 정격소비전력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7)내과속도 성능

용기를 분리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를 떼고,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용기를 붙인 그대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1분간 운전하였을 때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8)시동특성

쥬우서믹서에 있어서는 정격용량과 같은 양의 물을 용기에 넣은 상태에서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무부하의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9)기계적인 강도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냐. 전기깡통따기, 전기고기갈기, 전기육절기 및 전기빵짜르기

(1)구조

(가)기체에 운전을 정지하기 위한 스윗치를 가질 것.

(나)탁상형 이외의 것의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는 캡타이어 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써 그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무부하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하는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 조정장치의 놋지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을 하여야 한다.

(4)시동특성

무부하의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기계적강도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댜. 전기칼

(1)구조

기체에 운전을 정지하기 위한 스윗치를 가질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무부하의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때) 열전온도계법 (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 조정장치의 놋지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에 놓고 각각 시험을 하여야 한다.

(4)기계적강도

부표 6의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무부하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랴) 전기 멸치 절삭기

(1)구조

재료의 삽입구로부터 절삭부에 사람이 쉽게 닿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표시된 전부하전류와 같은 전류를 부하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30분간(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하였을때 열전온도계법 (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 조정장치의 놋지를 최고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을 하여야 한다.

(4)시동특성

무부하의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기계적강도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먀. 전기그릇 닦기

(1)구조

(가)발열부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서 발열부의 가열된 부분에 사람이 쉽게 닿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탕비용의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열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다만, 아무것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열된 경우에 온도과승방지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배기 구멍 이외의 부분으로부터 증기가 새지 아니할 것.

(라)사용 중에 있어서 뚜껑을 열었을 때 기체의 외부에 현저하게 물방울이 튀어나오지 아니한 것. 다만, 기체의 외부로부터 쉽게 내부의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주수구를 수도꼭지에 접속하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역류방지장치가 있을 것. 이 경우에 호스와의 접속부에 구멍을 뚫어 역류를 방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30㎟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구멍이 있고 또한 물이 넘치는 면과 역류방지장치의 동작점과의 수직방향의 거리가 40㎜ 이상이라야 한다.

(바)주수구가 기체의 상부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호오스 받이의 가장 밑면과 가장 높은 면과의 수직 방향의 거리는 40㎜이상일 것.

(사)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되어 아니한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부표 4의 (1), (2) 및 (6)(가)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마)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 (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배기구멍이외의 부분에 한함]에 있어서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배기 구멍부 및 배기의 온도에 있어서는 140℃(기준주위온도는 30℃)이하일 것.

(가)기체에 식기를 넣지 아니할 것.

(나)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을 것.

(다)전 자동식의 것에 있어서는 반복 운전할 것.

(라)(다)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연속 운전할 것.

(마)물을 가열하는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20℃이상 25℃이하의 물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약 80℃의 물을 용기에 통할 것.

(4)이상온도상승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가) 내지 (라)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된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운전하였을 때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위에 놓을 것.

(나)자동온도조절기 또는 타임스윗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의 접점을 단락 할 것.

(다)송풍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송풍장치에 통전 하지 아니할 것.

(라)탕비용의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아무 것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열될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탕비용의 용기에, 물을 넣지 아니할 것.

(5)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바) 전기세미기

(1)구조

(가)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의 표시를 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4) 및 (4)(다)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용량의 쌀 및 물을 용기에 넣어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30분간

(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 운전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장치의 놋치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

(4)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샤) 전기 빙삭기

(1)구조

(가)점멸기는 방수 구조일 것.

(나)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의 표시를 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탁상형 이외의 것이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2) 및 (6)(가)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표시된 전부하 전류와 같은 전류를 부하 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30분간(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운전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의 온도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장치의 놋치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

(4)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기계적 강도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야) 디스포우자

(1)구조

(가)기체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나)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절삭부에 사람이 쉽게 닿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의 표시를 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2), (4)(다) 및 (6)(가)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표시된 전부하 전류와 같은 전류를 부하 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시동특성

무부하의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자. 전기 그라인다, 전기쎈더, 전기포리셔, 전기드릴, 전기대패 및 전기톱

(1)구조

(가)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캡타이어 또는 케이블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일 것. 다만, 거치형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00W미만의 것의 전원전선에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코오드(단심 코오드 및 연합코오드를 제외한다)로서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전원전선은 다심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여 그 전원 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 또는 (6)의 규정에 적합한 이중절연인 구조의 것일 것. 다만, 거치형의 것으로서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의 표시를 한 것과 거치형 이외의 것으로서 다심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1심을 전원플럭에서 10㎝이상을 인출하고 그 선단에 클립을 부착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절삭부[연마부를 포함한다. 이하 (4)에서 같다]를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기체에 쉽고 또한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을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표시된 전부하 전류와 같은 전류를 부하 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30분간(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운전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1) 및 (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하는 값 이하이고, 다음 표의 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동표의 우좌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장치의 놋치를 최고속도 및 최대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

측 정 개 소		온도(℃)
권 선	A종 절연의 것	100(105)
	E종 절연의 것	115(120)
	B종 절연의 것	120(125)
	F종 절연의 것	140
	H종 절연의 것	165
사용중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있는 외곽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의 것.	65
	기타의 것	80

비고 1. 괄호안의 값은 휴대용 전기 그라인더 및 전기드릴에 적용한다.

2. 이 표에서 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

(4)내과속도성능

(가)절삭부를 붙인 상태에 있어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연속 3분간 운전하였을 때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나)단용의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절삭부를 분히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연속 1분간 운전하였을 때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5)시동특성

무부하의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6)이중절연의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아(7)(가) 및 (② 및 ⑤를 제외한다)에 적합한 외에 다음에 적합할 것.

(가)강화절연은 ①에 게기한 부분에 하고 ②에 게기한 기준에 적합할 것.

①강화절연을 할 수 있는 부분

㉮전동기의 부러쉬 캡

㉯전동기의 정류자 및 전기자 권선의 코일의 단부

㉰전동기의 부럿쉬 홀더

㉱스위치

②기준

㉮절연성능은 이중절연과 동등이상일 것.

㉯강화절연을 한 부분의 충전부와 어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공간거리(연면거리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는 부표 2에 게기한 값의 2배 이상 일 것.

(나)내부배선은 아(7)(가)①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적합할 것.

①기능절연만을 한 내부배선과 어어스 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공간거리는 부표 2에 게기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값 이상일 것.

②기능절연만이 되어있지 아니한 내부배선과 보호절연과의 사이의 공간거리는 부표 2에 게기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값 이상일 것.

③내부배선은 확실히 고정되어 있을 것.

(다)절연성능

①(3)에 규정한 시험 전 및 직후에 있어서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3M

Ω이상일 것.

②(3)에 규정한 시험의 직후에 하는 ①에 규정한 시험 후에 있어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에 2,500V(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에서는 4,000V)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딜 것.

③②에 규정한 시험 후에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절연저항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절연의 종류마다 각각 동표의 중란에 게기한 값이상이고 또한 동표의 좌란에 게기한 절연의 종류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딜 것.

절연종류	절연저항 (MΩ)	전 압(V)	
		정격전압이 150 V이하인 것	정격전압이 150V 를 초과하는 것
기능절연	1	1,000	1,500
보호절연	2	1,500	2,500
강화절연	3	2,500	4,000

(7)기계적 강도

휴대형인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챠)전기 면도기, 전기 이발기 및 전기손톱 닦기

(1)표시

전기면도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그 표시 요령은 (가) 내지 (자)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날의 동작방식
전원방식
충전시간 시간
코오드의 길이 m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비고 : 1. 표시에서 다음사항 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가)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면도기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전기면도기의 호칭으로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나)날의 동작방식의 표시에 있어서는 속의 칼을 회전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회전식"속의 칼을 왕복진동 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왕복식"으로 표시할 것. 또 용도에 따라 각각 동작하는 복수의 칼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각각의 칼에 대하여 동작방식을 표시할 것.

(다)전원방식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전원방식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방식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이 경우에 그 종류이상의 방식을 복잡한 전기 면도기에 있어서는 그 방식을 나타내는 문자를 열기 할 것.

전 원 방식	문 자
주파수 60HZ의 단상교류 220V미만의 전압에서 직접사용하는 것	교류식
축전지를 내장하고 충전장치를 기체내 또는 부속부로서 가지는 것	충전식

(라)충전시간의 표시에 있어서는 주위온도20℃(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2℃로 한다)에서 정격주파수 및 정격전압에서 전기면도기가 보유하는 충전장치로 충전하였을 때 축전지의 공칭용량의 80퍼센트 이상의 용량에 충전함에 필요한 시간을 표시할 것. 다만, 용량검사에 있어서 그 값의 허용범위는 축전지의 공칭용량의 8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마)건전지의 종류 및 수의 표시에 있어서는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하는 전지의 기호 또는 호칭 및 음수표를 표시할 것.

(바)코오드의 길이의 표시에 있어서는 전기면도기에 부속하는 전원코오드의 유효길이를 m단위로 표시할 것.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길이를 나타내는 수치의 +10퍼센트 -2퍼센트로 한다.

(사)사용상의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표시할 것. 다만,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날을 뗄 때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끄거나 또는 플럭을 뺄 것.
②날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사용할 때마다 소제할 것.
③바깥 칼은 얇음으로 강하게 누르지 아니할 것.
④충전이 끝나면 플럭을 뺄 것.
(아)표시에는 표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부기 할 것.
(자)표시는 전기면도기마다 그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인쇄한 금속판 또는 합성수지판등에 기재하여 표시할 것. 다만, 전기면도기 본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꼬리표를 코오드에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붙여서 표시할 수 있다.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가)운전시험
충전식의 것으로서 충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장된 전지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지를 동작시키고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무부하의 상태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시험품에 가하여, 다음 표에 게기한 운전방법으로 운전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칼날부분에 있어서는 50℃(기준 주위온도는 30℃)이하 일 것.

시험품의 종류		운 전 방 법
전기 면도기 및 전기 손톱 닦기		연속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5분간 운전하고 1분간 정지하는 조작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반복하고, 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5분간 운전하고 1분간 정지하는 조작을 표시된 정격시간 5분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의 비율로 산출한 회수로 반복할 것
전기이발기	일반용의 것	연속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10분간 운전하고 5분간 정지하는 조작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반복하고 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10분간 운전하고 5분간 정지하는 조작을 표시된 정격시간 10분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의 비율로 산출한 회수로 반복할 것
	가축용의 것	연속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과 같은 시간까지 연속하여 운전할 것

(3)충전시험
충전식의 것에 있어서는 충전하는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고 연속 충전하여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시동특성
무부하의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부속된 조작용 스윗치의 성능
부속된 조작용 스윗치는 별표 3의1, 가 및 나의 (1), (5), (6), (8), (10), (11), (12), (13), (14), (19) 및 (23)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는 외에,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스위치를 개폐하는 조작을 매분 10회의 비율로 5,000회 하였을 때 스위치에 고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에 전기 면도기와 전기 손톱?M기에 있어서는 5분간 개폐조작을 한 후 1분간, 전기 이발기에 있어서는 10분간 개폐조작을 한 후 5분간 개폐조작을 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6)기계적 강도
부표 6의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7)2중 절연의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아 (7)(가)(② 및 ⑤를 제외한다)에 적합한 외에 다음에 적합할 것.
(가)강화절연은 스위치 및 기구용 꽂임 플럭에 게기 하는 부분에 하고 다음에 적합할 것.
①절연성능은 2중절연과 동등 이상일 것.

②강화 절연을 한 부분의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공간거리(연면거리를 포함한다. 이하 (7)에서 같다)는 부표 1의 좌란에 게기한 값의 2배 이상일 것.

(나)내부배선은 아(7)(가)①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적합할 것.

①기능 절연만을 한 내부배선과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공간거리는 부표 1에 게기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값 이상일 것.

②기능 절연을 하지 아니한 내부배선과 보호절연과의 사이의 공간거리는 부표 1에 게기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값 이상일 것.

③내부 배선은 확실히 고정되어 있을 것.

(다)절연 성능

①(2)에 규정한 시험 전 및 직후에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3MΩ이상일 것.

②(2)에 규정한 시험의 직후에 하는 ①에 규정한 시험 후에,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에 2,500V(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4,000V)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연속 1분간 이에 견딜 것.

③②에 규정한 시험 후에 있어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절연 저항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절연의 종류마다 각각 동표의 중난에 게기한 값 이상이고 또한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연속 1분간 이에 견딜 것.

절연종류	절연저항 (1MΩ)	전 압(V)	
		정격전압이 150 V이하의 것	정격전압이 150V 를 초과하는 것
기능절연	1	1,000	1,500
보호절연	2	1,500	2,500
강화절연	3	2,500	4,000

캬)면도용 거품발생기

(1)구조

탕비용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사용 중에 있어서 거품의 출구로부터 더운물이 유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2) 및 (4)(나)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 (가)내지 (라)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10초간 운전하고 20초간 정지하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저항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자동 온도 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에 있어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 온도로 놓을 것.

(다)용기에 정격 용량(정격용량의 표시가 없는 것에서는 용기의 용량의 80퍼센트)의 물을 넣을 것.

(라)거품의 출구를 막을 것.

(4)이상온도상승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가) 및 (나)에 게기하는 시험조건하에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윗치가 동작할 때에는 그때까지)연속으로 가하여 그 사이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가)용기에는 물을 넣지 아니할 것.

(나)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 온도로 놓을 것.

(5)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탸)전동식 흡입기

(1)절연성능

부표 4의 (1), (2) 및 (4)(나)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2)평상온도상승

다음 (가)내지 (다)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30분간(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연속 운전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을 것.

(다)용기에 정격 용량(정격용량의 표시가 없는 것에서는 용기의 용량의 80퍼센트)의 물을 넣을 것.

(3)이상온도상승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가) 내지 (다)에 게기하는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 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할 때에는 그때까지)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용기에는 물을 넣지 아니할 것.

(다)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 온도에 놓을 것.

(4)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퍄)전기 맛사지기 및 지압대용기

(1)구조

거치형의 것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최대의 부하를 부하한 상태에서 전열장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부하의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값 이하일 것.

(4)이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및 (나)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3)에 규정한 시험후, 뜸질 겸용의 것 이외의 것(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하나의 자동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란하고, 진동장치 이외의 부분에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 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할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면이불이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가)거치형의 것에 있어서는 밑부분 이외의 부분을 두께가 약 5㎝의 면 이불로 덮을 것.

(나)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기체의 전면을 두께가 약 5㎝의 면 이불로 덮을 것.

(5)기계적 강도

휴대형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2) 및 (3)의 시험을, 벼개형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1)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6)시동특성

무부하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햐)전기 칫솔

(1)구조

방수 구조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2) 및 (5)(다)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가)운전시험

무부하의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15분간 운전하였을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장치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에 놓고,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

(나)충전시험

충전식의 것에 있어서는 충전하는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충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기계적 강도

부표 6의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시동특성

무부하의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거)등사기 및 복사기

(1)구조

습식의 것에 있어서는 충전부에 액체가 묻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절연성능

등사기 및 건식의 복사기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4)(나)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최대의 부하를 가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배기구멍 이외의 부분에 한다]마다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이상온도상승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 또는 자동스위치[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의 접점을 단락하고, 자동온도조절기 또는 자동스위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송풍장치에는 전원을 넣치 아니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할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하여 가하고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시동특성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너. 식품 자동 판매기

(1)구조

(가)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전원플럭의 접지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써 그 공칭 단면적이 0.75㎟ 이상일 것.

(다)냉동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①기름 또는 냉매가 새어나올 우려가 있어서는 없을 것.

②압축용 전동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2)절연성능

(가)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나)옥내용이라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다)발열체의 충정부 또는 전극이 용기중의 물 또는 액체에 접촉하고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 온도 상승

다음의 (가) 내지 (라)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통상의 사용상태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냉동장치에 사용하는 압축용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주위 온도는 30℃±5℃로 할 것.

(나)응축기가 수냉식의 것에 있어서는 냉각수의 입구에 있어서의 온도가 20℃이상 25℃이하에서 기준 수량의 냉각수를 통할 것.

(다)전열장치용의 자동온도 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 온도를 최고 온도로 놓을 것.

(라)냉동장치용의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 온도를 최저 온도로 놓을 것.

(4)이상 온도 상승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가) 및 (나)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 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하여 가하고 그 사이에 시험품이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가)전열장치용의 자동온도 조절기 또는 타임스위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 접점을 단락할 것.

(나)냉동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냉동장치에 통전하지 아니할 것.

(5)소비전력의 허용차

냉동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3)에 규정한 시험에서 소비전력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측정한 소비전력은 정격 소비전력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6)냉매누설

냉동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누설검지기 등으로 검사하여 냉매 순환계통으로부터 냉매의 누설이 검지되지 아니할 것.

(7)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더)물수건 포장기

(1)구조

(가)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충전부에 물이 묻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접착부에 사람이 닿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란 표시할 것. 다만, 기체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않는 것 또는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 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3) 및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 온도로 놓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이상 온도 상승

자동온도조절기를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의 접점을 단락하여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는 그때까지)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러)전기 분무기

(1)구조

압축장치중 씨린더부에 있어서는 표시된 최고 압력(압력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최고 압력)의 2배의 수압을, 공기실에 있어서는 표시된 최고압력(압력의 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최고압력)의 3배의 수압을 각각 30초간 가하였을 때 이상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2)절연성능

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3)의 시험을, 옥외용 이외의 것으로서 용기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4)(나)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및 (나)의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값 이하일 것.

(가)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연속 운전할 것.

(나)반복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정격용량(정격용량의 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용량에 약 80퍼센트의 물을 넣어 10초간 운전하고 20초간 정지하는 조작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10초간 운전하고 20초간 정지하는 조작을 반복하고 그 운전 시간의 합계가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게 되는 시간이 될 때까지)반복할 것.

(4)기계적 강도

휴대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시동 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머)모발 건조기

(1)구조

송풍장치가 정지한 상태에서 전열장치에 통전할 수 없을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 (가)내지 (다)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4), (5), (7) 및 (8)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장치의 놋지를 최고 속도 및 최저속도에 놓고 각각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시험품(휴대용의 것을 제외한다)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풍량 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풍량조정장치의 놋치를 최소 풍량으로 놓을 것.

(다)자동 온도 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을 것.

측 정 개 소		온도(℃)
휴대용 손잡이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것	60
	기타의 것	75
손잡이(휴대용의 것을 제외한다)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것	45
	기타의 것	60
온풍의 출구		140
사용중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있는 외곽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것	55
	기타의 것	70
시험품을 놓는 나무대의 표면		90

비고 : 이 표에서 기준 주위 온도는 30℃로 한다.

(4)이상 온도 상승

(가)휴대용 모발 건조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① 내지 ③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나무대 표면의 온도는 150℃(기준주위 온도는 30℃로 한다)이하이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다만 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한 경우에서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될 우려가 없을 때에는 나무대의 표면의 온도는 150℃이하가 아니라도 된다.

①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②송풍장치에는 통전 하지 아니할 것.

③자동온도 조절기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 할 것.

(나)휴대형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① 및 ②에 게기 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다음 표에 게기한 값 이하이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다만 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한 경우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각부의 온도는 다음 표에 게기한 값 이하가 아니라도 된다.

①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②자동온도 조절기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할 것.

측 정 개 소	온도(℃)
나무대 및 나무대에 접한 다리부	150
외곽	150

비고 : 이 표에서 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

(5)기계적 강도

휴대형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6)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버)기타의 전기 건조기

(1)구조

(가)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송풍기의 날개 및 건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고온부분에는 건조물이 직접 접속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나)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충전부에 물이 묻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거치형의 것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접지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라)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6) 및 (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이고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장치를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기체에는 물건을 넣지 아니할 것.

(다)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최대의 부하를 부하할 것.

(라)자동온도 조절기[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 온도를 최고온도로 놓을 것.

측 정 개 소		온도(℃)
점멸기등의놉 및 눌름보턴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것	65
	기타의 것	80
사용중에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외곽 (거치형의 것에 한하고 건조면 및 배기구멍을 제외한다)		85

비고 : 이 표에서 기준 주위 온도는 30℃로 한다.

(4)이상온도상승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가) 내지 (마)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다음 표에 게기한 값 이하이며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 이상일 것. 다만, 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한 경우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각부의 온도는 다음표에 게기한 값 이하가 아니라도 된다.

(가)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기체에는 물건을 넣지 아니할 것.

(다)전열장치에는 그 최대의 부하를 부하할 것.

(라)송풍장치에는 통전 하지 아니할 것.

(마)자동온도 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할 것.

측 정 개 소	온도(℃)
나무대 및 나무대에 접하는 다리부	150
사용중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외곽	150

비고 : 이 표에서 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

(6)시동특성

건조물을 넣지 아니한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서)관상어용 전기기포 발생기

(1)구조

(가)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충전부에 물이 묻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뚜껑 및 외곽은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다만, 분리하였을 때에 충전부가 노출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권선 및 이에 접하여 사용하는 섬유질의 절연물은 절연 바니쉬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절연 효력을 가지는 함침제로 완전히 처리되어 있을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공기의 출구에 튜우브를 붙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장치의 놋지를 최고 속도 및 최저속도로 놓고 각각 시험을 하여야 한다.

(4)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머)전기기포발생기(관상어용 전기기포 발생기를 제외한다)

(1)구조

(가)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충전부에 물이 묻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한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또는 캡 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일 것.

(2)정격

정격전압은 125V 이하일 것.

(3)절연성능

(가)욕조용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①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②①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욕실 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6(가)의 시험을, 욕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1), (2), (3) 및 (6)(가)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나)(가)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3)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4)평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 및 (5)에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측 정 개 소		온도(℃)
사용중에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있는 외곽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것	55
	기타의 것	70

비고 : 이 표에서 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

(5)이상온도상승

전열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가) 내지 (라)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할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가하여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기체외곽의 온도는 160℃이하이고 또한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한 경우에 기체의 외곽이 연소할 우려가 없을 때는 기체의 외곽의 온도는 160℃가 아니라도 된다. 이 경우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가)시험품은 두께가 10㎜ 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전열장치에는 그 최대부하를 부하할 것.

(다)송풍장치에는 통전하지 아니할 것.

(라)자동온도 조절기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접점을 단락할 것.

(6)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저)전기포충기

(1)구조

(가)용기를 떼어냈을 때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 타이어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2)절연성능

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 (2) 및 (3)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최대부하를 부하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단 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때) 저항법으로 측정한 권선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이하이고 또한 기타의 곳에 이상발열이 생기지 아니할 것.

(4)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처)전기 잔디 깍기

(1)구조

(가)기체에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스위치를 가지고 있을 것.

(나)방수구조의 것일 것.

(다)과부하 보호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자동복귀식의 것이 아닐 것.

(라)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 상승

표시된 전부하 전류와 같은 전류를 부하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접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단 시간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이하일 것.

(4)기계적 강도

휴대형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2) 및 (3)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시동특성

무부하의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커)전기가위

(1)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2)평상온도상승

무부하의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다음 표에 게기한 운전방법으로 운전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정격시간의 종류	운 전 방 법
연 속 운 전	5분간 운전하고 1분간 정지하는 조작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하여 반복할 것
단 시 간 정 격	5분간 운전하고 1분간 정지하는 조작을 표시된 정격시간 5분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의 비율로 산출한 회수 반복할 것

(3)기계적 강도

부표 6의 (2) 및 (3)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4)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무부하의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터)전기 연필깍기

(1)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2)평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하여 5분간 운전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3)이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절삭부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 가하여,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온도퓨유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 때까지)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나무대 표면의 온도는 150℃(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이하 이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다만, 온도퓨우즈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한 경우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나무대의 표면온도는 150℃이하가 아니라도 된다.

(4)기계적 강도

부표 6의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시동특성

무부하의 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퍼)전기탈 것, 전기오락판 기타의 전동식 장난감

(1)구조

옥외용의 것(충전식의 것으로서 충전중 이외에는 전원전선을 기체에 수납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거치형의 것의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2)절연성능

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3)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가)운전시험

다음의 (1) 내지 (3)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충전식의 것으로서 충전하지 아니한 상태로 내장된 전지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지를 동작시키고,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단 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①전기자동차에 있어서는 표시된 전부하 전류와 같은 전류를 부하 할 것.

②전기자동차 이외의 전기 탈것에 있어서는 최대적재량과 같은 중량의 것을 태울 것.

③① 및 ②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로 할 것.

(나)충전시험

충전식의 것에 있어서는 전지를 충전하는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시험품에 연속 가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이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다)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충전식의 것으로서 충전하지 아니한 상태로 내장된 전지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지를 동작시키고,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온도과승방지장치가 동작할 때에는 그때까지) 기체표면의 온도는 160℃(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이하이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가)전기자동차에 있어서는 구동차바퀴를 구속할 것.

(나)전기자동차 이외의 전기탈 것 중,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60㎏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최대적재량의 2배(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의 중량을 적재시킬 것.

(5)기계적강도

거치형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2)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6의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6)시동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허)벨, 부자, 챠임 및 전기문길이

(1)구조

(가)권선 및 철심과 기계의 붙임면과의 사이에 6㎜이상의 간격을 가질 것.

(나)권선 및 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섬유질의 절연물은 절연 바니쉬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지는 함침제로 완전히 처리되어 있을 것.

(다)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장원형 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2)절연성능

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4의 (1), (2) 및 (3)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가하여 그동안에 저항법으로 측정한 권선의 온도는 130℃(기준주위온도를 30℃로 한다)이하일 것.

(4)용량의 허용차

(3)에 규정하는 시험에서 입력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에 측정한 입력은 정격용량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5)기계적 강도

부표 6의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6)내열성능

옥외용의 것으로서 합성수지제의 외곽 또는 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공기중에서 80℃±3℃에 1시간 가열하고 자연 냉각하였을 때 그 외곽 또는 대는 부풀음, 갈라짐, 깨짐 기타의 이상이 없을 것.

(7)전압특성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있어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의 80퍼센트와 같은 전압을 가하였을 때 확실히 동작할 것.

4. 광원응용 기계기구

가. 전기스탠드

(1)구조

①방전등용 안정기(안정기로서 사용하는 변압기를 포함한다)로서 2차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연 변압기일 것. 다만, 방전램프를 떼어 냈을 때 1차측의 회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광등 스탠드에 있어서는 적당한 곳에 정전용량이 0.006μF이상 0.5μF이하(예열시동식의 것으로서 글로우 스타아터에 병열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0.006μF이상 0.01μF이하)의 잡음 방지용 컨덴서를 가지고 있을 것.

③소켓의 붙임부 및 기체 본체의 결합부분으로서 회전함에 의하여 전선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회전방지 또는 풀림방지 장치를 할 것.

④도자기, 유리등 깨질 우려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전구 또는 형광램프를 제외한다)을 제거하였을 때 충전부에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정격

정격입력 전압 및 백열 전등용의 변압기의 정격 1차전압 및 정격 2차전압은 125V이하일 것. 다만, 형광등스탠드로써 별표 5의 부표 4의 표1에 규정한 FCL-32의 방전램프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변압기의 정격2차전압을 150V이하로 할 것.

(4)평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5)열변형

(4)에 규정하는 시험상태를 8시간 계속하였을 때, 기체 각부에 변형, 변질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6)이상온도상승

형광등스탠드로서 예열 시동식의 것 및 백열전등 스탠드로써 2차전압이 30V 이하의 변압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가)의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과부하 보호장치가 동작하였을 때 또는 권선이 소손하여 통전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였을 때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시험조건

①시험품은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②형광등스탠드로서 예열시동식의 것에 있어서는 형광등을 점등시키기 위한 스타아터를 단락할 것.

③백열전등 스탠드로서 2차전압이 30V 이하의 변압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2차측의 회로를 단락할 것.

(나)기준

①기체의 외부에 불꽃 또는 용융한 절연성 충진물이 나오지 아니할 것.

②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시험품의 밑면에 면하는 나무대의 표면의 온도는 160℃(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이하일 것.

③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형광등 스탠드에 있어서는 0.1MΩ이상,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0.1MΩ이상일 것.

(7)소비전력의 허용차

형광등 스탠드에 있어서는 주위온도가 20℃±1℃의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연속점등하고 소비전력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때에 측정한 소비전력은, 정격소비전력의 120퍼센트이하일 것.

나. 정원등기구

(1)구조

(가)물이 묻을 우려가 있는 점멸기, 개폐기 및 접속기는 방수형의 구조일 것.

(나)그로브, 카버등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기체 내부에 벌레, 먼지등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일 것.

(다)형광등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당한 곳에 정전용량이 0.006μF이상 0.5μF 이하(예열시동식의 것에 있어서 글로우스타터에 병열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0.006μF이상 0.01μF 이하)의 잡음방지용 컨덴서를 가지고 있을 것.

(라)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표시를 할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원플럭이 어어스용 칼날로 어어스할 수 있는 구조의 것 및 (7)에 규정하는 이중절연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고무캡타이어 케이블(1종 캡타이어 케이블을 제외한다)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2)정격

정격전압은 125V 이하일 것.

(3)절연성능

부표 4의 (1),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입력단자에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곳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측 정 개 소		온도(℃)
소켓부외베이스	시멘트 베이스의 것	135
	메카니칼 베이스의 것	230
	아스베스트 베이스의 것	230

비고 : 이 표에서 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

(5)열변형

(4)에 규정하는 시험상태를 8시간 계속하였을 때 기구의 각부에 변형, 변질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6)내열충격성

그로브, 카버등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4)에 규정한 시험상태를 계속하고, 주위 온도보다 10deg 낮은 온도(4℃이하의 경우는 4℃로 한다)의 물을 매분 약 3㎜의 수량으로 약 45° 기울어진 그로브, 카바등에 강우상태로 균일하게 주수하였을때에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7)2중절연의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3의 아(7)(가)(② 및 ⑤를 제외한다)에 적합하는 외에 다음에 적합할 것.

(가)강화절연은 ①에 게기하는 부분에 하여야 하고 ②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강화절연을 할 수 있는 부분

㉮소켓

㉯단자대

㉰안정기 외각의 개구부의 권선과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부분

㉱스위치

②기준

㉮절연성능은 이중절연과 동등 이상일 것.

㉯강화절연을 한 부분의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공간거리(연면거리를 포함한다. 이하 (7)에서 같다)는 부표 2에 게기한 값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나)내부배선은 3의 아 (7)(가)①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적합할 것.

①기능절연만을 한 내부배선과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공간거리는 부표 2에 게기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값 이상일 것.

②기능절연이 되어 있지 아니한 내부배선과 보호절연과의 사이의 공간거리는 부표상에 게기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값 이하일 것.

③내부배선은 확실히 고정되어 있을 것.

(다)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개구로부터 물이 돌아갈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충전부 및 기능절연이 된 부분에 물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백열전구용 또는 수은등용의 소켓은 도자기제의 것일 것.

(마)백열전구용 또는 수은등용 이외의 소켓에 있어서는 램프의 베이스에 접하는 면 및 단자부 이외의 부분에 이음가가 없는 절연물로 절연되어 있을 것.

(바)단자대의 충전부에는 절연성의 보호 카바가 있을 것.

(사)절연성능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맑은 물을 매분 약 3㎜의 수량으로 약 45도 기울어진 방향에서 강우상태도 고르게 1시간 주수를 계속하는 상태에서 다음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①(4)에 규정한 시험 전 및 직후에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3MΩ이상일 것.

②(4)에 규정한 시험직후에 하는 ①에 규정한 시험을 한 후에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에 2,500V)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4,000V)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연속 1분간 이에 견딜 것.

③②에 규정한 시험 후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절연저항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절연의 종류마다 각각 동표의 중란에 게기한 값 이상이고 또한 동표의 좌란에 게기한 절연의 종류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딜 것.

절연종류	절연저항 (MΩ)	전 압(V)	
		정격전압이 150 V이하인 것	정격전압이 150V 를 초과하는 것
기능절연	1	1,000	1,500
보호절연	2	1,500	2,500
강화절연	3	2,500	4,000

다. 장식용 전등기구

(1)구조

(가)전원전선 및 전구 상호간을 접속하는 전선(기체 내부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1) 및 (3)에서 같다)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코오드로서 그 공칭단면적은 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0.75㎟이상, 옥내용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값 이상일 것. 이 경우에 변압기를 가지는 것의 1차측의 전원 전선에 있어서는 그 공칭단면적이 0.75㎟이상일 것.

장식용전등기구의 종류	공칭단면적 (㎟)
베이스가 없는 전구를 가지는 것. E5의 소켓의 것 또는 꽂임 베이스의 것으로서 올리구의 바깥지름이 7㎜ 이하, 길이가 50㎜이하의 것	0.5
E10,E12,E14 및 E17의 소켓의 것	0.75

(나)소켓의 몸체와 베이스는 확실히 붙어 있을 것.

(다)전원에 직접 접속하는 꽂임플럭 및 다음에 적합한 연결용 접속기 1개 이외의 접속기를 가지지 아니할 것.

①별표 3의 5. 가. (5)(마)에 규정한 접속기는 서로 물리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②받이의 수는 하나일 것.

③캡 등의 뚜껑을 가질 것.

④연결용 접속기의 근방에 라벨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전구수, 전구의 종류, 그림에 표시한 전구의 형상 및 연결용 접속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개를 씌우라는 뜻을 표시할 것.

(라)공칭단면적이 0.3㎟이상 0.5㎟미만의 코오드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퓨우즈들이 플럭 또는 전원측의 각 극에 가까운 전구에 퓨우즈 전구를 사용할 것. 이 경우에 퓨우즈들이 꽂임 플럭은 관형퓨우즈를 양극에 가지고 있으며 또한 확실히 붙혀져 있을 것.

(마)전원 전선 및 전구 상호간을 접속하는 전선을 기체의 바깥방향으로 향하여하며 기체의 자중의 3배의 값(기체의 자중의 3배의 값이 10㎏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10㎏, 기체의 자중의 값의 3배의 값이 3㎏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3㎏ 크리스마스트리용의 것으로서 옥내에서 사용하는 걸림형의 것. 또는 트리가 붙은 것에 있어서는 1㎏의 값)의 장력을 연속하여 15초간 가하였을 때 또는 기체의 내부로 향하여 전원 전선 또는 전구 상호간을 접속하는 전선의 기계측으로부터 5㎝의 곳을 유지하여 눌러 넣었을 때에 전원전선 및 전구 상호간을 접속하는 전선과 내부단자와의 접속부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붓싱이 빠질 우려가 없을 것.

(바)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방수형의 구조일 것.

(2)정격

정격전압(변압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변압기의 2차측의 회로 전압을 포함한다)은 125V 이하일 것.

(3)절연성능

(가)옥외용의 것 중 걸림형의 것에 있어서는 전원전선 및 전구 상호간을 접속하는 전선을 지름이 50㎜의 금속제 환봉에 균일하게 맡아 붙이고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기체의 금속박을 간격이 없이 대어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맑은 물을 매분 약 3㎜의 수량으로 약 45도 기울어진 방향에서 강우상태로 균일하게(꽂임플럭의 칼의 부분을 제외한다) 주수하여 1시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주수를 계속하면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금속제 환봉 또는 금속박과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1MΩ이상이고 또한 충전부와 금속제 환봉 또는 금속박과의 사이에 1,000V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연속 1분간 이에 견딜 것.

(나)(가)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전구에 사람이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4)에 규정한 시험 전후에 지름이 6㎜의 강구를 충전한 용기 중에 시험품(꽂임 플럭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칼의 부분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전원전선의 선단의 부분을 제외한다)을 매립하고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강구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1MΩ이상이고 또한 (4)에 규정한 시험직후에 충전부와 강구와의 사이에 1,000V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연속 1분간 이에 견딜 것.

(다)(가) 및 (나)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4)평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고 그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사람이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전구의 표면이외의 부분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사람이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전구의 표면에 있어서는 95℃(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이하일 것.

(5)과전압내력

정격전압의 110퍼센트와 같은 전압을 1시간 연속 가하였을 때에 절연불량, 단락, 기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6)퓨우즈의 용단특성

꽂임플럭의 퓨우즈 및 퓨우즈전구의 퓨우즈는 1A의 전류를 통하였을 때 1분 이내에 용단할 것.

라.슬라이드 영사기

(1)재료

베이스부에 자기등의 열차폐물을 가지지 아니하는 할로겐 전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할로겐 전구의 소켓의 절연물이 자기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절연성 및 내연성을 가지는 것일 것.

(2)구조

통풍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풍장치가 정지한 상태에서 영사전구에 통전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4)평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해 연속하여 30분간(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운전하였을 때에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램프 하우스의 상반부 및 통풍장치의 배기구멍 이외의 부분에 한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5)이상온도상승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또는 과전류 보호장치가 동작할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영사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이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이 0.1MΩ이상일 것.

(6)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마. 8㎜영사기

(1)재료

베이스부에 자기 등의 열차폐물을 가지지 아니하는 할로겐 전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할로겐 전구의 소켓의 절연물이 자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 및 내열성을 가지는 것일 것.

(2)구조

통풍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풍장치를 정지한 상태에서 영사전구에 통전할 수 없는 구조일 것.

(3)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4)평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30분간 연속하여 운전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 (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램프 하우스 및 통풍장치의 배기 구멍 이외의 부분에 한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5)소비전력의 허용차

(3)에 규정한 시험에서 소비전력이 거의 일정하게 된때에 측정한 소비전력은 정격소비전력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바. 전자 후래쉬

(1)구조

전지를 전원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접속코오드의 극성의 구별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접속되는 단자 또는 그 근방에 극성의 부분을 표시할 것. 다만, 극성을 역으로 하여 접속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가)충전식의 것에 있어서는 충전하는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해 연속 충전하여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나)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발광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은 직후에 발광시키는 동작을 20회 반복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이상온도상승

정류장치를 기체외부에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정류장치를, 정류장치를 기체 내부에 가지는 충전식의 것에 있어서는 기체를,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모든 출력측의 단자를 단락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과승방지장치 또는 과전류보호장치가 동작하였을 때는 그때까지 또는 권선이 소선하여 통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연속 가하였을 때에 다음에 적합할 것.

(가)기체의 외부에 불꽃 또는 용융한 절연성 충전물이 나오지 아니할 것.

(나)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시험품의 밑면에 면하는 나무대의 온도가 150℃(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이하일 것.

(다)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기계적 강도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이 경우에 정류장치 또는 변압기를 기체외부에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기체, 정류장치 및 변압기의 각각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사. 휴대전등(충전식의 것에 한한다)

(1)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2)평상온도상승

충전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입력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제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3)기계적 강도

부표 6의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아. 가정용 광선치료기

(1)구조

(가)변압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의 변압기는 절연변압일 것.

(나)가정용 저주파치료기에 있어서는 전류를 0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증대하는 출력조정장치를 가지고 또한 출력조정기를 그 출력이 최저가 되는 위치 이외의 위치에 있어 전원을 넣었을 때 사용자에 전격감을 가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정격

가정용 저주파치료기에 있어서는 출력측 단자의 사이에 1KΩ의 무유도 저항을 접속하여 출력전류를 측정하였을 때에 출력전류는 실효치로 20㎃이하일 것.

(3)절연성능

충전부와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2) 및 (7)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4)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 및 (5)에 있어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 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30분간(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

어서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5)이상온도상승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의 접점을 단락하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상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5.전자응용 기계기구

가.가정용 저주파 치료기

(1)구조

(가)변압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나)가정용 저주파치료기에 있어서는 전류를 0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증대하는 출력조정장치를 가지고 또한 출력조정기를 그 출력이 최저가 되는 위치이외의 위치에 있어 전원을 넣었을 때 사용자에 전격감을 가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정격

가정용 저주파치료기에 있어서는 출력측 단자의 사이에 1㏀의 무유도 저항을 접속하여 출력전류를 측정하였을 때 출력전류는 실효치로 20㎃이하일 것.

(3)절연성능

충전부와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7)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4)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4) 및 (5)에 있어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 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30분간(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이하일 것.

(5) 이상온도상승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의 접점을 단락하고, 정격전압과 같은 접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퓨우즈 또는 온도상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할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 저항은 0.1㏁이상일 것.

나. 텔레비젼 수상기

(1)표시

텔레비젼수상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시를 할 것. 이 경우에 그 표시요령은 (가)에서 (사)까지에 의하여야 한다.

품명 및 형명
종　　류
조정의 방식
VHF 튜우나미조정
UHF 튜우나미조정
색의 농도 조정
색조의 조정
코오드의 길이
사용상의 주의
표시자

연속 1분간 이에 견딜 것.

비고 : 1. 표시에서 다음 사항 이외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의 주소 및 상표

나. 이 표시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요지

2. 표시의 테두리내의 면적은 500㎠이상으로 하고 테두리의 형은 자유로 한다.

3. "VHF 튜우나미조정" "UHF 튜우나미조정""색의 농도 조정" 또는 "색조의 조정"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 문자 및 각각의 문자에 대한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가)품명 및 형명의 표시에 있어서는 텔리비젼수상기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텔리비젼수신기의 호칭으로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품명 및 형명을 표시할 것.

(나)종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텔리비젼수상기에 사용되는 능동소자(브라운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텔리비젼수상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능동소자	문 자
진공관	진 공 관 식
진공관 및 트랜지스터 또는 진공관 · 트랜지스터 및 아이 · 씨(IC)	트랜지스터 진공관식
트랜지스터	트 랜 지 스 터 식
트랜지스터 및 아이 · 씨(IC)	IC · 트랜지스터식
아이 · 씨(IC)	IC식

비고 : "IC"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 및 혼성집적회로를 말하며
또한 이들을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다)조정방식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조정기구를 나타내는 문자를 기재함과 동시에 그 조정기구마다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조정방식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조정기구	조정의 방식
브이 · 에이취 · 에푸(VHF) 튜우나미조정	수 동 식
	푸리셋트식
	자 동 식
유 · 에이취 · 에푸(UHF) 튜우나미조정	수 동 식
	푸리셋트식
	자 동 식
색의 능동 조정	수 동 식
	자 동 식
색조의 조정	수 동 식
	자 동 식

비고 : "프리셋트식"이라 함은 선국시마다 동조의 필요가 없도록
미리 챤넬마다 미조정기구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코오드 길이의 표시에 있어서는 텔리비젼수상기에 부속하는 전원코오드의 유효길이를 m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허용범위는 그 길이를 나타내는 수치의 +10% -2%로 한다.

(마)사용상의 주의의 표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만,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또 ③중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끄고 꽂임프럭을 콘센트로부터 뺄것"의 부분은 밑에 있어서는 밑줄을 긋는 등 다른 표시사항과 비교하여 특히 눈에 띄는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할 것.

①내부의 온도가 상승함으로 통풍구멍의 주위에 적당한 간격을 둘 것.

②온도가 높은 장소나 습기가 많은 장소는 피할 것.

③내부에는 고전압부분이 있으므로 부득이 하게 뒷면의 커버를 뗄 때에는 반듯이 전원스윗치를 끄고 꽂임프럭을 콘센트로부터 뺄 것.

④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텔리비젼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아프터써비스센타 또는 전문수리상과 상의할 것.

(바)표시에 있어서는 표시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부기 할 것.

(사)표시는 텔리비젼 수상기마다 본체의 보기 쉬운 곳에 인쇄한 금속판 또는 합성수지판등을 붙이거나 각인하는 등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텔레비젼수상기의 본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꼬리표를 코오드에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붙일 수 있다.

(2)재료

인쇄회로용 적층관(500W이상의 전력이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가)의 시험, 기체의 내부의 피복전선에 있어서는 (나)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가)원래의 두께 그대로 각 변의 길이가 12.5㎜, 125㎜의 장방형으로 절취한 시험편(도체는 제거한다)의 일단을 장변 방향은 수평으로, 단변

방향은 수평에 대하여 45도의 각도로 고정하고, 다른 단에 지름이 8.5㎜이상 11.5㎜이하의 분젠버어너의 길이 약 25㎜의 안정된 파란불꽃을 수직에 대하여 30도의 각도로서 30초간 대고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시험편의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불꽃이 15초이내에 소멸하고 그 연소거리가 자유단으로부터 25㎜이하일 것.

(나)길이 450㎜의 시료를 철제의 폭 310㎜, 길이 360㎜, 높이 610㎜의 시험함의 중앙에서 수직으로 상하단을 고정하고 시험함의 밑면에 탈지면을 깔아, 시료의 하단으로부터 75㎜의 위치에 산화염의 선단의 길이가 약 130㎜환원염의 길이가 약 35㎜인 분젠버어너의 환원염의 선단을 수직에 대해 20도의 각도로서 15초간 대고 불꽃을 제거하여 15초간 휴지하는 조작을 5회 반복하였을 때에 시료의 불꽃이 번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험후에 시료의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불꽃이 60초 이내에 소멸할 것. 이 경우에 시료로부터 떨어뜨린 연소물에 의하여 탈지면이 연소하지 아니하고 또한 불꽃이 닿는 시료의 곳으로부터 255㎜ 상방에 폭 12.7㎜로서 19㎜돌출하도록 말아 붙인 종이[KS A 1522(종이감 테이프)(포장용)에 규정하는 2종에 상당하는 것)의 표시기의 시험기에 있어서의 소실 및 탄면적이 당해 표시기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3)구조

(가)금속 샤시 또는 금속 부라?이 전원회로에 접속되어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콘트롤 샤프트의 놉을 외부로부터 떼어 낼 수 없고 또한 금속샤시 및 금속 부라?으로부터 절연되어 있는 구조일 것. 다만, 놉을 떼었을 때 충전부에 사람이 닿을 우려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충전부에서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을 것. 다만, 다음에 게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첨두전압이 5,000V이하의 회로로서 다음에 적합할 것.

㉮500Ω의 부하를 접속하였을 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0.0003초 이내에 300㎃이하로 감소하고 0.2초이내에 5㎃이하로 감소할 것.

㉯500Ω의 부하를 접속하였을 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5㎃로 감소할 때가지 흐르는 전기전량을 전류가 5㎃로 감소함에 필요한 시간이 0.1초를 초과 0.2초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4㎌, 0.03초 이상 0.1초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한 값 이하일 것.

$Q=75T-350T^2$

Q는 전기량으로 그 단위는 ㎌이다. T는 전류가 5㎃로 감소하는 데 요하는 시간으로 하고 그 단위는 초로 한다.

②첨두전압이 5,000V를 초과하는 회로로서 회로의 총합정전용량이 3,000PF이하일 것.

(다)퀵스타아트 방식의 것에 있어서 화면을 꺼놓은 상태에서 예열 전력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외곽의 뒷면 또는 기타 적당한 곳에 예열 휴지를 위한 스위치를 둘 것. 이 경우에 그 스위치 근방에 그 스위치를 켜놓은 상태에 있어서는 화면을 끈 경우라도 전력이 소비되고 있다는 뜻을 쉽게 떼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4)절연성능

(가)부표 4의 (1), (2) 및 (6)(가)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나)고압정류회로의 충전부와 샤시와의 사이에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 시험전압과 같은 전압이 가하여진 상태로 하였을 때 연속 1분간 이에 견딜 것.

$E=1.25V+1750$

E : 시험전압으로 하고 단위는 V이다.

V : 고압정류기의 양극 또는 음극과 샤시와의 사이에 측정한 최대 전압으로 하고 그 단위는 V이다.

(다)평상온도상승의 시험직후에서 수평편향코일에 가하여지고 있는 전압을 측정하고 그 전압의 1.25배의 전압이 수평편향코일에 가하여진 상태로 하였을 때 편향 요크가 연속으로 1분간 이에 견딜 것.

(5)평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으로 가하고 그 사이에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상승이 부표 5에 게기하는 값 이하일 것.

(6)소비전력의 허용차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2분간 가한 후 측정한 소비전력의 정격소비전력에 대한 허용차는 다음 표에 적합할 것.

정격소비전력(W)	허용차(퍼센트)
30이하	+20
30초과 100이하	+20 -30
100을 초과 하는 것	±20

(7)푸라이백 변압기의 내연성

(가)푸라이 변압기는 권선의 측면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권선 부분의 거의 중앙에 산화염의 길이가 약 130㎜환원염의 길이가 35㎜인 분젠버어너의 환원염의 선단을 수직에 대하여 20도의 각도로 15초간 대고 불꽃을 뗀 후 15초간 정지하는 조작을 5회 반복하였을 때 권선부의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불꽃이 각 정지시간내에 소멸하고 또한 시험 후 30초 이내에 소멸하는 것일 것. 다만, 다음에 적합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두께가 0.3㎜이상의 강판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불연성의 합성수지 또는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차폐함을 설치한 것.

②①에 규정하는 차폐함으로서 개구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푸라이백 변압기가 연소함에 의하여 그 구부로부터 불꽃이 나오지 아니하는 구조인 것. 다만, 연소한 경우에 다른 부품이 연소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푸라이백 변압기의 단자판과 방전시험봉과의 사이에 연속하여 30초간(30초 이내에 그 단자판이 연소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방전을 중지하고 방전중지 후 15초 이내에 불꽃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다시 방전을 계속하여 합계 30초간)방전시켜 푸라이백 변압기의 단자판이 연소한 경우에 방전중지 후로부터 15초 이상 연소를 계속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가)① 및 ②(단서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차폐함에 들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편향요오크의 내연성

편향요오크를 통상의 상태로 동작시키고 편향요오크 권선부상호간 및 편향요오크의 충전부와 샤시간에서 방전시험봉을 사용하여 아아크를 발생시켜 아아크에 의한 불꽃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전을 중지하고, 그 불꽃이 없어진 후, 다시 아아크를 발생시키는 조작을 15분간(부품의 파괴 또는 보호장치(쉽게 교환할 수 있는 퓨우즈를 제외한다)의 동작에 의하여 아아크가 지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반복하였을 때에 아아크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꽃이 방전중지시간 내 및 시험 후에 어느 경우에나 15초 이내에 소멸할 것.

(9)브라운관의 보호

브라운관을 케비넷트에 정상으로 취부한 상태에서 브라운관의 전면에 지름이 50㎜, 중량이 500g강구를 높이 1,400㎜에서 진자상으로 떨어뜨렸을 때 다음에 적합할 것.

(가)보호판이 유리 또는 합성수지인 것에 있어서는 전면에 파편이 튀어 퍼지지 아니할 것.

(나)보호판이 보강 유리인 것에 있어서는 금, 갈라짐 기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다)보호판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면에 파편이 튀어 퍼지지 아니할 것.

(10)브라운관의 기계적 강도

브라운관(보호판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보호판을 포함한다)을 기계적 방법 또는 열충격법으로 파괴하였을 때 브라운관의 전방 900㎜ 및 1,500㎜에 설치한 장벽간에 튀어 퍼지는 유리의 파편의 중량은 단일파편으로 15g이하이고 총중량으로 45g이하이고, 또한 중량이 1g을 초과하는 세편은 브라운관 전방 1,500㎜에 설치한 장벽을 넘어 튀지 아니할 것.

(11)X선량 측정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기체의 외각으로부터 50㎜ 떨어진 X선량은 매시 0.5㎃R 이하일 것.

(12)복사파 측정

기체로부터 발생되는 복사파의 전계강도는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적합할 것.

(가)시험품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 떨어진 점에 공중선을 설치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표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복사주파수(MHz)	값(dB)
65이상 500이하	(가)의 표에 계기한 값의 dB환산값에서 18.0을 뺀 것
500초과 600이하	58.5
600초과 700이하	57.5
700초과 800이하	57
800초과 900이하	57.5
900초과 1,000이하	58.5

비고 : V_1 및 V_2 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V_1 = 50f_1 - 6{,}000$

V_1 은 전계강도로 하고 그 단위는 μV/m로 한다.

f_1 은 130MHz 초과 150MHz까지의 복사파의 주파수로 하고 그 단위는 MHz로 한다.

$$V_2 = \frac{600}{19} f_2 - \frac{139{,}500}{19}$$

V_2 는 전계강도로 하고 그 단위는 μV/m로 한다.

f_2 는 280MHz 초과 470MHz까지의 복사파의 주파수로 그 단위는 MHz로 한다.

(나)시험품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0.5m 떨어진 점에 공중선을 설치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복사주파수(MHz)	값(μV/m)
65이상 130이하	500

130초?C 150이하	V_1
150초과 280이하	1,500
280초과 470이하	V_2
470초과 1,000이하	7,500

비고 : 데시벨 환산은 1μV/m를 0dB로 한다.

(다)잡음측정

잡음 단자 전압은 525KHz이상 25MHz이하의 주파수 범위에 있어서 40dB이하로 할 것. 이 경우에 dB은 1μV를 0dB로 산출한 값으로 한다.

다. 전자레인지

(1)구조

(가)음식물을 넣은 문을 열었을 때 발진관은 발진을 정지할 것.

(나)문의 개폐만에 의하여 동작하는 발진관의 발진정지장치(발진관의 발진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문을 열수 없는 구조의 것도 포함한다)를 2중으로 가지며 또한 어느 한쪽의 발진장치는 문을 연 상태에서 외부로부터의 조작에 의하여 발진관을 발진시킬 수 없는 구조의 것일 것.

(다)정격전류와 같은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문의 개폐시험을 100,000회 하였을 때 문의 개폐기구 및 발진관의 발진정지장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을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정격

발진관의 발진주파수는 2,450MHz±50MHz의 범위 내에 있을 것.

(3)절연성능

(가)부표 4의 (1), (2) 및 (6)(가)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나)끓는 물을 넣은 용기를 기구의 고내에 넣고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타임 스위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최대 동작시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30분간 가한 후 통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타임스윗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최대 동작시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30분간 경과하였을 때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1MΩ이상일 것.

(다)(나)에 규정하는 시험 후 부표 4의 (2)에 게기한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연속 1분간 이에 견딜 것.

(4)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2,000㎤의 물을 넣은 원통상의 비이커를 그 기체내의 거의 중앙에 놓은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2분간 운전하고 1분간 정지하는 조작을 반복하여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비이커에 넣은 끓는 물이 용기의 용량의 반이 감소할 때마다 감소한 양과 같은 양의 끓는 물을 가하여야 한다.

(5)이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음식물을 넣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타임스윗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최대 동작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연속 가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다음 표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측 정 개 소	온 도 (℃)
나무대	160
전원전선의 분기점	145

비고 : 이 표에서 기준주위 온도는 30℃로 한다.

(6)정격 고주파 출력의 허용차

(5)에 규정하는 시험직후에 정격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측정한 고주파 출력은 정격고주파 출력의 90퍼센트 이상 115퍼센트 이하일 것.

(7)누설전파 측정

(가)275㎠±15㎤의 물을 넣은 원통상의 비이커를 그 기체 내의 거의 중앙에 놓은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문을 닫았을 때 및 발진관의 발진정지장치가 동작하기 직전의 최대 위치까지 문을 열어서 고정하였을 때 기체의 표면으로부터 5㎝ 떨어진 모든 곳에서 측정한 누설 전파의 전력 밀도의 값은 다음에 적합할 것.

(나) (2)(다)에 규정한 시험을 한 후 (가)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대 기체의 표면으로부터 5㎝떨어진 모든 곳에서 측정한 누설전파의 전력밀도의 값은 5㎽/㎠이하일 것.

①문을 닫았을 때에는 1㎷/㎠이하일 것.

②발진관의 발진정지장치가 동작하기 직전의 최대 위치까지 문을 열어 고정하였을 때에는 5㎽/㎠이하일 것.

(8)복사파 측정

기체에서 발생하는 복사파(주파수가 13.56MH±6.78KHz, 27.12MHz±162.72KHz, 40.68MHz±20.34KHz, 2450MHz±50MHz 5.8GHz±75MHz 및 24.125GHz±125㎒의 범위내의 것을 제외한다)의 전계 강도는 기체로부터 30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하였을 때 다음에 적합할 것.

(가)90MHz로부터 108MHz까지 및 170MHz에서 222MHz까지의 주파수 범위에 있어서는 30μV/m이하일 것.

(나)470㎒로부터 770㎒까지의 주파수의 범위에 있어서는 100μV/m이하일 것.

(다)(가) 및 (나)에 게기한 주파수의 이외의 주파수에 있어서는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 값이하일 것. 이 경우에 고주파 출력이 500W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00μV/m이하일 것.

$V=\sqrt{20P}$

V : 전계강도로서 그 단위는 μv/m로 한다.

P : 고주파 출력으로서 그 단위는 W로 한다.

라. 고주파 웰더

(1)구조

(가)정류부분 및 발진부분은 외함에 넣고 또한 정류관, 발진관 기타의 부분을 교환하기 위한 뚜껑 또는 문은 쉽게 개방할 수 없는 것일 것.

(나)과부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다)접착용의 전극에 고주파 출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가지고 있을 것.

(라)기체에 고정되어 있는 정반으로서 접착용 전극으로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정반은 접지측에 접속되어 있을 것.

(마)기체의 전압측에 접속되어 있는 접착용의 전극은 적색으로 도장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위험하다는 뜻의 표시를 할 것

(바)외곽의 보기 쉬운 곳에 어어스용 단자 또는 어어스용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어어스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다만, 기체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 및 전원플럭의 어어스용 칼날로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케이블로서 그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의 것일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에서 (마)까지 게기하는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단 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을때) 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가)접착용의 전극 상호간에 저항부하를 접속하고, 표시된 정격 양극전류와 같은 전류를 통할 것.

(나)출력관의 양극전압을 조정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의 조정장치의 놋치를 최대 전압으로 할 것.

(다)전자동식의 것에 있어서는 발진시간을 최대시간으로 하고 냉각시간 및 휴지시간을 최소시간으로 하여 반복 운전할 것.

(라)고주파 미싱으로서 전자동식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연속으로 운전할 것.

(마)(다) 및 (라)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발진시간 3초, 휴지시간 3초의 조작을 반복할 것.

(4)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5)복사파 측정

(가)기체로부터 발생하는 복사파(주파수가 13.56MHz±6.78KHz, 27.12MHz±162.72KHz, 40.68MHz±20.34KHz, 2450MHz±50MHz, 5.8GHz±75MHz 및 24.125GHz±125MHz의 범위내의 것을 제외한다)의 전계강도는 그 기체로부터 100m의 거리에서 측정하였을 때 100μV/m이하일 것. 다만, 전계 실드된 방에서 사용한다는 뜻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40.46M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파수가 40.46MHz±240KHz의 범위내(40.68MHz±20.34KHz의 범위내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41.14M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파수가 41.14MHz±240KHz의 범위내에서 기체로부터 발생하는 복사파의 전계강도는 그 기체로부터 100m의 거리에서 측정하였을 때 2.5㎷/m이하일 것. 다만, 전계 실드된 방에서 사용한다는 뜻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라디오수신기

(1)구조

금속샤시 또는 금속브라?이 전원회로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콘트롤샤프트가 금속샤시 또는 금속브라?으로부터 절연되어 있거나 또는 놉을 외부로부터 뗄 수 없는 구조일 것. 다만, 놉을 떼었을때에 충전부에 닿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보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 가하여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복사파측정

라디오 수신기로부터 발생하는 복사파의 전계강도는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적합할 것. (가)시험품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떨어진 점에 공중선을 설치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표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복사주파수(MHz)	값(μ v/m)
65이상 130이하	500
130초과 150이하	V_1
150초과 280이하	1,500
280초과 470이하	V_2
470초과 1,000이하	7,500

비고 : v_1 및 v_2 는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된 값으로 한다.

$v_1 = 50f_1 - 6000$

v_1 은 전계강도로 하고 그 단위는 μ v/m로 한다.

f_1 은 130MHz초과 150MHz까지의 복사파의 주파수로 하고 그 단위는 MHz로 한다.

$$v_2 = \frac{600}{19} f_2 - \frac{139,500}{19}$$

v_2 는 전계강도로 하고 그 단위는 μV/m로 한다.

f_2 는 280MHz를 초과 470MHz까지의 복사파의 주파수로 하고 그 단위는 MHz로 한다.

(나)시험품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0.5m 떨어진 점에 공중선을 설치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의 표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복사주파수(MHz)	값(dB)
65이상 500이하	(가)의 표에 게기한 값의 dB환산치에서 18.0을 뺀 것
500초과 600이하	58.5
600초과 700이하	57.5
700초과 800이하	57
800초과 900이하	57.5
900초과 1,000이하	58.5

비고 : dB환산은 1μV/m를 0dB로 한다.

(5)잡음측정

잡음 단자전압은 525KHz에서 9MHz까지의 주파수범위내에서는 40dB이하, 10MHz에서 25MHz까지의 주파수범위에서는 60dB이하, 9MHz에서 10MHz까지의 주파수범위에서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하일 것.

$V=20f-140$

V는 잡음단자 전압으로 하고 그 단위는 dB로 한다.

f는 9MHz에서 10MHz까지의 잡음방해 출력과 주파수로 하고 그 단위는 MHz로 한다.

바. 테이프레코다, 레코트프레이아, 전기축음기, 비디오테이프레코다, 기타의 음향기구

(1)구조

(가)금속샤시 또는 금속 브라?이 전원회로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콘트롤샤프트가 금속샤시 또는 금속 브라?으로부터 절연되어 있거나 또는 놉을 외부로부터 뗄 수 없는 구조일 것. 다만 놉을 떼었을 때에 충전부에 닿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충전부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것일 것.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첨두전압이 5000V이하의 회로로서 다음에 적합한 것.

㉮500Ω의 부하를 접속하였을 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0.0003초 이내에 300mA이하로 감소하고 0.2초 이내에 5mA이하로 감소할 것.

㉯500Ω의 부하를 접속하였을 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5mA로 감소할 때까지에 흐르는 전기량은 전류가 5mA로 감소하는 데에 소요하는 시간

이 0.1초를 초과 0.2초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4㎃, 0.03초이상 0.1초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값 이하일 것.

$Q=75T-350T^2$

Q는 전기량으로 그 단위는 ㎃이다. T는 전류가 5㎃로 감소하는 데에 요하는 시간으로 하고 그 단위는 초로 한다.

②첨두전압이 5,000V를 초과하는 회로로서 회로의 총합정전용량이 3,000PF이하의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가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4)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사. 전자냉장고

(1)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2)평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가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6. 기타 휴대발전기 이외의 교류용 전기기계기구

가. 방범 경보기

(1)절연성능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함으로써 경보를 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및 (7)의 시험을, 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3)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2)평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가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나. 의료용 물질 생성기

(1)구조

(가)공기이온발생기 및 오존 발생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할 것.

①전리부분, 오존 발생부등의 고압부분은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보호테두리 또는 보호망이 부착하고 있을 것.

②오존 발생기용 안정기는 별표 5의 1 및 3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③물전해기에 있어서는 전원장치의 충전부에 물이 묻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절연성능

물전해기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및 (7)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다음의 (가) 내지 (다)에 게기한 시험조건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시험품에 가하여 연속으로 운전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타임 스위치를 가진 물전해기에 있어서는 설정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 하였을 때)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에 의하여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속도조정 장치를 가진 것에 있어서는 그 속도조정장치의 놋치를 최고 속도 및 최저속도에 놓고 각각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시험품을 벽에 부착하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기타의 것에서는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을 것.

(나)물전해기에 있어서는 용기에 정격용량(정격용량의 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용량의 80퍼센트)의 물을 넣을 것.

(다)(나)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최대의 부하를 가할 것.

(4)입력전류의 허용차

물전해기에 있어서는 용기에 정격용량(정격용량의 표시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용량의 약 80퍼센트)의 20℃±3℃의 물을 넣고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으로 15분간 가하였을 때에 측정한 입력 전류는 정격 입력전류의 11.5퍼센트 이하일 것.

(5)시동특성

전동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표 7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나. 가정용 전위치료기 · 가정용 전격치료기 및 자기치료기

(1)구조

(가)변압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나)가정용 저주파치료기에 있어서는 전류를 0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증대하는 출력조정장치를 가지고, 또한 출력조정기를 그 출력이 최저가 되는 위치 이외의 위치에서 전원을 넣었을 때 사용자에 전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정격

가정용 저주파치료기에 있어서는 출력측 단자의 사이 1KΩ의 무유도 저항을 접속하여 출력전류를 측정하였을 때에 출력전류는 실효치로 20㎃이하일 것.

(3)절연성능

충전부와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및 (7)의 시험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4)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4) 및 (5)에 있어서 같다)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온도를 최고온도로 놓고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30분간(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5)이상온도상승

자동온도조절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자동온도조절기의 접점을 단락하고,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때까지(온도퓨유즈 또는 온도상승방지장치로서 사용하는 자동스위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 연속 가하여 그 동안에 시험품 또는 나무대가 연소할 우려가 없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다. 전격 살충기

(1)구조

(가)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나)변압기의 2차측은 접지 할수 없는 구조일 것.

(다)변압기의 외함과 철심과는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것.

(라)전격 격자에 통전되고 있음. 나타내는 적색의 표시등을 둘 것.

(마)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둘 것.

①전격 격자의 주위에 격자를 두고, 그 내부에 사람이 손을 넣었을 때에 전격살충기의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이 경우에 격자는 전격격자로부터 10㎝(전격격자중 사람이 쉽게 닿을 염려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3㎝)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격 격자의 주위에 지름이 7㎝의 공을 관통할 수 없는 격자를 설치하고 그것에 사람이 닿았을 때 전격살충기의 1차측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이 경우에 격자는 전격격자에서 10㎝(전격격자중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5㎝)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③전격격자의 가장 밑 부분에서 10㎝이상 밑으로 설치된 보호망. 이 경우에 보호망은 전격 격자의 바깥에 붙여져야 하고, 또한 보호망의 끝과 전격격자의 가장 윗 부분과를 연결하는 선과 보호망의 면이 이루는 각도가 60도 이하가 되는 것일 것.

(바)기체에는 전격격자의 높이를 바닥 위 또는 지표면상 3.5m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는 뜻의 표시를 할 것. 다만, 2차측 개방전압이 7,000V 이하의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마)(1) 또는 ②의 위험방지 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바닥위 또는 지표면상 1.8m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는 뜻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사)옥외용의 것의 전원전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캡타이어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그 공칭단면적이 0.75㎟이하일 것.

(2)정격

정격 2차 무부하 전압은 12,000V 이하, 전격 2차 다락전류는 25㎃이하일 것.

(3)절연성능

옥외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2) 및 (3)의 시험을 옥내용의 것에 있어서는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4)평상온도상승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1차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출력측의 단자를 단락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온도

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1)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측 정 개 소		온도(℃)
권 선	A종 절연의 것	110
	E종 절연의 것	125
	B종 절연의 것	135
	F종 절연의 것	160
	H종 절연의 것	180

비고 : 이 표에 있어서 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한다.

라. 직류전원장치

(1)구조

(가)전지충전용의 것(기계에 내장된 것을 제외한다) 및 장난감용의 것에 대해서는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나)직류측의 단자 또는 인출선에 있어서는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극성의 구분을 표시할 것. 다만, 접속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접속할 때 극성의 구분에 착오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출력측에 교류 단자를 부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2)정격

장난감 용인 것의 출력측의 전압은, 직류용인 것에 있어서는 45V 이하, 교류용인 것에 있어서는 30V이하일 것.

(3)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4)2차전압 변동특성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입력 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전지를 충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출력측의 인출선 또는 단자와의 사이에 표시된 공칭 용량의 전지를 충전하는 상태로, 전지를 내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지를 충전하는 상태로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저항부하을 접속한 상태로, 정격부하 전류와 같은 전류를 통하였을 때에 측정한 출력측의 직류 및 교류의 단자전압은 다음 표에 적합할 것. 다만, 변압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 격 용 량(VA)	2차측의 단자 전압
100이하	정격 2차전압의 60%이상
100초과 500이하	정격 2차전압의 80%이상
500을 초과하는 것.	정격 2차전압의 90%이상

(5)평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4)에 규정하는 부하를 부하한 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하여 가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 온도의 측정에 있어서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7)의 측정개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각 동표에 게기한 값이하, 다음 표에 게기한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각가 동표에 게게한 값이하일 것.

	측 정 개 소	온도(℃)
외 각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 것. 기타의 것.	55 70

비고 : 이 표에 있어서 기준주위온도는 30℃로 함.

(6)이상온도상승

시험품을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에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모든 출력측의 단자를 단락하고,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온도과승방지장치 또는 과전류 보호장치가 동작하였을 때는 그때까지) 연속하여 가하였을 때 또는 권선이 소손 하여 통전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다음에 적합할 것.

(가)기체의 외부에 불꽃 또는 응융한 절연성 충전물이 나오지 아니할 것.

(나)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시험품의 밑 부분에 면하는 나무대의 표면의 온도는 150℃(기준주위 온도는 30℃로 한다)이하의 것일 것.

(다)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7)기계적 강도

부표 5의 (2) 및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마. 조광기

(1)구조

기체의 꽂임구멍의 근방에 부하의 최대 전류를 표시 할 것.

(2)절연성능

부표 3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3)평상온도상승

반도체식 및 변압기식의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에 최대부하 전류가 흐르도록, 조광 코일식의 것에 있어서는 시험품에 최대부하 전류 2분의1 상당하는 전류가 흐르드록 조정하고 정격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 전압과 같은 각부의 온도 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하여,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에 게기한 값 이하일 것.

바. 컨덴서 형 잡음 방지기

(1)재료

꽂임칼받이 및 칼날은 별표 3의 1, 가 및 5, 가(5)(라)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구조

(가)인출선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인출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는 코오드로서 도체의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이고 또한 길이가 20㎝이상일 것.

(나)컨덴서와 퓨우즈를 조합한 것. 또는 컨덴서와 저항기를 조합한 것일 것.

(다)컨덴서의 정격 용량 및 컨덴서의 접속방식은 다음 표에 적합할 것.

종 류	콘덴셔의 정격용량(uF)		접 속 방 식
	C_1	C_2	
DCS2-10	0.1	-	
DCS2-0.5	0.05	-	
DCR2-10	0.1	_	
DCR3-10	0.1	-	
DCB3-66	0.067	0.067	[그림 생략]
DCB3-15	0.1	0.005	
DCB3-15	0.1	0.005	
DCB5-13	0.1	0.003	
DCB5-13	0.1	0.003	
DCB5-51	0.05	0.0015	

비고 : 1. ①은 인출선 또는 단자(어어스용의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2. ②는 어어스용 인출선 또는 어어스용 단자로 한다.

3. C_1 및 C_2 는 컨덴서로 한다.

4. f는 퓨우즈로 한다.

5. R은 저항기로 한다.

(라)컨덴서는 KS C 2331(컨덴서 박지)에 적합하는 컨덴서 지와 금속박과를 조합한 종이 컨덴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컨덴서일 것.

(마)퓨우즈는 정격전류가 1A이하의 봉입형 퓨우즈일 것. 다만, 퓨우즈가 용단하는 경우에는 절연 및 기타의 지장이 생길 우려가 없을 때에는 정격 전류가 1A이하의 실퓨우즈 또는 고리로 할 수 있다.

(바)저항기는 KS C 6417(탄소피막 고정저항기) KS C 6412(고정체 저항기) 또는 KSC 6413(절연성 탄피막 고정 저항기)에 적합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저항치가 200Ω, 용량이 4분의 1W의 저항기일 것.

(사)컨덴서와 저항기와를 조합한 것 또는 컨덴서와 퓨우즈와를 조합한 것은 내부에 절연물로 처리한 금속제의 함내 또는 절연물로 제작한 함내에 수납하고 있을 것.

(3)컨덴서의 정전용량

컨덴서에 1000Hz±200Hz의 주파수의 정격전압의 6퍼센트이하의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교류 보리지법으로 측정한 정전용량은 정적용량이 0.005μF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용량의 80퍼센트이상 140퍼센트이하, 정격용량이 0.005μF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용량에 대하여 ±20퍼센트 이내일 것.

(4)절연저항

각 단자 상호간(어어스용 단자 상호간을 제외한다) 및 상호간에 접속된 전부의 단가(어어스용의 것을 제외한다)와 금속부와의 사이에 100V이상 300V이하의 직류전압을 인가하여 2분간 충전한 후 측정한 20℃에 있어서는 절연저항은 200MΩ이상일 것.

(5)절연내력

(4)에 규정한 시험후 각 단자 상호간(어어스용 단자 상호간을 제외한다) 및 각 단자(어어스용을 제외한다)와 외함의 금속부와의 사이에 다음 표에 게기한 교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딜 것.

종 류	시 험	전 압(V)
	각 단자(어어스용의 것을 제외한다)상호간	어어스용 단자와 기타의 단자와의 사이 및 각단자와 외함의 금속부와의 사이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것	230	1,00
정격전압이 150V 를 초과하는 것	460	1,000

(6)함침제의 유출 또는 용출

(가)액체충전, 컨덴서는 표면을 청쟁하게 하고 70℃±3℃의 항온도조내에 그 단자가 측면이 되도록 놓고, 10분간 유지한 후 꺼내어, 반대측으로 엎어 10분간 유지한 경우에 다음에 적합할 것.

①백토등의 미분을 컨덴서에 얇게 도포한 경우에 그 미분의 색은 변화하지 아니할 것.

②자외선으로서 컨덴서를 조사한 경우에 그 표면은 형광을 발하지 아니할 것.

(나)액체 함침 컨덴서 및 고체충전 컨덴서는 70℃±3℃의 기름 중에서 또는 물 속에서 튜브러형의 컨덴서에 있어서는 1분간,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5분간 담근 경우에 기포를 연속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는 함침제의 용출이 없을 것.

사. 필터형 잡음방지기

가. 재료

꽂임플럭의 칼받이 및 칼날은 별표 3의 1, 가 및 5. 가. (5),(마)에 게기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나. 구조

(1)인출선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인출선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코오드로서 도체의 공칭 단면적이 0.75㎟이상이며 또한 길이가 20㎝이상의 것일 것.

(2)컨덴서, 코일 및 퓨우즈를 조합한 것 일 것.

(3)컨덴서의 정격용량, 코일의 인덕턴스 및 접속방식은 다음 표에 적합할 것.

종 류	컨덴셔의 정격 용량(uF)	코일의 인더턴스 (㎜)		접속방식
		L L1	L L2	
DFA-1	0.1	1	-	[그림 생략]
DFA-2	0.1	1	-	
DFA-3	0.1	1	-	
DFA-5	0.1	1	-	
DFB-1	0.1	-	0.5	[그림 생략]
DFB-2	0.1	-	0.5	
DFB-3	0.1	-	0.5	
DFB-5	0.1	-	0.5	

비고 : 1. C는 콘덴서로 한다.

2. L_1 및 L_2 는 코일로 한다.

4. f는 퓨우즈로 한다.

(4)코일, 컨덴서 및 퓨우즈는 내부에 절연물로 처리한 금속제의 함내 또는 제작한 함내에 넣던가 양질의 절연물의 밑판위에 이들을 조립하여 금속제의 외피로 씨워 있을 것.

다. 코일의 인덕턴스

코일에 1,000Hz±200Hz의 주파수의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교류 브리지법으로 측정한 인덕턴스는 나(3)의 표의 값에 대하여 ±20퍼센트이내일 것.

라. 컨덴서의 정전용량

컨덴서에 1000Hz±200Hz의 주파수의 정격전압의 6퍼센트 이하의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교류 브리지법으로 측정한 정전용량은 정격용량에 대하여 ±20퍼센트이내 일 것.

마. 절연저항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코일 상호간, 코일과 철심과의 사이, 코일과 외피 또는 외함의 금속부와의 사이 및 코일과 외피 또는 외함의 금속부와의 사이 및 코일과 어어스용 단사와의 사이에 절연저항은 50MΩ이상일 것.

바. 평상온도상승

정격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류와 같은 전류를 통하여 각 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에 온도계법으로 측정한 코일의 온도는 70℃이하일 것.

사. 절연내력

바에 규정한 시험 후 코일 상호간, 코일과 철심과의 사이, 코일과 어어스용 단자와의 사이에 다음 표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연속 1분간 이에 견딜 것.

	시 험 전 압(V)	
	코일 상호간	코일과 철심과의 사이, 코일과 외피 또는 외함의 금속부와의 사이 및 코일과 어어스용 단자와의 사이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것	230	1,000
정격전압이 150V 를 초과하는 것	460	1,000

아. 내습성능

온도가 약 40℃이고, 습도가 90퍼센트 이상의 공기 중에 6시간 유지한 후 라에 적합하고 또한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마"에 규정한 각부의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20MΩ이상일 것.

아. 누전검지기

(1)구조

누전을 검지하기 위한 테스트보턴을 가질 것.

(2)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자. 전기냉장고(흡수식의 것에 한한다.)

3의차의 규정과 병행하여 준용한다.

7. 휴대발전기

가. 구조

(1)연료로서 프로판개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부로부터 개스가 새지 아니할 것.

(2)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료를 주입할 경우에 규정량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구조일 것.

(3)과부하, 외부의 전로의 단락 등에 의하여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보호 장치를 가질 것.

(4)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오는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

나. 절연성능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다. 평상온도상승

정격출력과 같은 출력으로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될 때까지(단시간 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정격시간과 같은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연속하여 운전하고 그 동안에 열전온도계법(권선온도의 측정에 있어서는 저항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동표(7)의 측정개소에 있어서는 원동기 외각 이외의 분부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 연료탱크내의 연료에 있어서는 60℃(기준 주위온도는 30℃로 한다)이하일 것. 이 경우에 출력이 교류인 것으로서 정격역율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역유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0.8의 역율로 시험하여야 한다.

(라)과부하 성능

(1)(다)의 시험직후에 원동기 및 발전기의 출력조정용 손잡이를 각각 최고출력의 위치에 놓고 연속하여 1시간(보호장치가 동작하였을 때에는, 그때까지)운전하였을 때,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2)무부하의 상태에서 원동기의 출력조정용 손잡이를 최고 출력위치에 놓고 연속하여 1분간 운전하였을 때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마. 전압변동율

발전기의 전압변동율은 30퍼센트 이내 일 것.

바. 운전시험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규정량의 연료를 채운 상태에 있어서, 각 방향으로 20도 기우려 운전했을 때 연료가 샐 우려가 없을 것.

부표1. 전기면도기 등의 공간거리

개 소			공간거리(연면거리를 함한다)(㎜)
단자부	극성이 다른 단자부 상호간 및 단자부와 어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		2.0
단자부 이외의 충전부	극성이 다른 충전부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 또는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금속부의 표면과의 사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으로써 먼지가 침입하기 어렵고 또한 금속가루가 부착되기 어려운 개소	1.5
		기타의 곳	2.0

[부표2] 전기면도기등 이외의 것의 공간거리

선간전압 또는 대지 전압 (V)	공 간 거 리 (연면거리를 포함한다) (㎜)											
	전원전선의 불임부				출력측전선의 불임부				기타의 부분			
	사용자가 접속하는 단자부간	사용자가 접속하는 단자부와 어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 또는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금속부의 표면과의 차이	제조자가 접속하는 단자부간	제조자가 접속하는 단자부와 어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 또는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금속부의 표면과의 사이	사용자가 접속하는 단자부간	사용자가 접속하는 단자부와 어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 또는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금속부 표면과의 차이	제조자가 접속하는 단자부간 및 사용자가 접속기에 의하여 접속하는 단자부간	제조자가 접속하는 단자부 및 사용자가 접속기에 의하여 접속하는 단자부와 어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또는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금속부의 표면과의 사이	극성이 다른 충전부간(개폐기구를 가지는 것의 전선 붙임 단자부를 포함한다.		충전부와 어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 또는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금속부의 표면과의 사이	
									고정돼 있는 부분으로서 먼지가 침입하기 어렵고 또한 금속분이 부착하기 어려운 곳	기타의 곳	고정돼 있는 부분으로서 먼지가 침입하기 어렵고 또한 금속분이 부착되기 어려운곳	기타의 곳
50이하의 것	-	-	-	-	3	3	2	2	1.2	1.5	1.2	1.2
50초과 150이하의 것	6	6	3	2.5	6	6	3	2.5	1.5	2.5	1.5	2
150초과 300이하의 것	6	6	4	3	6	6	4	3	2	3	2	2.5
300초과 600이하의 것	-	-	-	-	10	10	6	6	4	5	4(3)	5(4
600초과 1000이하의 것	-	-	-	-	10	10	8	8	6	7	6	7
1000초과 3000이하의 것	-	-	-	-	20	20	20	20	20	20	20	20
3000초과 7000이하의 것	-	-	-	-	30	30	30	30	30	30	30	30
7000초과 12000이하의 것	-	-	-	-	40	40	40	40	40	40	40	40
12000을 초과하는 것	-	-	-	-	50	50	50	50	50	50	50	50

비고 : 1. 선간전압 또는 대지전압의 300초과 600이하의 란의 괄호안의 값은 유리봉입단자에 적용한다.

2. 선간전압 또는 대지전압이 1000V를 초과하는 것의 공간거리(연면거리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를 감한 값으로 할 수 있다.

부표 3 콘텐서의 외부 단자의 공간거리

선간전압 또는 대지 전압 (V)	공간거리(연면거리를 포함한다)(㎜)			
	극성이 다른 충전부간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먼지가 침입할 우려가 없고 또한 금속분이 부착하기 어려운 곳	기타의 곳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먼지가 침입할 우려가 없고 또한 금속분이 부착하기 어려운 곳	기타의 곳
50이하의 것	1	1.2	1	1
50초과 150이하의 것	1.5	2	1.5	1.5
150초과 300이하의 것	2	2	2	2
300초과 600이하의 것	3	4	3	4
600초과 1000이하의 것	4	5	4	5
1000초과 1500이하의 것	6	6	6	6
1500초과 2000이하의 것	7	7	7	7
2000초과 3000이하의 것	10	10	10	10
3000초과 4000이하의 것	13	13	13	13
4000초과 5000이하의 것	20	20	20	20
5000초과 6000이하의 것	25	25	25	25
6000초과 7000이하의 것	30	30	30	30
7000초과 12000이하의 것	40	40	40	40
12000을 초과하는 것	50	50	50	50

부표 4. 절연성능시험

시험의 종류	시험의 내용
(1)절연저항 시험 (2)절연내력 시험	평상온도상승시험 전후에 있어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기체외곽이 금속제의 것 이외의 것(수중용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기체의 외곽에 빈틈없이 댄 금속박, 수중용의 것에 있어서는 기체를 담근 맑은 물 이하의 표에서 같다.]와의 사이에 절연저항은 1MΩ이상일 것. (가)평상온도상승시험 직후에 하는 절연저항시험중,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1,000V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150V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딜 것. (나)단권변압기를 가지는 기기로서는,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것에 있어서는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에 다음 표에 게기

<table>
<tr><td></td><td>
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딜 것.
<table>
<tr><th>대지전압의 구분</th><th>교 류 전 압</th></tr>
<tr><td>150V초과 300V이하
300V초과 3000V이하
1000V초과 3000이하
3000V를 초과하는 것</td><td>1,500V
대지전압의 2배에 1,000V를 더한 값
대지전압의 1.5배에 500V를 더한 값 (3000V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3000V)
대지전압의 1.5
(5,000V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000V)</td></tr>
</table>
(다)절연변압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가)에 규정하는 시험 외에, 변압기 2차측의 전압으로 충전되는 부분과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에 및 변압기의 권선상호간에 다음표에 게기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때 연속 1분간 이에 견딜 것. 이 경우에 권선상호간의 시험을 할 경우의 전압의 구분은 변압기 1차측 또는 2차측중 어느 높은 전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전압의 구분 교류전압
30V이하 500V
30V초과 150V이하 1,000V
150V초과 1,000V이하 1,500V
300V초과 1,000V이하 변압기의 2차측의 전압의 2배에 1000V 더한 값 변압기 2차측의 전압의 1.5배에 500V 더한 값
1,000V초과 3,000V이하 (3000V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3,000V)
3,000V를초과하는 것 1.5배 (5,000V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000V)
</td></tr>
<tr><td>(3)주수절연시험</td><td>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맑은 물을 매분 약 3㎜의 수량으로 약 45도 기울어진 방향으로부터 강우상태로 균일하게 주수하여, 1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주수를 계속하면서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td></tr>
<tr><td>(4)일수절연시험
(6)내습절연시험
(7)누설전류시험</td><td>(가)평상온도상승 시험후에 연속하여 5분간 일수시켜, 기체의 외곽의 표면에 부착된 수분을 딱아내고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이 사이에 절연저항은 0.3MΩ이상이고, 또한 이 시험후에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물등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1MΩ이상일 것. 이 경우에 일수량은 기체의 일수하는 부분의 안주위 10㎝에 대하여 매분 2,000㎤의 비율로 산출한 물량(산출한 물량이 매분 2,000㎤를 초과할 때는 2,000㎤)로 한다.</td></tr>
</table>

	(나)평상온도상승시험후에 있어서 탱크안에 충분히 물을 채우고, 여기에 10㎤의 물을 가함에 의하여 일수시켜, 기체의 외곽의 표면에 부착한 수분을 딱아내고,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3MΩ이상이고, 또한 이 시험후에 전압을 가하여 물등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에, 500V 절연항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1MΩ이상일 것. (다)용기에 물을 넣고, 5분간 일수시킨후에 기체의 외곽표면에 부착한 물을 딱아내고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1MΩ이상일 것. (1)(2)에 규정한 시험후에 기체의 커버를 떼어내고 전원전선은 등의 접속부이외의 부분을 맑은 물에 3분간 담그고, 전원전선등의 접속부에 있어서는 부표 3의 5의(가)의 시험을 하고,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맑은물과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3MΩ이상이고 또한 이 시험후에 기체를 건조하고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1MΩ이상일 것. (나)(5)(가)에 규정한 시험(전원전선등의 접속부에 대하여서는 부표 3의 5의 (가)의 시험을 제외한다)후에 있어서 전원전선등의 접속부를 표면이 평탄한 두께가 10㎜이상의 나무대 위에 통상의 사용상태로 놓고, 1,000㎤의 맑은 물을 매초율로 전원전선등이 첨속부 중앙에 10㎝의 높이에서 연속하여 균일하게 주수하고, 기체의 외곽 표면에 부착한 수분을 딱아내고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3MΩ이상이고, 또한 이 시험후에 기체를 건조하고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1MΩ이상일 것. (다)(나)에 규정한 시험후에 기체커버를 떼어내고 기체[기체에 부착된 접속기 및 직접부착된 전원전선등의 (중간에 설치된 스위치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를 맑은물중에 3분간 담그고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맑은물과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3MΩ이상이고, 또한 이 시험후에 기체를 건조하고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측정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1MΩ이상일 것. (가)45℃±3℃에서 4시간 기체를 방지한 후 주위온도가 40℃±3, 상대습도가 88퍼센트이상 92퍼센트이하의 상태에서 24시간 유지한 후에 기체의 외간의 표면에 부착한 수분을 딱아내고,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3MΩ이상일 것.

	(나)끓는물을 넣은 용기를 기구의 고내에 넣고,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하여 2시간 가한후, 통전을 정지한 상태에 있어서 2사간 경과한후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1MΩ이상이고, 또한 (2)(따)의 표에 게기한 교류전압을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사이에 가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딜 것. 통상의 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물등 또는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 대지와의 사이에 1MΩ의 저항을 계속하여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였을 때, 누설전류는 1mA이하일 것.

부표 5 온도한도

측 정 개 소			온도(℃)
(1)권 선		A종 절연의 것	100
		E종 절연의 것	115
		B종 절연의 것	125(120)
		F종 절연의 것	150(140)
		H종 절연의 것	170(165)
(2)정류체		세렌인 것	75
		겔마늄인 것	60
		실리콘인 것	135
(3)전원전선의 분기점			90
(4)휴대용 손잡이(사용중에 사람이 조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금속제의 것,도자기제의 것, 유리제의것	65
		기타의 것	80
(5)사용중에 사람이 조작하는 손잡이		금속제의 것,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것	55
		기타의 것	70
(6)점멸기등의 놉 및 눌름보던		금속제의 것,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것	60
		기타의 것	75
(7) 외각	사람이 접촉하여 사용하는 것	금속제의 것,도자기제의 것 및 유리제의것	55
		기타의 것	70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	금속제의 것, 도자기제의것 및 유리제의것	85
		기타의 것	100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것		100
8. 시험품을 놓는 나무대의 표면			95

비고 : 1, 괄호안의 값은 회전기의 권선에 적용한다.
2. 등가시험을 하였을 때 젯트식 우물펌프 및 냉방중에 있어서 사용되는 전동기의 권선의 온도는 표의 권선의 값에 5℃를 더한 값으로 한다.
3. 이 표에 있어서 기준주위온도는 이 표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채난용의 것 및 수중용의 것에 있어서는 20℃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30℃로 한다.

부표 6. 기계적 강도시험

시험의 종류	시 험 내 용
(1)정하중 시 험	시험품을 두께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통상의 사용상태로 놓고 밑면의 형상이 정방형으로서 그 한 쪽의 변의 길이가 100㎜, 무게가

	60㎏의 추를 시험품위에 1분간 놓았을 때, 각부에 금, 갈라짐 기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함
(2)강구낙하 시 험	시험품을 두께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 놓고 시험품위 1m의 높이로부터 지름이 20.64㎜이고 무게가 36g 강구를 그 위에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파손이 없을 것.
(3)낙하시험	기체의 중량이 4㎏(전기탈 것 전기오락판 기타의 전동식장란감에 있어서는 2㎏)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콩크리트 바닥위에 놓은 두께가 30㎜의 표면이 평탄한 나왕판의 중앙구에 기체의 밑면이 나왕판의 면에 평행하게 되도록 기체를 끈으로 매어 단 것을 70㎝높이에서 낙하했을 때 충전부의 노출 및 단락이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충전부와 어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0.1MΩ이상일 것

부표 7 시동특성시험

1.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의 90퍼센트와 같은 시험전압을 가하였을 때 전동기가 회전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시동할 것. 다만, 속도조정장치를 최저 놋지에 놓고 정격전압의 90퍼센트와 같은 시험전압을 가하였을 때 시동되지 아니하는 것은 시동하지 아니하는 속도 놋지마다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시동하지 아니하는 최고전압(시동되지 아니하는 최고전압이 정격전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격전압)을 연속 가하고 각부의 온도상승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저항법으로 측정한 권선의 온도는 부표 5의 좌란에 게기한 측정개소 (동표 (1)의 측정개소에 한한다)마다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이고 또한 시동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동 전류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은 정격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였을 때 측정한 시동전류는 표시된 시동전류의 값 이하일 것.

(비고) 별표 1내지 별표 8에 사용된 기호는 각각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 :밀리미터
㎝ :센티미터
m :미터
ℓ :리터
㎟ :평방밀리미터
㎠ :평방센티미터
C.C. 및 ㎤:입방센티미터
℃ :온도의도
deg :온도차의도
mmag :수주밀리미터
㎥/min :분당입방미터
g :그람
㎏ :킬로그람
V :볼트
mV :밀리볼트
μV :마이클로볼트
A :암페어
mA :밀리암페어
Ω :오옴
KΩ :킬로오옴
MΩ :메가오옴

W :왓트
kw :킬로왓트
Hz :헬츠
KHz :킬로헬츠
MHz :메가헬츠
GHz :기가헬츠
mR :밀리렌트겐
dB :데시벨
phon :폰
F :파라트
μF :마이크로파라트
PF :피코파라트
ℓm :루우멘
S :분
rpm :분당회전수
mC :밀리쿠우롱
mH :밀리헨리
Ω/km :킬로미터당오옴
kg/㎟ :평방미리키터당길로그람
kg/㎠ :평방센티미터당킬로그람
g/㎡ :평방미터당그람
MΩ-km :메가오옴킬로미터
kg-cm :킬로그람센티미터
V/m :미터당마이클로볼트
ℓm/W :왓트당루우멘
Kcal/h :평방미터당킬로칼로리
Kcal/h.㎡ :평방미터 · 시간당킬로칼로리
mV/m :미터당밀리미터
VA :볼트암페어
mW/㎠ :평방센티미터당밀리왓트
Nm :뉴우톤미터